

M 45-93 | 2008. 5 |

제 93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08. 5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기 전문연구원 mkleee@krei.re.kr TEL 02-3299-4166 / FAX 02-968-7340
김연수 연구원 yuns00@krei.re.kr TEL 02-3299-4307

CONTENTS

특 집

- 3 DDA 농업협상과 UR 협상
- 12 미국 자포니카 쌀 산업 동향

농업 · 농정 동향

- 27 세계 유기농업의 흐름
- 46 베트남 농업
- 60 미국 농어업부문 시장개방 피해대책
- 69 미국의 복지개혁
- 81 한일간 사료가격 비교

국제기구 동향

- 95 DDA 2008년 5월 농업협상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 111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5)
- 117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5)
- 130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5)

세계농업통계

- 145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 149 세계 밀 통계



특 집

DDA 농업협상과 UR 협상
미국 자포니카 쌀 산업 동향

DDA 농업협상과 UR 협상*

송 주 호

한국농업에 있어서 최초의 전면적인 개방인 UR은 GATT체제에서의 8번째 협상이었고, DDA는 9번째 협상이다. 다자간 무역협상은 WTO 152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으로 FTA로 대표되는 양자협상과는 다르다.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은 한동안 협상이 중단된 적도 있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쟁점을 타결하면서 종착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출범한 후 햇수로 7년이 지난 금년 2월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의 세부원칙(모델리티) 1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3개월여 동안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5월에 2차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이후 각국은 또다시 3차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DDA 협상의 진행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986년 출범하여 1994년 타결된 UR 협상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과 UR 협상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DDA 협상을 전망해 본다.

1. DDA 협상 개요

한국 농업에 최초의 전면적인 개방이라는 시련을 안겨준 UR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의 8번째 협상이었고, DDA 협상은 9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1948년 창설된 GATT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로 전환되었다. 다자간 무역협상은 WTO 152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으로서 FTA로 대표되는 양자협상과는 크게 다르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은 카타르 수도인 도하에서 출범되었고 개도

* 본 내용은 DDA 및 UR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jhsong@krei.re.kr, 02-3299-4187)

국의 개발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도하개발의제(DDA)”로 명명되었다. 과거에는 “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라운드라는 어감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호감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제”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이 붙여졌다.

DDA 협상의 범위는 UR 때와 마찬가지로 농업, 비농산물(NAMA),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하며 각 분야별로 협상이 나누어 진행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참가국이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협상에서도 UR 협상과 마찬가지로 농업협상이 가장 뜨거운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2. UR 과 DDA협상 추진경과 비교

UR 농업협상과 DDA 농업협상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협상이 의욕적으로 출범한 후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거치게 되면 협상그룹의장은 나름대로 그 동안 논의된 쟁점을 정리하고, 분야별로 내용과 방향을 종합한 모델리티(세부원칙) 초안을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협상 쟁점별로 수출국과 수입국,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입장차이가 많기 때문에 모델리티 초안은 모든 회원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많은 나라들이 불만을 갖게 된다. 또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어 협상은 진척이 잘 되지 않고 기한 내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는 결렬되고 협상기한은 연기된다.

이러한 과정은 UR과 DDA 모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UR 당시에는 농업부문이 GATT에서는 처음으로 협상분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초안을 제시하는데에만 UR출범 후 3년 9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DDA 협상에서는 이미 농업부문이 UR 당시의 기설정 의제(built in agenda)의 하나로서 2000년 1월부터 이미 협상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차 초안 제시가 DDA 출범 후 1년 3개월 만에 나왔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의장 초안 제시 이후 UR에서는 1990년 브라셀 각료회의가 결렬되었고, DDA에서는 2003년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각료회의가 결렬되면 협상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회원국들은 WTO 총장에게 협상의 완수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임무를 부여하게 된다. 그 이후 다시 협상은 빠르게 진전되고, 세부 쟁점들이 하나씩 타결되면서 주요국 간에 마지막 핵심 쟁점에 대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지면 협상은 종결되게 된다. 아래 표는 그러한 협상 진전 상황을 잘 보여준다. 2008년 5월말 현재 DDA 농업협상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한 절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나머지 핵심 쟁점들은 각료회의에 넘겨 정치적 해결을 시도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R농업협상과 DDA 농업협상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협상이 출범한 후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거치면 협상그룹의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분야별로 내용과 방향을 종합한 모델리티(세부원칙) 초안을 발표하게 된다.

표 1 UR 과 DDA 협상의 진전 경과 비교

구 분	UR 협상	DDA 협상
협상출범	1986. 9월 (우루과이 폰타델에스텔)	2001.11월 (카타르 도하)
합의추진 과 정	1990.6월 (1차 초안제시) 1990.12월 (브라셀 각료회의 결렬) ※ 브라셀 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 총장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막후 절충 권한 부여 1991.12월 (던켈총장 초안제시) 1992.11월 (미-EU 블레이하우스 합의)	2003.2월 (하빈슨 의장 초안 제시) 2003.9월 (칸쿤 각료회의 결렬) 2004.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 : 시한연장) ※ 홍콩각료회의 시한 내 타결 실패 이후 라미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2006.7월 (라미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2006.11월 (라미총장 협상재개 선언) 2007.7월 (팔코너 의장 세부원칙초안 제시) 2008.2월 (팔코너 의장 세부원칙 수정안 제시) 2008.5월 (팔코너 의장 세부원칙 2차 수정안 제시)
쟁점타결	1993.12월.	
이행계획서 최종제출	1994.3월	
협상종결	1994.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자료: 농림수산물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2008. 3)

3. UR협상과 DDA협상의 주요내용 비교¹⁾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를 대폭 삭감하되 민감품목 등 융통성 부여

UR농업협상에서 타결된 내용과 DDA농업협상의 모델리티 2차 수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DDA협상이 UR협상보다 시장 개방폭과 보조금 감축 폭이 훨씬 크다. 예컨대 UR 당시 관세 감축율은 선진국의 경우 평균 36%이고

1) DDA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2008년 5월 20일 배포된 팔코너의장의 모델리티 2차 수정안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향후 협상의 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품목별로는 최소 15%이었는데, DDA에서는 평균 54%, 품목별로는 관세구간별로 다르지만 고관세 품목(세율이 75% 이상인 품목)의 경우 [66% -73%]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평균으로 보면 1.5배이지만 고관세 품목의 경우 4배 이상 감축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UR에서는 부속서 5항에 관세화조치의 아주 예외적인 조치로 관세화조치에 대한 특별대우 조항을 두었고 우리나라는 이 조항을 원용하여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다. DDA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게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²⁾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 감축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에게는 별도로 특별품목³⁾(Special Products)을 인정하여 역시 관세 삭감을 적게 하거나 아예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도 이번 DDA 협상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관세 상한에 대해서도 UR 당시에는 국내의 가격 차이를 그대로 관세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관세 상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각국별로 종가세 기준으로 500%가 넘는 품목이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DDA에서는 관세 상한을 두지는 수출국들의 끈질긴 주장이 있었으나 팔코너 의장 초안에는 직접적인 관세상한 규정은 두지 않는 대신 선진국의 경우 관세율이 100%가 넘는 품목이 전체 세번의 4%를 넘을 경우에는 민감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쿼터를 추가로 소비량 대비 0.5%를 증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R에서는 당시 관세화하고 이행계획서에 명기한 품목에 한해 특별긴급관세제도(SSG: Special Safeguard)를 허용하여 수입량이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비율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관세를 단기간에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 DDA에서는 SSG제도는 모두 철폐하거나 혹은 전체 세번의 1.5% 이하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DDA에서는 과거 SSG를 활용하지 못한 개도국들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개도국들에게는 SSG와 유사한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SSM조치 발동시 관세인상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발동가능 품목수 등은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다.

관세형태에 대해서도 UR 당시에는 종가세 이외에도 종량세, 혼합세 등이 큰 제약없이 활용되었는데, 이번에는 관세형태를 단순화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다만 모든 품목에 대해 종가세만 인정할 지, 혹은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관세를 인정할 지 여부가 쟁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UR 당시 76개 세번에 대해 종가세와

UR 농업협상에서 타결된 내용과 DDA 농업협상의 모델리티 2차 수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DDA 협상이 UR 협상보다 시장 개방폭과 보조금 감축 폭이 훨씬 크다.

2)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을 구간별 관세감축공식보다 1/3 내지 2/3 정도 작게 감축하는 대신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추가적인 쿼터로 설정해야 하는데, 품목수를 몇 %나 인정할 지, 쿼터증량 폭을 얼마나 할 지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3) 특별품목은 개도국에 한해 식량안보·생계유지·농촌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지표(Indicator)에 관련된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품목의 대상 한도와 관세감축의 폭에 대해 쟁점으로 남아 있다. G33 그룹은 특별품목의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이나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감축의 면제는 불가하다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종량세 중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DDA에서 관세단순화가 적용되면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대작물은 최빈 개도국들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UR 당시에 선진국들은 열대작물의 완전자유화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었다. DDA에서는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여건이 된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개도국은 열대작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감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에 대상품목을 나열하고 품목수도 대폭 늘렸다. 다만,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 삭감은 특혜잠식⁴⁾을 걱정하는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표 2 시장접근분야 UR 협상결과와 DDA협상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UR	DDA
시장 접근	관세 감축율	선진국의 경우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선진국의 경우 평균 54%, 구간별 감축(50%~73%)
	관세 감축 예외	부속서 5항(관세화 유예)	민감품목, 특별품목(개도국) 신설
	관세상한	없음(관세화)	100%초과품목이 전체의 4%이상일 경우TRQ 추가 증량
	SSG	관세화 품목에 대해 모두 인정	모두 철폐, 혹은 전체 세번의 1.5%만 인정 ※ SSM 신설(개도국)
	관세 형태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인정	관세 단순화
	열대작물	선언적 규정	목록확대, 관세 추가 삭감

국내보조 분야의 감축을 높이고 품목별 안도를 설정

국내 보조금의 경우에도 UR 당시에는 전체 감축대상보조의 20%를 감축하도록 했지만, DDA에서는 구간을 나누어 감축율을 높였으며, 품목별로 상한을 두고 있다.

국내 보조금의 경우에도 UR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전체 감축대상보조(AMS)의 20%를 감축하도록 하였지만 DDA에서는 구간을 나누어 그동안 AMS를 많이 지급해 온 EU는 AMS의 70%를 감축해야 하고, 미국과 일본은 60%, 그 밖의 선진국들은 45%를 감축하게 하였다. 또한 UR 당시에는 전체 보조금 총액 범위 내에서는 품목별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DDA에서는 품목별로 상한을 두고 있다.

이번 DDA에서는 무역왜곡보조총액(OTDS:Overall Trade Distorting Subsidy)이란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AMS와 최소허용보조(de-minimis), Blue Box금액을 모두 합하여 전체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새로운 점이다. 감축율은 OTDS 금액

4)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들(ACP: African, Carribean, Pacific)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관세로 EU에 바나나, 커피 등 열대작물들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 차이를 특혜관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DDA 협상에서 전체적으로 관세를 낮추게 되면 이러한 특혜의 크기가 축소되므로 이를 특혜잠식이라고 한다.

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소 [50-50]% 내지 [75-85]%까지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로 감축이 면제되는 Blue Box의 경우 UR에서는 상한이 없었으나 DDA에서는 전체 생산액의 2.5% 이내로 상한선을 두었다. 다만, UR당시에는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는 경우의 직접지불만 Blue Box로 인정하였는데, 이번에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하의 직접지불을 새로운 Blue Box에 신설함으로써 최근 미국이 도입한 경기상쇄직불(CCP: Counter Cyclical Payment)을 Blue Box로 분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감축에서 면제되는 최소허용보조(de-minimis)의 경우에도 UR 당시 선진국들은 농업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를 인정하였는데, 이번에는 한도를 대폭 낮추어 [50-60]%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국내보조 분야 UR 협상결과와 DDA협상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UR	DDA
국내 보조	AMS 감축율 선진국 기준 20% 삭감 품목별 한도 없음	45%~70% 감축, 품목별 한도 OTDS 구간별 [50%~85%]삭감
	Blue Box BB 사용 한도 없음	신규BB 인정, 전체한도를 농업생산액의 2.5% 로 한정
	de- minimis 선진국 기준 생산액 대비 5% (품목특정, 불특정)	[50%~60%]감축

수출경쟁분야 대폭 강화

수출보조는 UR 당시 선진국은 금액기준으로 36%를 삭감하고 물량기준으로는 21%를 삭감(개도국은 2/3수준)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마케팅비용과 운송비용에 대한 보조는 2021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신용의 경우도 UR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출신용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신설하고 최대 상환기간을 규정하는 등 내용을 한층 강화하였다.

수출보조는 UR 당시 선진국은 금액기준의 36%를 삭감, 물량기준으로는 21%를 삭감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2013년까지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표 4 수출보조분야 UR 협상결과와 DDA협상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UR	DDA
수출 보조	감 축 율 금액 36% 물량 21% (개도국은 2/3 수준)	2013년 까지 철폐 (개도국은 2016년 철폐)
	수출신용 수출보조의 우회방지	규정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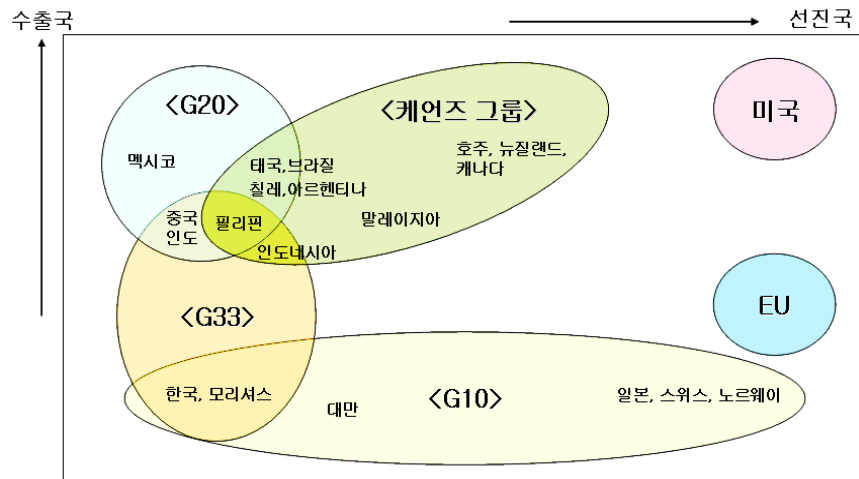
UR 당시 이행기간은 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이었으나, DDA에서는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DDA 협상에서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나라들이 그룹을 만들어 자기들의 주장을 반영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행기간은 줄어 들고 참여자는 많아져

UR 당시에는 이행기간이 선진국은 6년이고 개도국은 10년이었으나 DDA에서는 이행기간이 선진국은 5년, 개도국은 8년으로 단축되었다. 아울러 관세나 보조금 감축방법도 UR 당시에는 이행기간 동안 균분 감축하였는데 DDA에는 이행 첫해부터 대폭 감축(down payment)하도록 하여 이행부담을 크게 늘린 것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협상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UR 당시에는 미국과 EU가 협상을 주도하였고,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 Trade Concern)을 주창하는 수입국 그룹 등이 어느 정도 단합된 의견을 내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DDA 협상에서는 인도, 브라질, 중국 등 개도국들의 발언권이 크게 증대되고 또 이해관계가 유사한 나라들이 많은 그룹을 만들어 자기들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G10(농산물 수입국 모임: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등), G33(특별품목 주창그룹: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등)그룹에 속해 있으며, 농산물을 수출하는 개도국들의 모임인 G20(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은 또 다른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그룹과는 별도로 행동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특별히 이런 소그룹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제안을 하고, 가끔 그룹 간 중재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다.

그림 1 DDA 협상의 역학구도



개도국에 대한 대우는 더 강화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는 개도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GATT 출범부터 인정되었으며, UR 농업협정에서도 관세감축이나 보조금 감축, 이행 기간 등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감축약속을 이행하도록 한 바 있다. DDA협상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각 조항마다 별도로 규정되고 있으며, UR 당시의 우대조건이 DDA에서도 대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DDA에서는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만큼 개도국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서 특별품목, SSM 제도는 개도국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가능성 여부가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GATT 체제에서의 개도국 지위의 결정은 특정한 법적절차나 기준이 없이 회원국의 자기 선택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UR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DDA 출범 초기 WTO의 무역개발위원회에서 개도국 우대조치 조항에 대해 검토하면서 개도국 분류 및 졸업문제에 대해 논의된 적이 있으나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OECD에서도 개도국 세분화에 관한 작업을 추진하려다가 우리나라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DDA에서는 개도국 세분화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모델리티에서는 일부 조항⁵⁾에 대해 “능력이 되는 개도국(in a position to do so)”, “능력이 있다고 선언하는(declaring themselves to be in a position to do so)”, 혹은 “희망(wishing)하는 개도국” 들은 선진국들과 같은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단계가 높은 일부 개도국들에게 자발적인 추가 부담을 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GATT출범부터 인정되었으며 UR 농업협정에서도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감축을 이행하도록 한 바 있다. DDA협상도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각 조항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4. 양우 전망

WTO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2차 수정안을 토대로 5월 26일 주간부터 각국의 본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정도 쟁점이 압축되면 농업과 비농업을 함께 논의하는 부문 간 협의(horizontal process)를 개최하여 부문 간 균형을 위한 양보와 타협을 도출하고,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압축된 쟁점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WTO 사무국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업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반해, 비농산물 부문(NAMA: Non 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입장차이가 현격해서

현재 농업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는 데 반해 비농산물 부문 협상이 진전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

5) 경사관세의 시정,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 감축, 최빈개도국과 소규모 취약국에 대한 시장접근의 개선, 고관세품목의 TRQ 추가 증량조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5월 22일 제정된 2008년 미국 농업법이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많은 나라의 비난을 받고 있어 금년 내 협상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의 진전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일부 개도국들은 농업, 비농업(NAMA) 이외에도 규범(Rules) 분야에 대한 협정문도 마련되어야 하고, 서비스 협상, 지리적 표시 등에서도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위해 추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부문 간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5월 22일 미국에서 제정된 2008 농업법이 DDA에서의 농업보조금 감축노력과는 반대로 오히려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데 대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어 금년 내 협상 타결을 바라는 미국의 협상 주도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UR협상은 7년 3개월 동안 진행되어 1993년 12월에 협상이 종료되었다. 2008년 6월 현재로 6년 7개월 동안 끌어온 DDA 협상이 UR 협상보다 빨리 타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2008. 2.
- 임송수, 김상현, WTO 개도국지위의 논리와 협상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60. 2003.
- DDA 농업협상 팔코너 모델리티 2차 수정안, 2008. 5.
- UR 농업협정문, 1994.1.
- Washington Trade Daily, "Ag Talks Move Along", 2008.6.4.

미국 자포니카 쌀 산업 동향*

윤형현 · 이대섭

1. 서론

미국의 쌀 산업은 1933년 연방정부의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이 기초가 된 농업법(Farm Bill)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쌀 산업에 대한 미국의 농업법은 가격지지와 생산자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안전장치(Safety Net)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후 미국 정부의 지원은 국내 보조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에 주축을 이루던 수출보조와 수출가격보조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쌀 산업은 세계 쌀 생산량의 2% 정도만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 교역량은 전 세계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쌀 생산국들이 인디카 쌀이나 자포니카¹⁾ 쌀 중 한 가지 종만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두 종류를 모두 생산하는 나라이다. 캘리포니아주를

미국의 쌀 산업은 세계 쌀 생산량의 2%정도이나, 그 교역량은 전 세계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본 내용은 자포니카 쌀 및 미국의 쌀 수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 부연구위원과 윤형현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ldaeseob@krei.re.kr, 02-3299-4169)

1) 쌀 수급 관련 통계는 쌀의 길이를 기준으로 장립종, 중립종, 단립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한 통계는 쌀의 색깔과 상태(type)를 기준으로 도정 백미, 현미, 반숙미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포니카 쌀은 점도가 높고 수분함량이 높아 한국인이 주식으로 소비하는 쌀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쌀을 대상으로 한다. 대체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중단립종 쌀을 자포니카 계열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알칸사와 루이지애나 주에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 또한 자포니카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포니카 쌀은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역(센크라멘토 벨리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인디카 쌀과 자포니카 쌀 두 종류를 모두 생산하는데 자포니카 쌀을 주로 생산했던 캘리포니아주의 물 부족 현상 심화로 알칸사와 루이지애나주로 생산이 옮겨가고 있다.

중심으로 자포니카 쌀을 생산하고 있고 알칸사,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그리고 미주리주를 중심으로 인디카 쌀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는 물 부족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더 이상의 생산 증대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반면 알칸사주와 루이지애나주를 중심으로 자포니카쌀 생산이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알칸사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자포니카 쌀의 국제 시장가격이 인디카 쌀 가격보다 높게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자포니카 쌀 생산이 급증하지 않는 이유는 자포니카 쌀에 알맞은 도정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며, 토질과 기후조건이 고품질의 자포니카 쌀 생산에 알맞지 않아 캘리포니아산 쌀과 비교하여 품질이 낮은 쌀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 계통의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 자포니카 쌀 소비도 증가하여 미국 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국내시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쌀 산업은 농가수로는 8천 농가 정도의 생산자(농가)가 포함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2002년의 미국의 농가조사(2002 agricultural census)를 살펴보면 쌀 재배 농가 수는 1997년 농가조사에서 조사된 9,627농가에 비해 16%가 줄어든 8,046농가이다. 이 중 쌀 재배 농가수가 가장 많은 주는 알칸사주로 2002년 전국 쌀 재배 농가의 44%(3,573농가)를 차지하였고 캘리포니아주와 루이지애나 주가 2002년 각각 1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 자료와 비교하면 2002년의 쌀 재배 농가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별 쌀 재배 농가수

구 분	1997년		2002년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알칸사	4,325	45%	3,573	44%
캘리포니아	1,567	16%	1,473	18%
루이지애나	1,844	19%	1,448	18%
미시시피	529	5%	461	6%
미주리	457	5%	445	6%
텍사스	892	9%	629	8%
기타	13	0%	17	0%
전체	9,627	100%	8,046	100%

자료: USDA / NASS, 2007

2. 공급부문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

미국의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은 국제 시장가격에 따라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1993년, 그리고 2003년 한국과 일본의 냉해로 인해 각각 2백만 톤이 넘는 자포니카 쌀 수입이 이루어진 다음해의 미국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은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은 시장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이 1980년 대홍작을 겪고 1981년 수입을 확대했을 때에는 미국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이 41만ha에서 47만ha로 약 6만ha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3년 일본의 냉해가 발생하여 국제 시장가격이 급등한 후 미국의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은 32만ha(1993년)에서 37만ha(1994년)로 약 5만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가격이 하락한 1983년, 2000년대 초반에는 재배면적이 크게 하락하여 각각 20만ha, 27만ha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는 2001년 초부터 2003년까지 국제 자포니카 쌀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미국의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은 최대 29만ha(2004년)에서 최소 24만ha(2005년, 2006년)로 1980년대와 1990년대 평균 재배면적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의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은 국제시장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고, 자포니카 쌀의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주의 관개수 현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자포니카 쌀 재배면적은 국제 시장가격에 따라 유동적이며 자포니카 쌀의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주의 관개수 현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면적당 생산량

미국 자포니카 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80년대에 새로운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의 발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semi-dwarf 종의 도입으로 기후의 영향을 받은 하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이 후 새로운 품종개발로 2004년에 6.9톤/ha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단수 증가세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전 자조작을 거친 쌀을 도입하지 않은 이상 더 이상의 단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김윤식, 2006).

1980년 4.8톤/ha에서 1989년 6.3톤/ha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후 1990년대 평균 단수는 6.2톤/ha으로 1980년대 평균 단수 5.6톤/ha과 비교하면 0.6톤/ha가 증가한 것이다. 2000년대에는 2004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는 6.2톤/ha~6.5톤/ha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평균 단수는 6.4톤/ha으로 1980년대 및 1990년대와 비교하여 각각 0.8톤/ha, 0.2톤/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자포니카 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80년대에 새로운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의 발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2 자포니카 쌀의 재배면적과 단수

단위: 천 ha, 톤/ha

연도	재배면적	단수
1980	406	4.8
1981	465	4.6
1982	361	5.3
1983	201	5.6
1984	243	5.6
1985	192	5.7
1986	193	6.0
1987	215	6.0
1988	234	5.5
1989	228	6.3
1990	251	6.1
1991	249	6.4
1992	245	6.7
1993	259	6.5
1994	305	6.7
1995	276	6.0
1996	312	5.9
1997	286	6.5
1998	260	5.5
1999	302	5.7
2000	313	6.3
2001	233	6.5
2002	262	6.5
2003	261	6.2
2004	285	6.9
2005	246	5.9
2006	243	6.2

자료: USDA, Rice Yearbook, various issues.

2007년 자포니카 쌀의 주별 생산량은 캘리포니아주가 82%, 알칸사주가 15%로 이들 두 개주가 자포니카 쌀의 98%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자포니카 쌀은 주로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생산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생산량이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칸사주와 루이지애나주의 자포니카 쌀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자포니카 쌀의 주별 생산량은 캘리포니아주가 144만 톤으로 미국 내 전

체 자포니카 쌀 생산의 82%를 차지하였고, 알칸사주가 26만 톤 정도를 생산하여 15%로 이들 두 개 주가 자포니카 쌀의 98%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루이지애나 주에서 2~3%의 자포니카 쌀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자포니카 쌀 생산량은 1980년대의 평균 생산량 127만 톤에서 1990년대에는 170만 톤으로 약 34%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개수의 부족현상으로 인한 재배면적의 감소 때문에 자포니카 쌀의 평균 생산량은 155만 톤으로 약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07년 자포니카 쌀의 주별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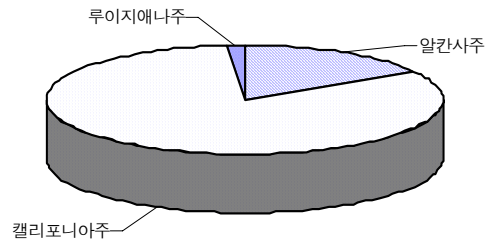


그림 2 자포니카 쌀 주요 생산지



알칸사주



캘리포니아주



루이지애나주

3. 수요부문

식용 소비량

미국 자포니카 쌀의 식용 소비량은 1980년부터 1997년대까지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 1998년부터는 정체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1997년 140만 톤을 정점으로 2007년에는 113만 톤을 소비하여 약 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USDA, Rice Yearbook, 2007). 하지만 2000년대에는 110만 톤에서 120만 톤 수준의 분포로 변화폭이 작아 향후 단기적인 소비량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미국은 세계 4위의 쌀 수출국이며, 자포니카 쌀 수출은 세계 1위이다. 자포니카 쌀의 수출시장은 전통적으로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 외에 터키, 캐나다 등으로 국

미국은 세계 4위의 쌀 수출국이며, 자포니카 쌀 수출은 세계 1위이다. 자포니카 쌀의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인 호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산이 거의 중단되어 미국의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되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본이 주요 수출국이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대만, 한국 등 극동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자포니카 쌀 수출은 1983년의 81만 톤을 정점으로 1980년대 평균 58만 톤 수준이었던 것이 1990년 들어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약 50만 톤의 평균 수출량을 나타내어 1980년대와 비교하면 약 8만 톤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에 다시 증가하여 평균 약 70만 톤의 수출량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국제 쌀 시장에서 공급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급등한 실정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 자포니카 쌀 수출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리라 전망된다. 또한 자포니카 쌀 수출의 경우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인 호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산이 거의 중단되어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의 수입시장에서 호주와의 경쟁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국제시장에서 많은 주요 수출국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쌀 전문가들은 미국 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생산 감소와 이집트의 한시적인 수출 금지조치, 그리고 한국 등 주요 쌀 수입국들의 TRQ 물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자포니카 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새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말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의 경우 기말재고는 42만 톤 수준으로 재고비율은 총 공급량 대비 18.3%로 2006년 15.8%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미국의 기말재고는 1980년대 평균 71만 톤으로 총 공급량 대비 33%의 재고율을 나타냈으며, 1990년대는 18%, 2000년대에는 17%로 재고율이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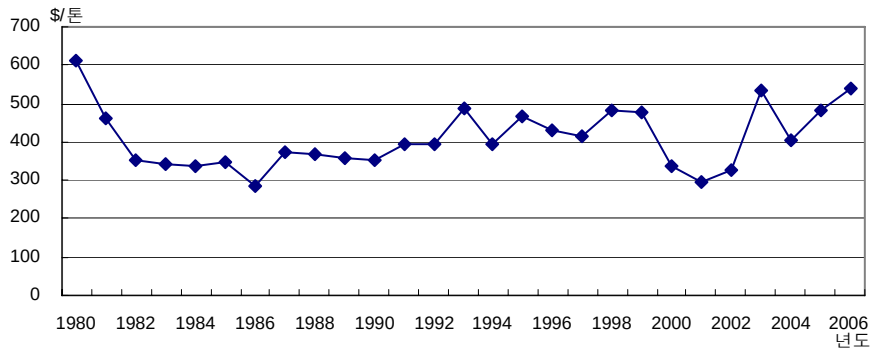
가격

자포니카 쌀 가격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1등급 쌀을 기준으로 1980년 \$611/톤을 정점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는 톤당 \$300~\$400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었고 1990년대에는 \$400~\$500사이,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300선까지 하락하다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포니카 쌀 가격은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급락이 심한 편으로 California #1의 경우 1980~2006년의 대상기간동안 가장 가격이 낮은 1986년은 톤당 \$286이고 가장 가격이 높은 해인 1980년은 톤당 \$611.2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말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자포니카 쌀 가격은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급락이 심한 편이다.

그림 3 캘리포니아 No.1 쌀 가격



자료: USDA/ERS, 2007

수출정책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쌀의 종류는 크게 인디카, 자포니카, 향미, 찰쌀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인디카 쌀은 국제교역량의 80%를 차지하며 밥을 지었을 때 마르고 보슬보슬한 느낌을 주며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며, 미국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립종 쌀이 인디카 쌀로 분류된다. 자포니카 쌀은 국제 쌀 교역량의 10% 내외를 차지하며 밥을 지었을 때 수분이 많고 끈적끈적한 느낌을 주며 주로 온난한 기후에서 재배된다. 향미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타이 자스민과 바스마티 품종으로 전체 국제 쌀 교역량의 10%를 차지하는데 일반적으로 인디카나 자포니카보다 비싸게 거래된다. 찰쌀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며, 가격은 인디카나 자포니카 계열의 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쌀은 조곡, 정곡, 현미로 분류되어 거래되며, 조곡은 멕시코와 중남미로 주로 수출되고 현미는 주로 EU에 수출되는데 반숙된 장립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본, 한국, 대만은 정곡 중·단립종의 최대 수입국으로 거의 대부분을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쌀 수출 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PL480 정책은 대부분 세계 식량 원조 프로그램(World Food Program, WFP)으로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하여 무상 및 유상 원조를 토대로 수출을 진흥하는 정책이다. 둘째, 미 농무부가 주관하여 수입국에 6개월에서 10년 정도의 신용을 제공하여 수출하는 정책(GSM 102와 GSM 103)이다. 셋째는 시장접근정책(Market Access Programs)과 외국시장 개발정책(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s)으로 미국의 농산물 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가 주관하여 새로운 수입시장 개방, 수입시장 확대 및 관리 투자하는 정책이다. 이는 수입국에서 유통 및 판매촉진 활동의 제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며 수출시장의 장기개발 정책으로 수입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를 확대

미국의 쌀 수출정책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PL480 정책, GSM102와 GSM103, 시장접근 정책과 외국시장개발 정책, 그리고 공 급자 신용 보증 프 로그램이다.

하는 모든 제반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이다.

넷째, 공급자 신용 보증 프로그램(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 SCGP)으로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이 시행하며, 미국 수출업자들이 세계의 미국 농산품 수입업자에 대해 신용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1997년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SCGP를 이용한 수출액이 매년 두 배씩 증가했다.

표 3 미국의 쌀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수출량

단위 : 천 MT,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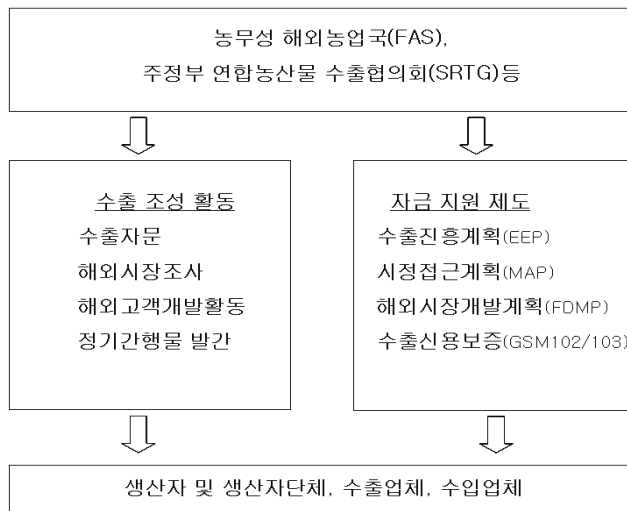
연도	PI 480	416(b)	Food for Education	Food for Progress	CCC: African relief exports	총 식량 원조	EEP	Expot programs	Exports outside specified export programs	총 수출	수출 지원에 의한 수출 비중
1978	502.0	—	—	—	—	502.0	—	502.0	1,695.4	2,197.4	22.8
1979	442.0	—	—	—	—	442.0	—	442.0	1,891.0	2,333.0	18.9
1980	500.0	—	—	—	—	500.0	—	500.0	2,359.0	2,859.0	17.5
1981	320.0	—	—	—	—	320.0	—	320.0	2,677.0	2,997.0	10.7
1982	332.0	—	—	—	—	332.0	—	332.0	2,444.0	2,776.0	12.0
1983	429.0	—	—	—	—	429.0	—	429.0	1,780.0	2,209.0	19.4
1984	366.0	—	—	—	49.0	415.0	—	415.0	1,797.4	2,212.4	18.8
1985	500.0	—	—	—	180.0	680.0	—	680.0	1,228.0	1,908.0	35.6
1986	411.0	—	—	—	—	411.0	22.7	433.7	1,803.3	2,237.0	19.4
1987	370.0	59.6	—	—	—	429.6	28.0	457.6	1,954.4	2,412.0	19.0
1988	338.0	29.2	—	—	—	367.2	120.5	487.7	1,637.3	2,125.0	23.0
1989	355.0	0.0	—	—	—	355.0	20.0	375.0	1,875.0	2,250.0	16.7
1990	276.0	0.0	—	—	—	276.0	0.0	276.0	2,221.7	2,497.7	11.1
1991	210.0	4.0	—	—	—	214.0	75.6	289.6	2,136.3	2,425.9	11.9
1992	228.5	0.0	—	16.1	—	244.6	358.1	602.7	1,668.9	2,271.6	26.5
1993	198.8	0.0	—	137.0	—	335.8	278.5	614.3	2,188.4	2,802.7	21.9
1994	222.0	0.0	—	10.2	—	232.2	46.4	278.6	2,165.8	2,444.5	11.4
1995	195.8	0.0	—	13.5	—	209.3	112.7	322.0	3,406.2	3,728.2	8.6
1996	178.5	0.0	—	12.0	—	190.5	23.0	213.5	2,617.5	2,831.0	7.5
1997	114.9	0.0	—	14.4	—	129.3	—	129.3	2,435.6	2,564.9	5.0
1998	178.3	0.0	—	11.0	—	189.3	—	189.3	3,124.2	3,313.5	5.7
1999	541.8	0.0	—	44.9	—	586.7	—	586.7	2,499.6	3,086.3	19.0
2000	208.7	147.2	—	37.0	—	392.9	—	392.9	2,922.5	3,315.4	11.9
2001	144.3	29.7	21.6	30.3	—	231.0	—	231.0	2,834.6	3,065.6	75.0
2002	241.1	56.0	31.5	27.4	—	356.0	—	356.0	3,186.8	3,542.8	10.0
2003	262.7	0.0	0.0	46.9	—	309.6	—	309.6	4,168.6	4,478.2	6.9
2004	129.4	0.0	29.4	55.3	—	214.1	—	214.1	3,484.5	3,698.6	5.8
2005	125.5	0.0	3.2	20.9	—	149.6	—	149.6	4,108.3	4,257.9	3.5
2006	52.7	0.0	15.5	28.0	—	96.1	—	96.1	3,927.6	4,023.7	2.4
2007 5/	97.1	0.0	28.5	10.9	—	136.4	—	136.4	3,181.0	3,317.4	4.1

자료: USDA/FAS, 2008

CCC는 SCGP를 통해서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불하지는 않으나 해외 바이어들이 지불하는 대금의 65%를 보증한다. 미국 수출업자들은 외국바이어들에게 단기신용(180일 이하)을 제공하는 상환위험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 수출업자들은 신용한도를 인상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쌀 수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PL 480과 Food for Education의 비중이 가장 높다. 쌀 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쌀 수출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1978년 총 수출의 22.8%를 차지했던 지원에 의한 수출은 2006년 2.4%로 89%감소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미국의 총 쌀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수출 지원 사업에 의한 쌀 수출비중은 2001년을 제외하고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미국정부의 쌀 수출 지원 활동



미국정부의 노력과 쌀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의 활동 역시 활발하다. 미국 쌀 연합회(Rice Federation)는 미국 내 쌀 생산자, 도정업체, 각종 유관업체 등이 회원 내지 준회원으로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단일단체로 쌀 생산자협회와 함께 미 농무부 해외농업국(FAS)의 쌀 수출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쌀 수출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쌀 연합회 등록업체는 Farmers Rice Cooperative, Archer Daniels Midland Co 등 36개 기업이며, 쌀 생산자 협회 등록업체는 카길, 코넬 Rice & Sugar Co 등 21개 업체이다. 이들 단체는 주요 쌀 수입국의 정부 관계자를 만나 쌀 수출을 홍보하고 수입규제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 판매촉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쌀 연합회와 쌀 생산자 협회 등 단체들은 주요 쌀 수입국의 정부 관계자를 만나 쌀 수출을 홍보하고 수입규제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등 판매촉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쌀 유통연망

미국 내 쌀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매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공장에서 도정된 쌀이 대형할인점으로 유통되는 간단한 구조를 지닌다. 일부 대형할인점의 경우 자사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도정공장의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다. 일반적인 미국 쌀의 유통경로는 생산자 → 도정공장 → 도매상 → 마켓 → 소비자이다. 이러한 유통과정을 거치며 미국 내 쌀의 소비자 가격은 도매상 원가의 2배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표 4 2005년 자포니카 백미의 유통 상황(정곡)

단위 : 톤, 백분율

구 분	유통량	비중
소매점	84,469	18
할인점	36,958	8
소수민족유통	123,032	26
주요식품업체	11,738	2
농무성사료지원	858	0
군납	5,061	1
산업용 식품가공	200,393	42
재포장	15,894	3
합계	478,402	100

자료: USA Rice Domestic Usage Report, 2007

표 5 2005년 산업용 쌀의 용도(정곡)

단위 : 톤, 백분율

구 분	유통량	비중
소비용 가공	15,571	73
맥주	5,045	24
sake	396	2
애완용 사료	2	0
기타	359	2
합계	21,372	100

자료: USA Rice Domestic Usage Report, 2007

2005년 자포니카 백미 유통 상황을 살펴보면 산업용 식품가공 용도의 비중이 42%, 소수민족 유통로 26%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자포니카 백미 유통 상황을 살펴보면 산업용 식품가공 용도의 비중이 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아시안계와 히스패닉계의 소수민족이 고유의 브랜드로 유통·소비하는 소수민족 유통으로 전체 26%를 차지하여 소매점의 유통보다 약 8% 높았다. 산업용 쌀의 경우 직접적인 식용으로 이용되는 소비용가공의 비중

이 73%로 가장 높고 맥주 원료용이 24%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의 쌀 정책

2002년 농업법은 쌀 생산자에 직불제, 가격보전 직불제(counter-cyclical payments), 유통지원 융자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1997년 농업법에서 책정된 수익보험과 작물보조금 혜택은 유지되었다. 정부의 수출진흥정책과 식품보조정책 역시 쌀 수요를 증가시켜 쌀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고정 직불제에서 토지소유주와 생산자는 2002~2007년 동안 해마다 쌀 1톤당 \$51.88를 지원받고 있으며, 가격보전 직불제는 유효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적용되는데 목표가격은 톤당 \$231달러이다. 또한 유효가격은 당해 전국평균농판가격이나 해당 작목의 국가융자금 중 높은 것과 해당 작목의 직불금을 합한 것으로 최소 유효가격은 톤당 \$198수준으로 책정된다. 가격보전직접지불은 목표가격을 최소가격 수준으로 지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상품목의 유효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시행된다. 2005년의 경우 가격보전직불제로 톤당 \$1.55가 지불되었고 이에 따라 농가는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 수준으로 쌀을 판매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유통지원융자프로그램은 특정품목을 담보로 생산자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수확기 해당품목의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을 때 생산자에게는 더 낮은 수준의 유리한 융자상환단가(marketing loan repayment rates)가 허용된다. 융자단가보다 낮은 상환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생산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쌀 조곡에 대한 융자단가는 톤당 \$143.48이다.

2002년 미국 농업법은 쌀 생산자에 직불제, 가격 보전 직불제, 유통 지원 융자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과 식품 보조 정책 역시 쌀 수요를 증가시켜 쌀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자료

- 김윤식. “캘리포니아 쌀의 수출가능성” 『농촌경제』 29(3), 2006
- 김한호. “미국의 농업·농정동향” 농업전망 2007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349~373, 2007
- 오정윤, 김영섭. “미국의 쌀 수출전략” 「농협 CEO Focus」 제152호, 2005.03
- 이대섭, 주현정. “자포니카 쌀의 국제교역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8 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469~489, 2008
- R.K. Smith, E.J. Wailes, G.L. Cramer "The Market Structure of the U.S Rice Industry"(1990), Arkansa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 N.Children, A.Burdett. "The U.S. Rice Export Market",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0, ERS, USDA
- N. Childs,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various issues, USDA/ERS.
- USDA/ERS, "U.S. Rice Policy Rice Briefing Room", 2008
- USA Rice Federation, "U.S. Domestic Usage Report 2005~2006", 2007

표 6 미국의 자포니카 쌀 수급(정곡기준)

단위 : 천 톤

연도	이월재고	생산량	수입량	총공급	소비량	수출량	기말재고	총소비
1982	959	1,911	13	2,883	768	695	1,419	2,883
1983	1,419	1,124	41	2,584	859	810	914	2,584
1984	914	1,359	60	2,334	880	638	816	2,334
1985	816	1,095	48	1,959	597	530	832	1,959
1986	832	1,161	—	1,963	839	454	670	1,963
1987	670	1,289	57	2,016	983	689	344	2,016
1988	344	1,287	—	1,612	855	473	284	1,612
1989	284	1,439	42	1,766	1,067	329	369	1,766
1990	369	1,533	18	1,921	1,239	311	370	1,921
1991	370	1,595	18	1,983	1,225	347	410	1,983
1992	410	1,640	9	2,059	1,256	300	503	2,059
1993	503	1,684	76	2,264	1,310	634	319	2,264
1994	319	2,043	27	2,389	1,309	574	505	2,389
1995	505	1,656	58	2,219	1,202	563	454	2,219
1996	454	1,841	34	2,328	1,278	665	385	2,328
1997	385	1,858	42	2,284	1,403	490	391	2,284
1998	391	1,432	68	1,892	1,187	489	216	1,892
1999	216	1,720	73	2,009	1,089	589	331	2,009
2000	331	1,972	73	2,376	1,312	568	495	2,376
2001	495	1,515	120	2,130	1,128	663	339	2,130
2002	339	1,706	143	2,187	1,096	797	295	2,187
2003	295	1,616	192	2,103	1,001	709	392	2,103
2004	392	1,966	81	2,439	1,205	795	439	2,439
2005	439	1,451	163	2,054	1,028	726	300	2,054
2006	300	1,509	205	2,014	1,103	593	318	2,014
2007	318	1,756	206	2,280	1,132	730	418	2,280

자료 : USDA, Rice Yearbook, various issues.

농업 · 농정 동향

세계 유기농업의 흐름

베트남 농업

미국 농어업부문 시장개방 피해대책

미국의 복지개혁

한일간 사료가격 비교

세계 유기농업의 흐름*

김 창 길 · 이 상 건

최근 전세계적인 웰빙 추세의 확산으로 인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약적 농업에 따른 환경문제 등으로 유기농업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132개국의 약 72만 농가가 3천 만ha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유기농업은 1998년 이후 연평균 약 19%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면적은 오세아니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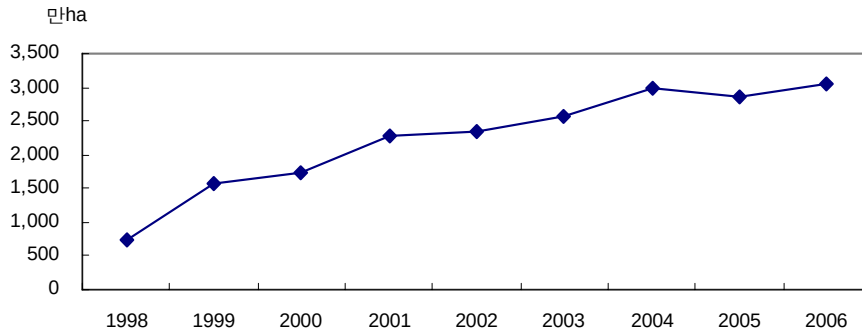
1. 세계 유기농업 실천현황

총괄

소비자들의 생활양식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전세계적으로 유기농산물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유기농산물 수요증가로 인하여 전세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1998년 750만ha에서 2006년 3,042만ha로 연평균 19.1%씩 증가하였다. 2005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중국, 칠레, 호주 등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본 내용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 발간한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2008』, 유럽연합의 『Statistical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Organic Farming in EU-15, Switzerland and Norway, 1997-2006』, 미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 ERS)의 『Organic Production』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 이상건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changgil@krei.re.kr, 02-3299-4265)

그림 1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1988~2006)



자료: IFOAM.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cs & Emerging Trends 2008 에 제시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임.

세계 유기농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132개국 718,744농가가 3,042만ha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IFOAM, 2008).

대륙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경우 오세아니아 대륙이 1,238만ha로 전세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약 40.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유럽 739만ha(24.3%), 라틴아메리카 492만ha(16.2%), 아시아 309만ha(10.2%), 북아메리카 222만ha(7.3%), 아프리카 42만ha(1.4%) 순이다. 유기농업 실천농가수의 경우 라틴아메리카가 223,277농가로 전체 실천농가의 약 31.1%를 차지하고, 유럽(28.3%), 아프리카(24.4%), 아시아(13.5%), 북아메리카(1.7%), 오세아니아(1.1%)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유기 농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132개국 718,744농가가 3,042만ha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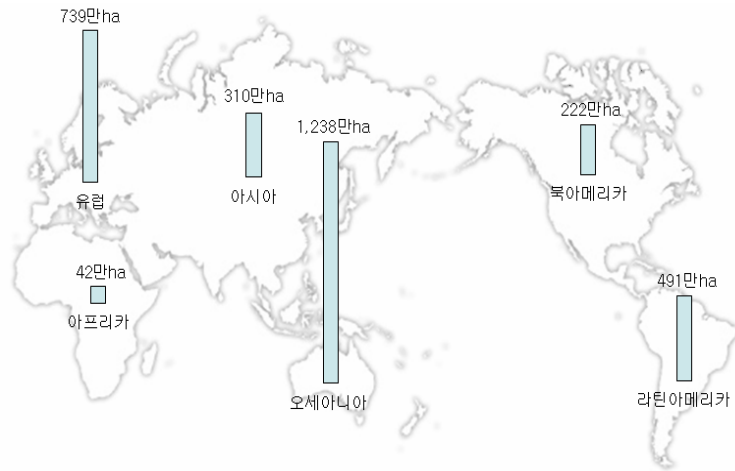
표 1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 현황

구분	실천면적		농가 수		대륙별 경지면적 대비 비중(%)
		구성비(%)		구성비(%)	
아프리카	417,059	1.4	175,266	24.4	0.05
아시아	3,090,924	10.2	97,020	13.5	0.17
유럽	7,389,085	24.3	203,523	28.3	1.62
라틴아메리카	4,915,643	16.2	223,277	31.1	0.68
북아메리카	2,224,755	7.3	12,064	1.7	0.57
오세아니아	12,380,796	40.7	7,594	1.1	2.70
계	30,418,261	100.0	718,744	100.0	0.65

자료: IFOAM(2008).

대륙별 농경지 면적 대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은 오세아니아가 2.7%로 가장 높고, 유럽이 1.6%, 그 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 면적(2006년)



자료: IFOAM(2008).

대륙별 농경지 면적 대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은 오세아니아가 2.7%로 가장 높고, 유럽이 1.6%, 그 외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1% 미만이다.

2005년 대비 2006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2,857만ha에서 3,042만ha로 6.5% 증가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우 15%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럽,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는 4~8%, 북아메리카가 1% 증가하였다.

표 2 대륙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변화(2005~2006)

구분	2005년(ha)	2006년(ha)	증가율(%)
아프리카	331,697	417,059	25.7
아시아	2,682,630	3,090,924	15.2
유럽	6,886,087	7,389,085	7.3
라틴아메리카	4,712,562	4,915,643	4.3
북아메리카	2,199,225	2,224,755	1.2
오세아니아	11,760,844	12,380,796	5.3
계	28,573,037	30,418,261	6.5

자료: IFOAM(2008).

유기농경지 활용 현황은 전체 유기농경지 중 67.9%인 2,064만ha가 영구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작지 14.6%, 농경지 4.0%, 다년생 작물 4.8%, 기타 7.7%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의 경우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중 약 39%가 다년생 작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올리브, 커피, 코코아, 의약 및 향수 작물이 재배된다. 아시아는 경작지의 비중이 높으며 주로 쌀을 포함한 곡물을 재배하며 유럽의 경우 유기농경지가 주로 경작지(41.4%)와 영구초지(42.9%)로 활용된다. 경작지에서는 대부분

곡물이 재배되고, 영구초지에서는 올리브, 과일, 견과류, 포도 등이 재배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유기농경지 중 약 80%가 영구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커피, 과일, 견과류, 코코아가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아메리카는 경작지와 영구초지의 활용 비율이 각각 43.1%, 44.5%이며, 오세아니아의 경우 96.3%가 영구초지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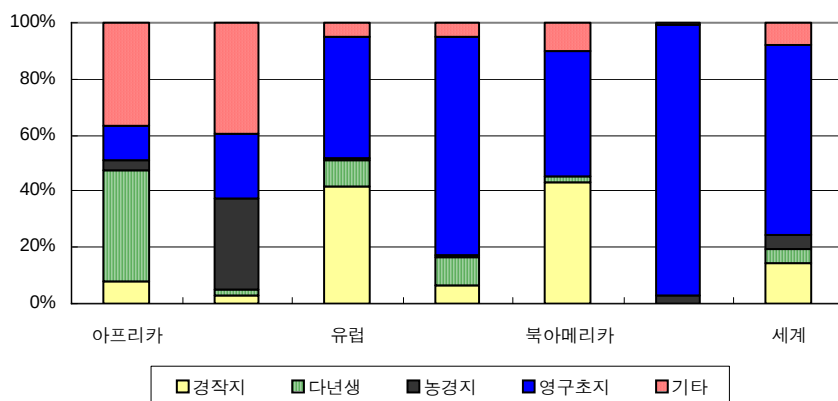
표 3 대륙별 유기농경지의 이용 현황(2006년 기준)

단위: 천 ha

구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세계
경작지	34	94	3,062	306	958	-	4,455
다년생 작물	163	66	701	495	45	-	1,471
농경지	16	998	82	59	-	369	1,523
영구초지	50	711	3,172	3,792	991	11,925	20,642
기타	153	1,221	372	264	230	86	2,327
합계	417	3,091	7,389	4,916	2,225	12,381	30,418

자료: IFOAM(2008).

그림 3 대륙별 유기농경지의 이용형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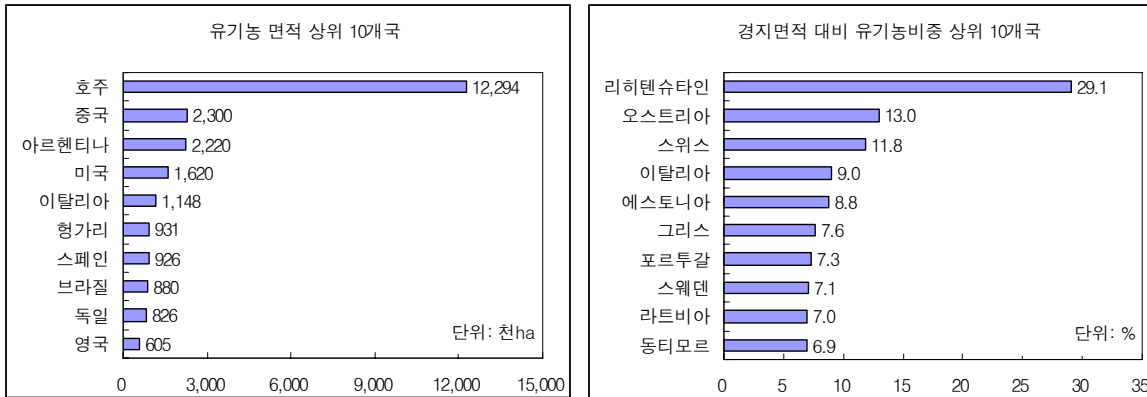


자료: IFOAM(2008).

국가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호주가 1,230만ha로 가장 넓고, 중국 230만ha, 아르헨티나 220만ha, 미국 160만ha, 이탈리아 114만ha 등의 순이다.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경지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리히텐슈타인(29.1%)이며, 오스트리아(13.0%), 스위스(11.8%), 이탈리아(9.0%), 에스토니아(8.8%)순이다. 따라서 간행농법 대비 유기농 실천 농가 수와 면적 비중은 유럽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호주가 가장 넓고, 중국, 아르헨티나, 미국, 이탈리아 순이다.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경지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순이다.

그림 4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및 유기농업 비중 상위 10개국(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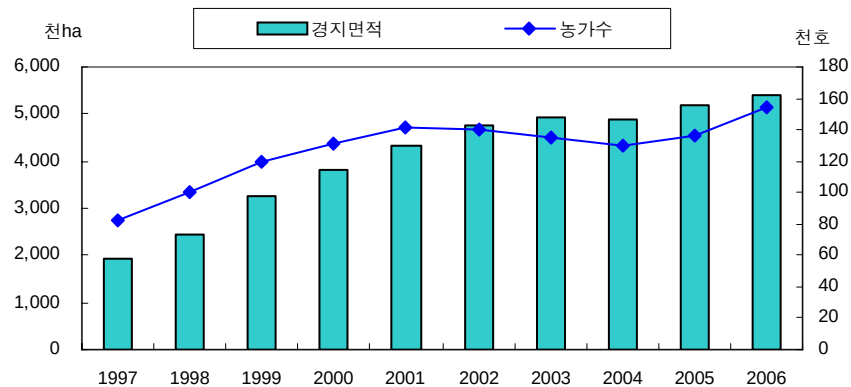
자료: IFOAM(2008).

유럽

2006년 기준 유럽 전체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740만ha 수준으로 전세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24.3%이다.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은 1.6%로 전세계에서 유기농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2006년 기준 유럽 전체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740만ha 수준으로 전세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24.3%이다. 농가 수는 203,523호로 전세계 유기농가의 28.3%이며,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은 1.6%로 전 세계에서 유기농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그림 5 EU-15개국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및 실천농가수 변화 추이



자료: EU. Statistical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Organic Farming in EU-15. 2007.

유럽 내에서도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EU-15개국의 유기농업이 활성화되었다. EU-15개국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1997년 192만ha에서 2006년 540만ha로 연평균 12.2% 증가하여 유럽 전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중 약 73%를 차지

지하고 있다. 농기수도 82,609호에서 153,843호로 연평균 7.2% 상승하였으며, 특히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은 약 4% 수준이다.

유럽 내 국가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1,148천ha로 유럽 전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 926천ha(12.4%), 독일 826천ha(11.1%), 영국 605천ha(8.1%), 프랑스 553천ha(7.4%) 순이다. 전체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은 오스트리아가 13.0%로 가장 높았으며, 라트비아(9.6%), 이탈리아(9.0%), 에스토니아(8.8%), 그리스(7.6%) 등의 순이다.

그림 6 유럽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현황(2006년 기준)



EU-15개국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유럽 전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중 약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은 약 4% 수준이다.

자료: IFOAM(2008).

유럽 주요 국가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997년 54천ha에서 2006년 620천ha로 연평균 31.1% 증가하였으며, 스페인(22.3%), 프랑스 (14.3%), 독일(8.7%), 이탈리아(8.2%), 오스트리아(3.2%) 등도 연평균 3~23% 정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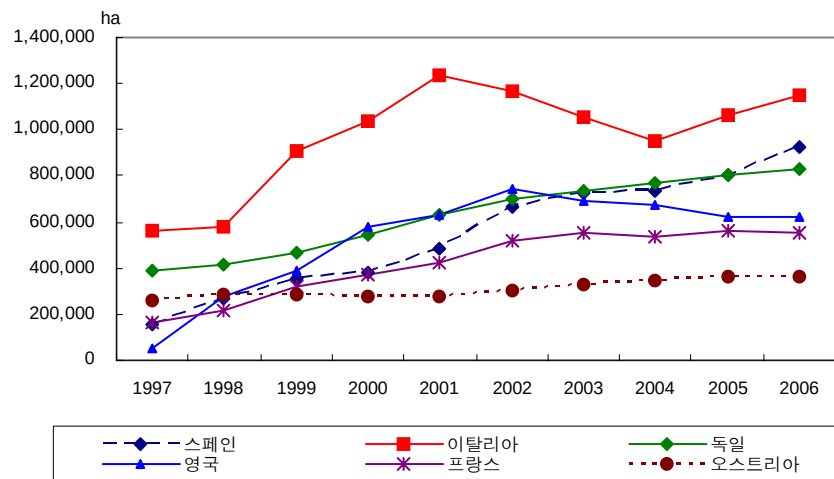
표 4 유럽 주요국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변화

단위: 천 ha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증가율
이탈리아	565	577	911	1,040	1,238	1,168	1,052	954	1,067	1,148	8.2
스페인	152	269	352	381	485	665	725	733	808	926	22.3
독일	390	417	464	546	635	697	734	768	807	826	8.7
영국	54	275	389	579	631	741	695	675	620	620	31.1
프랑스	165	219	316	371	420	518	551	534	561	553	14.3
오스트리아	260	281	284	278	280	301	329	345	360	361	3.7

자료: EU(2007).

그림 7 유럽 주요국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1997~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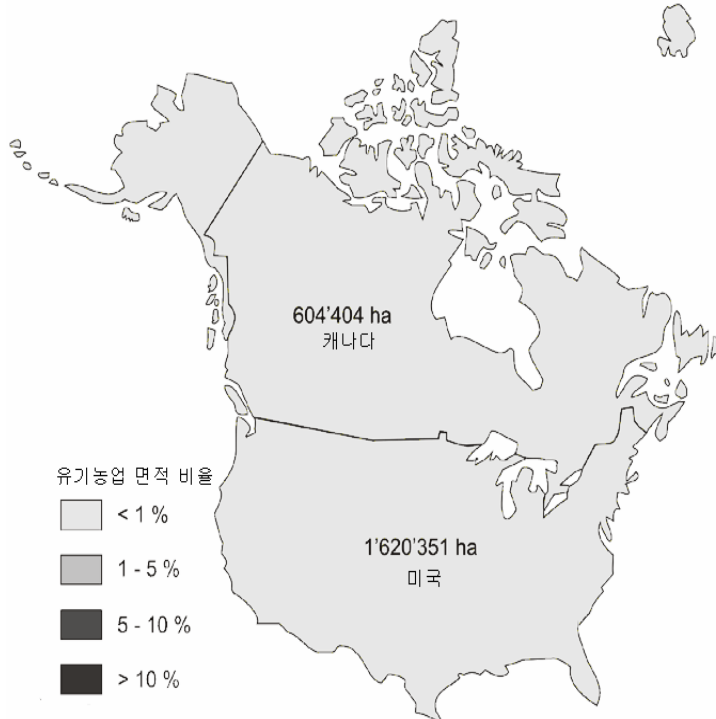


북아메리카

2006년 기준 북아메리카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전세계의 7.3%이다. 이 중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약 73%를 차지한다.

2006년 기준 북아메리카 전체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220만ha 수준으로 전세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7.3%이다. 북아메리카 유기농산물 재배 농가수는 12,064호로 전 세계 유기농가의 1.7%이며 전체 농경지면적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은 0.6%이다. 미국의 유기농업 실천농가는 8,493호이고, 실천면적은 162만ha로 전체 농경지면적의 0.5%를 차지하며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유기농업 실천농가는 3,571호이고, 실천면적은 약 60만ha로 전체 농경지 면적의 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북아메리카의 유기농업 실천 현황(2006년 기준)



자료: IFOAM(2008).

미국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2000년 718,764ha 수준에서 2005년 1,640,798ha로 연평균 17.9% 증가하였다. 특히 목초지의 경우 2000년 225,482ha에서 2005년 943,403ha로 연평균 33.1% 증가하여 전체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이 2000년 31.4%에서 2005년 57.5%로 약 25% 증가하였다. 한편 유기농가수는 2000년 6,592농가에서 2005년 8,493농가로 연평균 5.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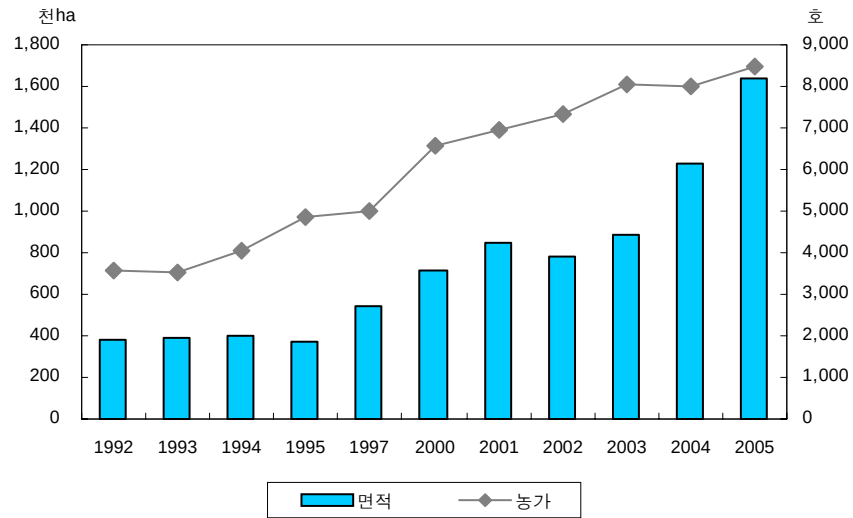
미국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연평균 17.9% 증가하고 있으며, 목초지의 증가로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5 미국의 유기농경지 및 농가수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농경지 (ha)	목초지	225,482	319,507	253,298	301,607	644,577	33.1
	경작지	493,282	528,029	525,952	587,452	587,757	7.2
	합계	718,764	847,536	779,250	889,059	1,232,333	17.9
농가수(호)	6,592	6,949	7,323	8,035	8,021	8,493	5.2

자료: USDA ERS. <http://www.ers.usda.gov/Data/Organic/>.

그림 9 미국의 유기농경지 및 농가수 변화 추이(1992~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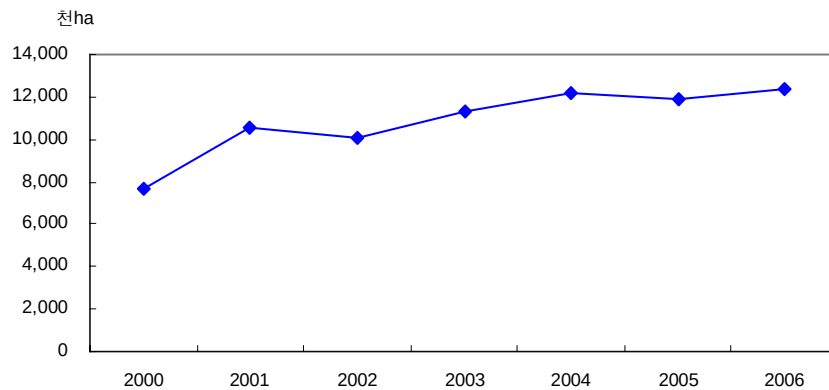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대륙은 전세계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2006년 40.8%로 2000년에 비해 4%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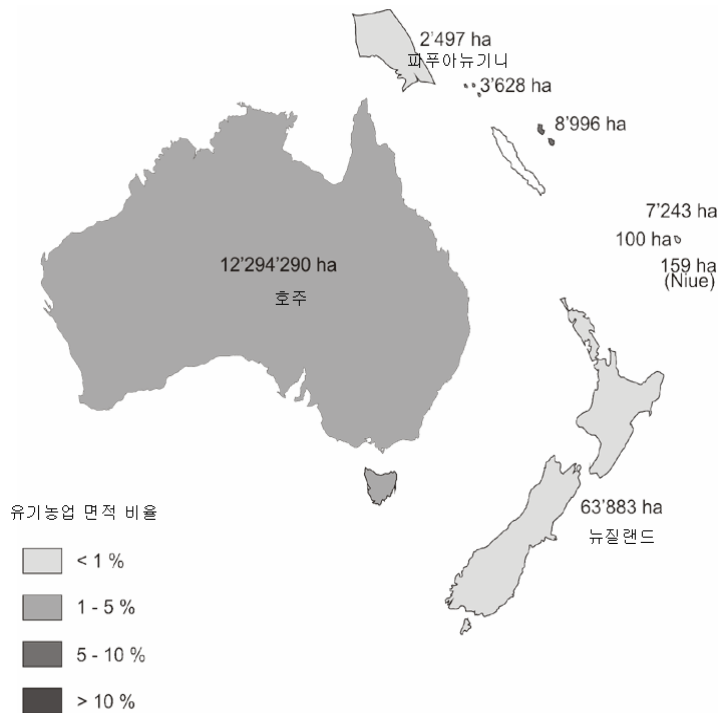
오세아니아 대륙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2000년 771만ha에서 2006년 1,238만ha로 연평균 8.2% 상승하였다. 전 세계 유기농경지 중에서 오세아니아 대륙의 유기농경지 비중은 2000년 44.8%에서 2006년 40.8%로 4%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0 오세아니아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2000~2006)



국가별로 살펴보면 호주의 1,550농가가 1,230만ha의 농경지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유기농경지 중 40.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뉴질랜드 860농가(63,883ha), 파푸아뉴기니 4,558농가(2,497ha)가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전체 농경지 대비 유기농업 실천 농경지 비율은 호주가 2.8%로 가장 높고, 뉴질랜드 0.4%, 파푸아뉴기니 0.2% 등의 순이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오세아니아 대륙의 유기농산업 성장은 해외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

그림 11 오세아니아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현황(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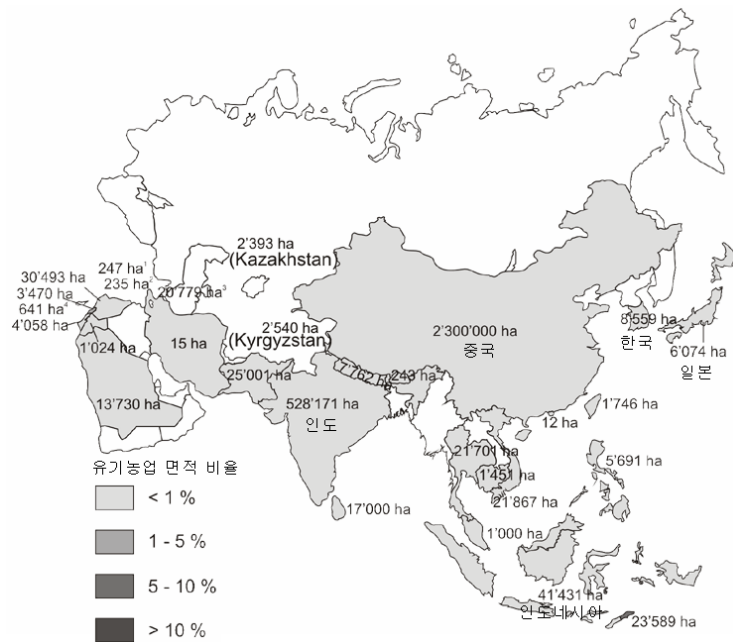
자료: IFOAM(2008).

아시아

아시아의 경우 유기농업 규모는 작지만 최근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전체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310만ha 수준으로 중국이 2,300천ha로 아시아 대륙의 7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528천ha(17.0%), 인도네시아 41천ha(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 0.4%, 인도 0.3%, 한국 0.5%, 일본 0.2% 등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유기농경지 비중이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경우 유기농업 규모는 작지만,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기농경지 비중은 0.1% 미만이다.

그림 12 아시아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현황(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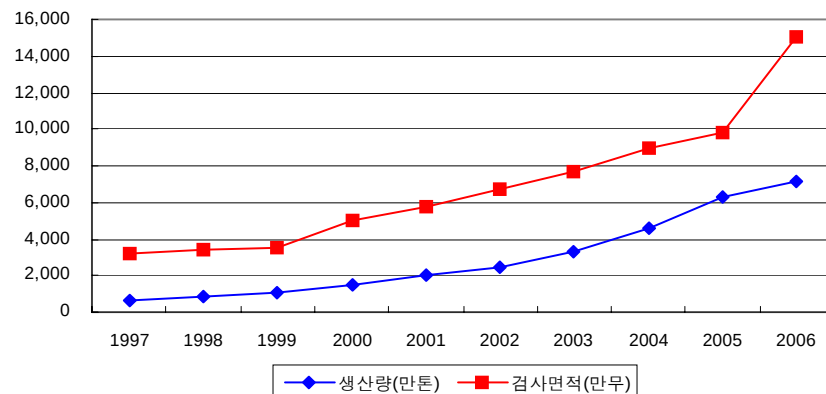


자료: IFOAM(2008).

중국은 적극적인 녹색식품 육성전략에 힘입어 생산량 기준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29%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식품 육성 전략에 힘입어 2006년 녹색식품 생산 업체 수는 4,615개, 상품 수는 12,868개, 생산량은 7,200만 톤, 검사면적은 999만 ha에 이르렀으며 생산량 기준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29%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실적 변화 추이(1997~2006)



자료: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2008). www.greenfood.org.cn

표 6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 소비, 수출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업체수(개)	12,717	1,756	2,047	2,836	3,695	4,615	30.5
상품수(개)	2,400	3,046	4,030	6,496	9,728	12,868	39.9
생산량(만톤)	2,000	2,500	3,260	4,600	6,300	7,200	29.2
소비액(억위안)	500	597	723	860	1,030	1,500	24.6
수출액(억달러)	4	8.4	10.8	12.5	16.2	19.6	37.4
검사면적(만ha)	387	445	514	596	653	999	20.9

자료: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2008). www.greenfood.org.cn

일본의 경우 해외에서의 유기농산물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일본의 총 유기농산물 인증물량(1,343,857톤) 중 국내 인증은 48,591톤(3.6%)이고, 해외인증이 1,295,266톤(96.4%)을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종류별로는 국내인증물량(2006년 기준)의 경우 채소류가 29,949톤(61.6%), 쌀이 10,811톤(22.2%)으로 전체 인증 물량 중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7.6% 증가하였다. 해외인증의 경우 채소류가 106,119톤(8.2%), 과수 131,538톤(10.2%)을 비롯하여 설탕, 커피, 홍차 등 기타 품목 인증물량이 964,208톤(74.4%)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68.9%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수와 설탕, 커피, 홍차 등의 품목은 100%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해외인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 유기농산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외 유기농산물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 유기농산물 인증 물량의 96.4%가 해외인증이다. 특히 과수, 설탕, 커피, 홍차 품목이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7 일본의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물량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채소	19,675	24,545	28,125	29,674	29,107	29,949	8.8
과수	1,391	1,939	2,163	2,029	2,222	1,766	4.9
쌀	7,777	12,338	10,838	10,400	11,369	10,811	6.8
보리	722	559	858	732	655	558	-5.0
대두	1,162	945	786	639	877	974	-3.5
녹차	927	1,246	1,487	1,664	1,610	1,538	10.7
기타	2,081	2,188	2,351	2,291	2,332	3,000	7.6
합계	33,734	43,759	46,609	47,429	48,172	48,596	7.6

주: 기타는 기타 두류, 잡곡류, 홍차, 곤약감자 등을 포함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08).

표 8 일본의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물량

단위: 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채소	23,818	13,059	26,994	63,123	79,917	106,119	34.8
과수	4,085	10,555	18,736	11,233	67,512	131,538	100.2
쌀	1,785	2,031	2,604	4,581	3,171	21,777	64.9
보리	2,058	1,086	1,732	2,414	3,634	7,528	29.6
대두	46,534	44,734	54,109	70,975	35,362	63,647	6.5
녹차	72	1,224	964	1,848	226	449	44.2
기타	15,834	16,331	192,784	295,476	1,250,255	964,208	127.5
합계	94,186	89,019	297,923	449,650	1,440,177	1,295,266	68.9

주: 기타는 홍차, 커피원두, 기타 두류, 너트류, 잡곡류, 설탕, 곤약감자, 손바닥 프루즈 등을 포함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08).

한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실적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였는데, 전체 농가수의 1.6%, 전체 경지면적의 0.5%가 유기농업비중이다.

한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실적(인증실적 기준)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유기농산물 인증실적을 보면, 농가수는 2000년 353호에서 2007년 7,507호로 매년 54.8% 증가하여 인증면적은 2000년 296ha에서 2007년 9,729ha로 매년 64.7%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증량은 2000년 6,538톤에서 2007년 107,179톤으로 매년 49.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이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농가수는 전체 농가수의 약 1.6%, 인증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약 0.5%, 농산물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0.2% 수준으로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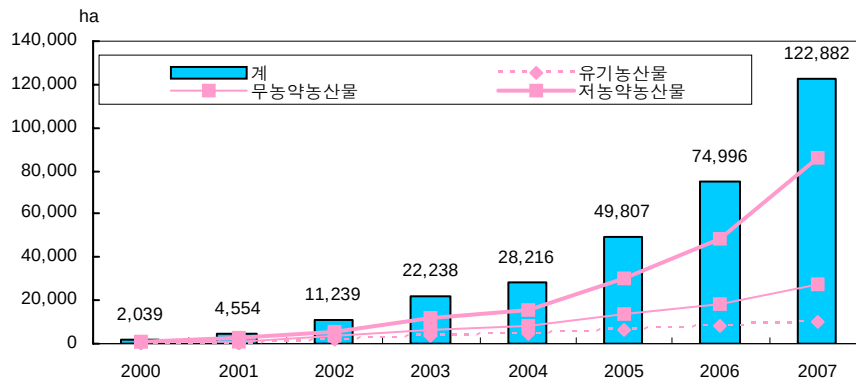
표 9 한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단위: 호, ha, 톤, %

구 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전국 비중 ²⁾
유기 ¹⁾	농가수	353	1,505	2,748	3,283	5,403	7,167	7,507	54.8	0.60
	면 적	296	1,601	3,327	4,622	6,095	8,559	9,729	64.7	0.54
	인증량	6,538	21,114	33,287	36,746	68,091	95,405	107,179	49.1	0.20
무농약	농가수	1,060	4,084	7,426	9,776	15,278	21,656	31,540	62.4	2.53
	면 적	876	3,727	6,756	8,440	13,803	18,066	27,288	63.4	1.52
	인증량	15,694	76,828	120,358	167,033	242,068	320,309	443,989	61.2	0.84
저농약	농가수	1,035	6,303	13,127	15,892	32,797	50,812	92,413	90.0	7.42
	면 적	867	5,911	12,155	15,154	29,909	48,371	85,865	92.8	4.77
	인증량	13,174	102,432	211,558	256,956	487,588	712,380	1,234,706	91.3	2.33
계	농가수	2,448	11,892	23,301	28,951	53,478	79,635	131,460	76.7	10.56
	면 적	2,039	11,239	22,238	28,216	49,807	74,995	122,882	79.6	6.83
	인증량	35,406	200,374	365,203	460,735	797,747	1,128,093	1,785,874	75.1	3.37

주: 1) 유기농산물 출하량에 전환기유기농산물 출하량이 포함됨.
2) 전국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 경지면적, 생산량 대비 비중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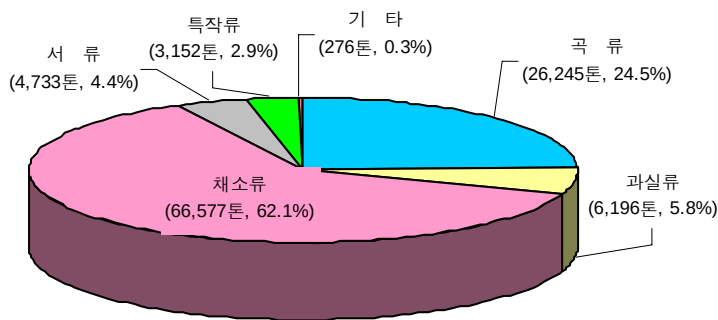
그림 14 한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8).

유기농산물의 품목별 출하량 실태(2007년 기준)를 보면 채소류가 66,577톤(6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곡류 26,245톤(24.5%), 과일류 6,196톤(5.8%), 서류 4,733톤(4.4%) 등의 순이다.

그림 15 품목별 출하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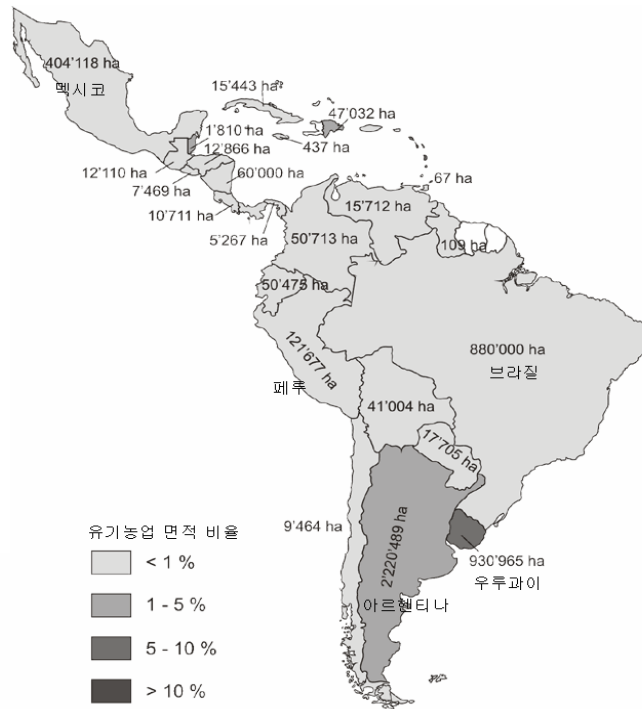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8).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490만ha 수준으로 아르헨티나가 2,220천ha(45.3%)로 가장 넓으며, 우루과이 930천ha(19.0%), 브라질 880천ha(18.0%), 멕시코 404천ha(8.2%), 페루 122천ha(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율은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 미만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유기농업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전체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율이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라틴아메리카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현황(2006년 기준)



자료: IFOAM(2008).

라틴아메리카의 유기농산물 생산과 수출물량은 계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생산된 농산물의 90% 이상이 유럽과 미국에 수출된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유기농경지 면적과 유기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유기농경지 면적이 2000년 3,192,000ha에서 2006년 2,220,489ha로 감소하였지만 유기농산물 생산과 수출물량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유기농경지 면적이 감소하는데 반해 유기농산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유기농경지 중 초지의 비중은 감소하지만 곡물, 설탕, 포도, 올리브 등을 생산하는 경작지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의 경우 90% 이상이 유럽과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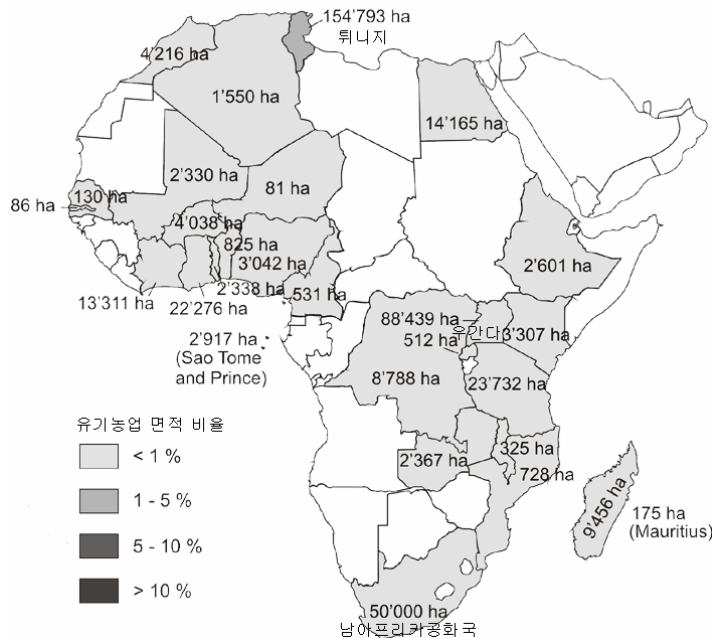
브라질의 경우 유기농경지 면적이 2001년 275,576ha에서 2006년 888,000ha로 연평균 26% 증가하였다. 유기농경지는 대부분 영구초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농경지 중에서 약 15% 정도가 작물재배를 위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주요 수출 유기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콩 등이며 최근 육류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2002년 25,000ha에서 2007년 55,072ha로 연평균 17.1% 증가하여 2006년 현재 4,500농가가 유기농업을 하고 있다. 유기농경지의 약 40%에서는 커피가 재배되고 있으며, 기타 오일작물, 바나나, 망고, 코코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전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417,059ha로 세계 유기농 재배면적의 1.4%를 차지하나, 농가수로는 24% 정도를 차지하여 영세농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을 보면 튀니지가 154,793ha로 아프리카에서 42%를 차지하고, 우간다가 88,439ha(22.1%), 남아프리카공화국 50,000ha(12.5%), 탄자니아 23,732ha(5.7%) 등의 순이며, 기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기농경지가 1만ha 이하로 나타났다. 전체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을 살펴보면 튀니지가 1.6%, 우간다 0.7%,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 0.05%를 차지하고, 그 밖의 국가에서는 유기농경지 비중이 0.05% 미만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는 세계 유기농 재배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가수로는 2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세농들에 의한 유기농산물 생산이 많다.

그림 17 아프리카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현황(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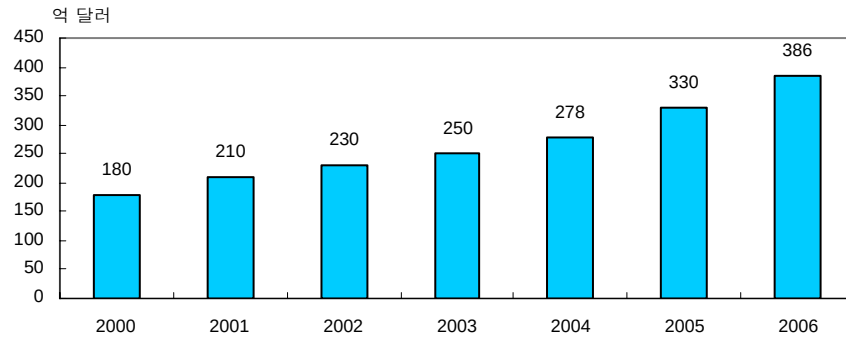


자료: IFOAM(2008).

2. 유기농산물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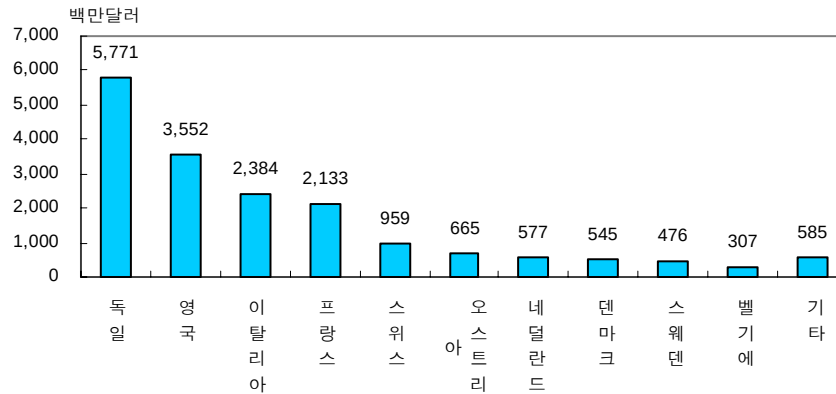
세계의 유기식품(음료 포함)의 시장유통 규모는 2000년 180억 달러(약 17조원)에서 2006년 386억 달러(약 36조원)로 연평균 13.6% 증가하였다. 유기식품 소비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두 지역이 전세계 유기식품 매출액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8 세계 유기식품 및 음료 시장규모 변화 추이(2000~2006)



자료: IFOAM(2008).

그림 19 유럽 주요국의 유기농 시장규모(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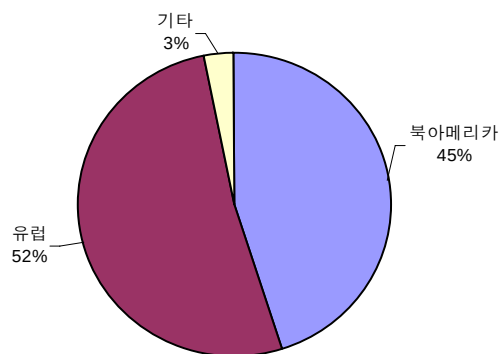


자료: IFOAM(2008).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식품 및 음료시장이며, 이 중 대부분이 서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개국이 유럽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식품 및 음료 시장으로 2006년 시장유통 규모는 200억 달러(약 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대부분이 서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개국이 유럽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이 57억 달러(약 5.4조원), 영국이 36억 달러(약 3.3조원), 이탈리아가 24억 달러(약 2.2조원), 프랑스가 21억 달러(약 2조원)에 이른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는 유기식품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지 시장이 작기 때문에 유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그림 20 대륙별 유기식품 시장 비중



자료: IFOAM(2008).

북아메리카의 유기식품 및 음료의 판매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시장 유통 규모는 173억 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농 시장으로 2006년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약 160억 달러(약 15조원)로 전세계 시장규모의 약 4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로부터 상당한 양의 유기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시아 시장은 유기식품 생산과 판매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시장 유통 규모는 78억 달러(약 7,243억 원)로 대부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서 소비되고 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이 가장 많지만 대부분 수출하여 유기농 시장은 34억 달러(약 3,157억 원) 수준이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90% 이상 수출하여 자국 내 시장규모는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농시장으로 2006년 전세계 시장규모의 약 41.5%를 차지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의 경우 가장 많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대부분 수출하기 때문에 유기농 시장은 적은 편이다.

3. 양우 전망

세계 유기농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륙별·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매년 10~20%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국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 전체 농업에서 유기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의 리히테슈타인이 29.1%로 가장 높고, 오스트리아 13%, 스위스 11.8%, 이탈리아 9% 등 EU-15개 국가가 5%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캐나다 0.9%, 미국 0.7%, 한국 0.5%, 중국 0.4%, 일본 0.2% 등 대부분의 국가가 1% 미만이다.

전세계적으로 유기농업과 유기농식품 시장은 전체 농업의 10~15% 수준이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는 유기농식품의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킬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기농업과 유기농식품 시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유기농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는 있으나 기술적 측면과 소비자의 수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농업의 20% 이상을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최대 10~15%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유기농산물 시장은 물론이고 유기농 원료를 이용한 유기농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06년 기준 세계 유기식품(음료 포함)의 시장규모는 약 386억 달러(약 36조원)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유기농식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세계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 부문의 성장세는 국가별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 육성에 대한 관심도와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참고자료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2008』.

USDA ERS, 『Organic Production』.

EU, 『Statistical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Organic Farming in EU-15, Switzerland and Norway, 1997-2006』.

베트남 농업*

허 장

1. 일반연왕

베트남은 1986년 제12차 당 대회에서 과감한 개혁(Doi Moi, “쇄신”) 조치를 도입하면서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발전과 공업화를 시작하였다. 그 뒤 1995년 ASEAN, 1998년 APEC 등 지역기구에 가입한데 이어 2006년에는 WTO에도 가입함으로써 국제질서에 완전히 편입하게 되었다. 미국과는 이미 2001년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하노이에서 개최하였고 이 때 부시 대통령이 방월하기도 하였다.

Doi Moi는 1986년 공산당이 실시한 경제개혁조치로 다음 6가지 정책을 담고 있음.

1. 국가경제 관리의 분권화로 국영기업에 자율권 부여
2. 행정에 경제논리를 도입하고 시장지향적 화폐정책으로 인플레이 통제
3. 변동환율, 이자율제도 등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을 채택
4. 농지에 대한 장기 사용권을 인정하고 자재와 시장제품 구입의 자유 확대
5.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사적 부문에 의존
6. 국영, 민영기업이 수출입시 외국시장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허용

1986년 과감한 개혁 조치를 도입하면서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발전과 공업화를 시작한 베트남은 ASEAN, APEC 등 지역기구와 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베트남은 총 64개 시 및 성(省, 우리의 도에 해당), 33개 시, 43개 구, 543개 현(縣, 우리의 군에 해당), 9,098개 사(社, 우리의 읍면에 해당)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으

* 본 내용은 베트남 통계청의 국가통계연보와 관련 국내의 문헌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eojang@krei.re.kr, 02-3299-4357)

며, 기후, 지형 등 자연적 여건에 따라 홍강 델타, 북동, 북서, 북부 중앙해안, 남부 중앙해안, 중앙 고원, 남동, 메콩델타 등 8개 지역으로 나뉜다.

표 1 베트남의 일반 개요

구 분	내 용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면적	329,560km ² (남한 면적의 약3.3배, 남북한 총 면적의 약1.5배) - 해안선 길이: 3,250km - 남북 길이: 1,650km - 동서 길이: 48-600km
기후	아열대 (북부), 열대몬순 (남부) ; 연평균 강우량 2,151mm
인구	2006년 현재 84,155,800명 (남 41,354,700명, 여 42,801,100명)
주요도시	호치민(구 사이공, 561만명), 하노이(수도 300만명), 하이퐁(174만명), 다낭(72만명)
민족	킨(89%), 파이(2.0%), 타이(1.6%), 호아(1.5%), 크메르(1.3%), 능(1.1%) 등
언어	베트남 어(일부 산악족은 고유 언어사용)
종교	불교(60%), 카톨릭교(20%), 기독교(5.0%), 까오다이교(2.5%), 호아호아교(2.5%)
문자 해독률	99%
정부형태	공산체제(당서기장-농 득 마인, 대통령-찬 득 루엡, 수상- 판 반 카이)
입법부	단원제(450명)



8천 5백만 명에 육박하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의 인구성장률은 2006년 현재 1.26%(남 1.24%, 여 1.28%)이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인구의 증가 속도에 비하여 도시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도시인구의 비율은 27.1%이며, 1995년의 20.7%에서 6.4%p 늘었다. 2004년 기준으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0.709로 전 세계에서 109위를 차지하였다(같은 해 한국은 0.912로 26위)

2. 일반경제

베트남은 수 년 동안 7~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7년 기준 1인당 GDP는 838달러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2007년도 실업률은 4.6% 수준이다.

경제성장

베트남은 수 년 동안 7~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의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05년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7%, 싱가포르 6.4%, 인도네시아는 5.6%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1인당 GDP는 2007년 기준 838달러로 아직도 낮은 수준으로 2005년의 경우 라오스, 캄보디아에 비하면 높지만 말레이시아의 13%, 태국의 23%, 인도네시아의 49% 수준이다(신승관 외 2007).

그림 1 지역별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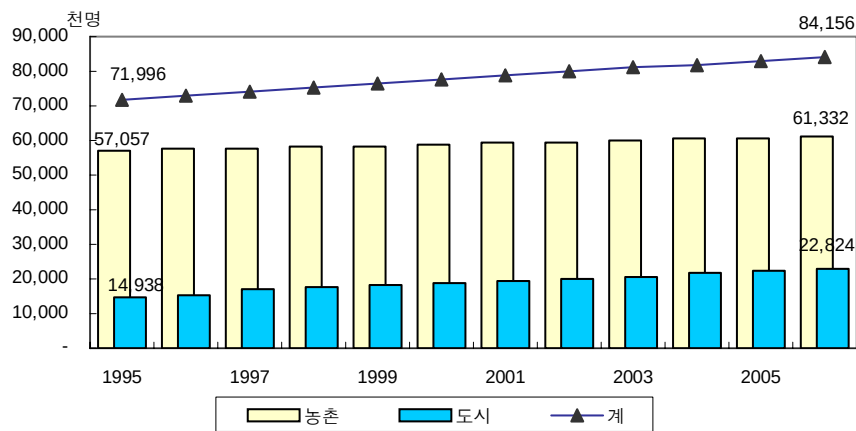


표 2 GDP, 1인당 GDP, 수출입액 및 GDP 성장률

구 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 (VND)	441,646	535,762	613,443	715,307	839,211	973,790	
1인당 GDP (VND)	5,689	6,720	7,583	8,720	10,098	11,571	
1인당 GDP (미화)	402	440	492	553	639	722	838
수출액(VND)	243,049	304,262	363,735	470,216	582,069	715,369	
수입액(VND)	253,927	331,946	415,023	524,216	617,157	747,840	
GDP 성장률(불변가격)	6.79	7.08	7.34	7.79	8.44	8.17	8.5

주: 1) 경상가격 기준. 단 GDP 성장률은 불변가격 기준.

2) 2007년 평균환율은 1 USD = 16,084 VND(베트남 동).

도시부문에서의 실업률은 2000년 6.42%에서 꾸준히 낮아져 2003년 5.78%, 2006년 4.82%가 되었다. 한편 2007년도 전국 실업률은 4.6%이다.

표 3 도시 실업률 변화추이

구 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실업률 (도시)	6.42	6.01	5.78	5.60	5.31	4.82

산업구조

산업별 생산액 증가추이(1994 불변가격)를 보면 농림어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

지만 제조업, 서비스업에 비하여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생산액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림 2 산업부문별 생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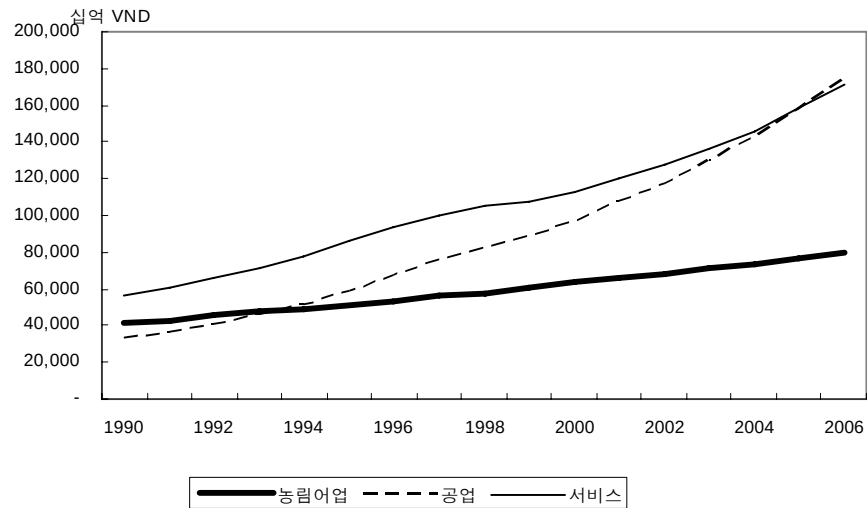


표 4 산업부문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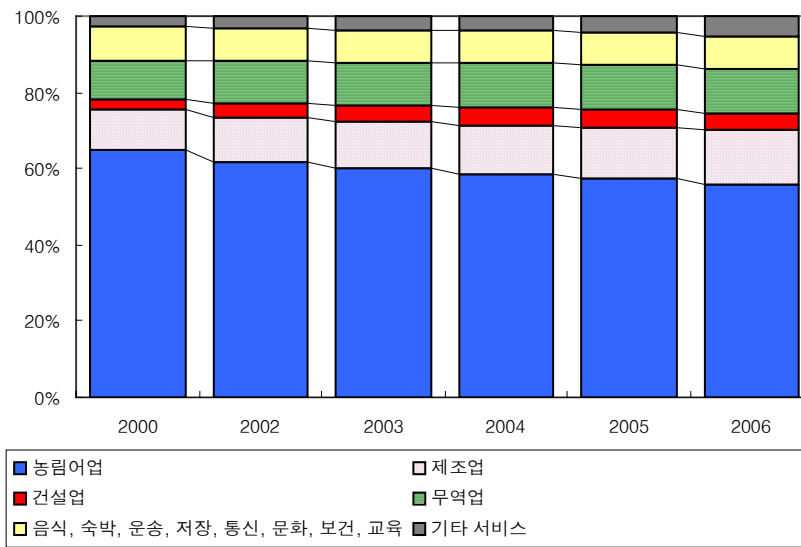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1~9
GDP 성장률	7.8	8.4	8.2	8.2
농림어업	4.4	4.0	3.4	3.0
광공업, 건설업	10.2	10.7	10.4	10.2
광공업	10.5	10.6	10.2	10.2
광업	9.3	1.0	0.8	0.3
제조업	10.9	13.1	12.4	12.5
건설업	9.0	10.8	11.1	10.1
서비스	7.3	8.5	8.3	8.5
소매업	7.8	8.4	8.6	8.3

산업별 생산액 추이를 보면 농림어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속도가 느려서 생산액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종사자수의 경우도 2005년 55.7%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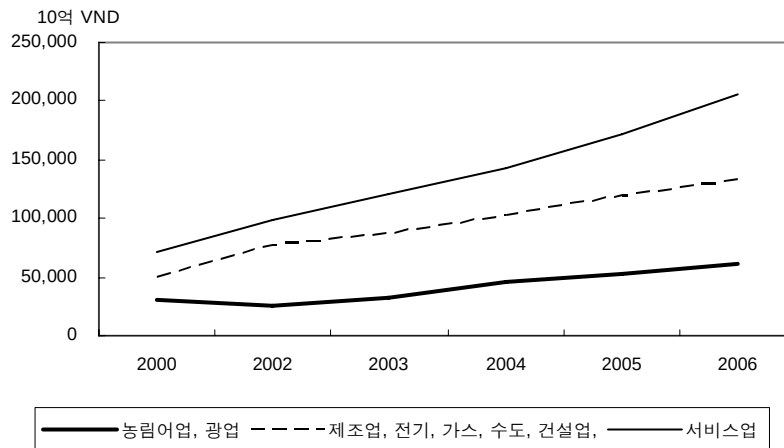
2006년 산업별 생산액 비중은 농업이 20.4%, 공업 등 제조업이 41.6%, 서비스업이 38.1%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2000년 65.1%에서 2005년 55.7%로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은 같은 기간 10.3%에서 14.3%, 건설업은 2.8%에서 4.6%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3 산업부문별 종사자 수 비중



산업 부문별 투자액(공공, 민간)의 변화를 보면, 경상가격 기준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1차 산업에 대한 투자의 증가율은 낮다.

그림 4 산업부문별 투자액



무역

주요 수출 품목은 2006년에 원유(83억 달러), 의류(58억 달러), 신발(36억 달러), 해산물(34억 달러), 전자 및 컴퓨터 부품(17억 달러)로, 에너지 및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위주로 되어 있다.

수출 성장률이 20% 내외인 반면, 베트남의 총 수입액은 2006년 449억 달러, 2007년 608억 달러에 달해 증가율이 30%를 훨씬 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정제석유(60억 달러), 기계 및 장비(66억 달러), 철강(29억 달러), 섬유(30억 달러) 등이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와 인플레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185억 달러)이 외채규모(172억 달러)를 상회하므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동아일보, 2008.5.29).

표 5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액, 구성비율 및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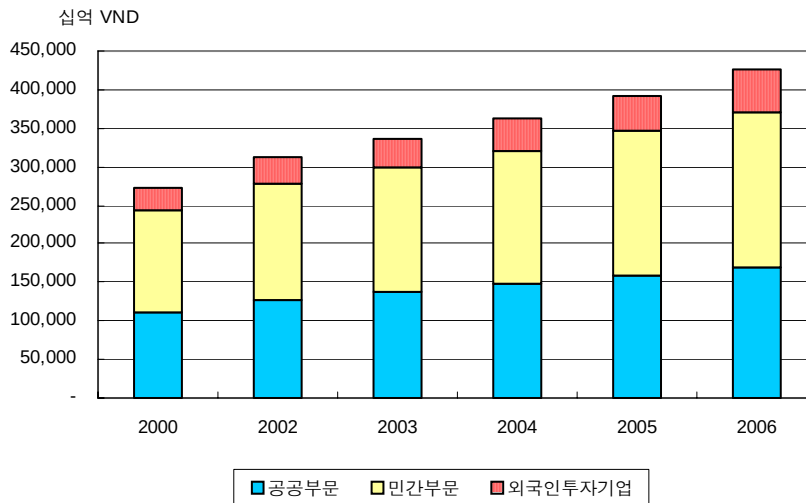
구 분	백만 달러, 2006	구성비율			성장률		
		2005	2006	2007.1~10	2005	2006	2007.1~10
총 수출액	39,826	100.0	100.0	100.0	22.4	22.8	18.6
원유	8,265	22.7	20.8	16.8	30.1	12.1	-7.5
원유 이외	31,562	77.3	79.2	83.2	20.3	25.9	25.8
쌀	1,276	4.3	3.2	3.5	48.2	-9.3	12.7
여타 농산물	3,632	7.9	9.1	9.6	20.2	42.0	32.5
해산물	3,358	8.4	8.4	7.9	14.1	22.6	10.8
석탄	915	2.1	2.3	1.9	88.4	36.6	0.0
의류	5,834	14.9	14.6	16.4	10.3	20.6	31.1
신발	3,592	9.4	9.0	8.2	13.0	18.2	9.9
전자, 컴퓨터 부품	1,708	4.4	4.3	4.4	32.7	19.7	23.0
수공업품	630	1.8	1.6	1.5	9.2	10.9	18.8
목재생산물	1,933	4.8	4.9	4.9	37.2	23.7	22.4
기타	8,684	19.3	21.8	24.9	20.5	38.7	38.5

베트남은 외국인 가격차별 등 이중가격제를 철폐하고, 반독점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직접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외투자

2005년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은 40억 달러에 달한다. 전체 GDP 생산액 가운데 해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서 2000년 10.8%, 2006년에는 12.7%로 증가하였다. 베트남에서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기여도는 2000년 47%에서 2005년 54.7%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이 외국인 가격차별 등 이중 가격제를 철폐(2006.7)하고, 반독점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직접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일부 기인한다.

그림 5 소유주체별 GDP 생산액(1994 불변가격)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베트남은 우리나라 수출대상국 가운데 18위(39억 달러), 수입대상국 중 34위(9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06년 기준).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의 뒤를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전체 수입시장의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88년~2006년의 기간에 우리나라의 누적 투자액 규모는 9,252백만 달러로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 3위이지만, 2006년 단년도로 보면 3,107백만 달러로 홍콩,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베트남은 국내 소비시장의 잠재력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원유와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의 보유가 지속적인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저임의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여 이러한 인적 자원에 입각한 노동집약적,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하여 왔다. 이는 제조업 부문 위주의 수출 드라이브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해 온 1970년대 한국의 공업화 경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외자유치와 차관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과는 달리, 베트남은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국내 산업의 발전 수준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방향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1988~2006년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투자액 규모는 9,252백만 달러로 3위이지만, 2006년도만 보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3. 농업경제

농지

전체 국토면적 33,121천ha 가운데 농경지는 28.4%인 9,412천ha이다.

표 6 국토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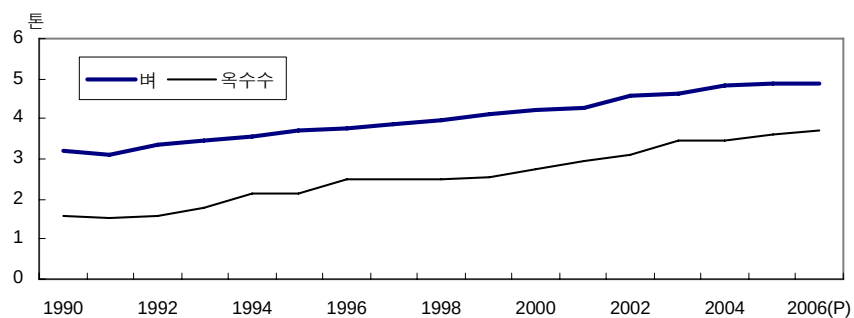
구 분	면적(천ha)	구성비(%)
국토 계	33,121	100.0
농지	24,584	74.2
농경지	9,412	28.4
1년생작물	6,358	19.2
논	4,152	12.5
초지	51	0.2
기타	2,156	6.5
영년생 작물	3,054	9.2
임야	14,437	43.6
내륙 민물양식장	702	2.1
염전	14	0.0
기타	19	0.1
비농지	3,257	9.8
비이용지(산지, 바위 등)	5,281	15.9

농업생산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은 벼와 옥수수이다. 벼는 지역에 따라 연간 2~3모작이 가능하다. 벼를 2모작 하는 곳에서는 후작으로 옥수수를 심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은 벼와 옥수수이며, 벼 재배 면적은 2000년대에 들어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6 벼, 옥수수 생산성(톤/ha)



벼 재배면적은 꾸준히 늘어오다가 2000년대 들어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옥수수 재배면적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생산성에서는 벼의 경우 ha당 3.18톤(1990)에서 4.89톤(2006), 옥수수는 1.55톤(1990)에서 3.7톤(2006)으로 두 배 이상 생산되었다.

표 7 벼, 옥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ha, 천톤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	
	벼	옥수수	벼	옥수수
1990	6,043	432	19,225	671
1991	6,303	448	19,622	672
1992	6,475	478	21,590	748
1993	6,559	497	22,837	882
1994	6,599	535	23,528	1,144
1995	6,766	557	24,964	1,177
1996	7,004	615	26,397	1,537
1997	7,100	663	27,524	1,651
1998	7,363	650	29,146	1,612
1999	7,654	692	31,394	1,753
2000	7,666	730	32,530	2,006
2001	7,493	730	32,108	2,162
2002	7,504	816	34,447	2,511
2003	7,452	913	34,569	3,136
2004	7,445	991	36,149	3,431
2005	7,329	1,053	35,833	3,787
2006(P)	7,324	1,032	35,827	3,819

벼와 옥수수 이외 농산물 가운데 고구마와 카사바, 그리고 면화 등의 연도별 생산량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8 고구마, 카사바 생산량

단위: 천톤

구 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고구마	1,611	1,704	1,577	1,512	1,443	1,455
카사바	1,986	4,438	5,309	5,821	6,716	7,714

표 9 기타 농산물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면화	황마	사조	사탕수수	땅콩	대두	담배	차	커피	고무	후추	캐슈넛	코코넛
1990	3.1	23.8	63.3	5397.6	213.1	86.6	21.8	145.1	92.0	57.9	8.6		894.4
1991								148.8	100.0	64.6	8.9		1052.5
1992								163.0	119.2	67.0	7.8	23.7	1139.8
1993								169.8	136.1	96.9	7.5	46.6	1184.0
1994								189.2	180.0	128.8	8.9	52.0	1078.2
1995	12.8	14.8	75.5	10711.1	334.5	125.5	27.7	180.9	218.0	124.7	9.3	50.6	1165.3
1996	11.2	15.0	55.0	11430.3	357.7	113.8	23.5	210.5	316.9	142.5	10.5	59.1	1317.8
1997	14.0	22.3	80.9	11920.9	351.3	113.0	27.2	235.0	420.5	186.5	13.0	66.9	1317.6
1998	22.0	14.6	69.9	13843.5	386.0	146.7	33.3	254.5	427.4	193.5	15.9	54.0	1105.6
1999	22.2	9.4	72.5	17760.5	318.1	147.2	35.6	316.5	553.2	248.7	31.0	35.6	1104.2
2000	18.8	11.3	61.4	15044.3	355.3	149.3	27.1	314.7	802.5	290.8	39.2	67.6	884.8
2001	33.6	14.6	64.5	14656.9	363.1	173.7	32.0	340.1	840.6	312.6	44.4	73.1	892.0
2002	40.0	20.4	88.1	17120.0	400.4	205.6	33.2	423.6	699.5	298.2	46.8	128.8	915.2
2003	35.1	12.4	95.8	16854.7	406.2	219.7	31.8	448.6	793.7	363.5	68.6	164.4	893.3
2004	28.0	12.6	89.8	15649.3	469.0	245.9	23.4	513.8	836.0	419.0	73.4	204.7	960.1
2005	33.5	12.6	80.5	14948.7	489.3	292.7	26.0	570.0	752.1	481.6	80.3	240.2	977.2
2006	25.9	10.5	92.6	15678.6	464.8	258.2	42.6	612.1	853.5	546.1	82.6	235.4	982.2

축산은 육용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물소의 비중은 낮아지는 대신 소와 돼지, 양의 사육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가금육 사육수수는 정체상태이다.

축산은 물소와 소, 돼지, 닭이 주종을 이룬다. 육용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물소의 비중은 낮아지는 대신 소와 돼지, 양(염소)의 사육두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닭, 오리와 같은 가금 사육수수는 최근 정체상태에 있다.

표 10 축산물 생산량 현황

구분	단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물소 생체	톤	48,415	51,811	53,061	57,458	59,800	64,317
소 생체	톤	93,819	102,454	107,540	119,789	142,163	159,463
생우유	톤	51,458	78,453	126,697	151,314	197,679	215,953
돼지 생체	천톤	1,418	1,654	1,795	2,012	2,288	2,505
가금	천톤	292,911	338,402	372,721	316,409	321,890	344,407
계란	백만개	3,771	4,530	4,852	3,939	3,949	3,970
꿀	톤	5,958	11,401	12,758	10,701	13,591	16,747
누에고치	톤	7,153	12,124	11,582	12,323	11,475	10,413

표 11 가축 사육현황 추이

사육두수	물소(천두)	소(천두)	돼지(만두)	말(천두)	염소·양(천두)	가금(백만수)
1990	2,854	3,117	1,226	141	372	107
1991	2,859	3,136	1,219	134	313	109
1992	2,887	3,202	1,389	133	312	125
1993	2,961	3,333	1,487	133	353	133
1994	2,977	3,467	1,559	131	428	138
1995	2,963	3,639	1,631	127	551	142
1996	2,954	3,800	1,692	126	513	151
1997	2,944	3,905	1,764	120	515	161
1998	2,951	3,987	1,813	123	514	166
1999	2,956	4,064	1,889	150	471	179
2000	2,897	4,128	2,019	127	544	196
2001	2,808	3,900	2,180	113	572	218
2002	2,815	4,063	2,317	111	622	233
2003	2,835	4,394	2,488	113	780	255
2004	2,870	4,908	2,614	111	1,023	218
2005	2,922	5,541	2,744	111	1,314	220
2006	2,921	6,511	2,686	87	1,525	215

농산물 종류에 따른 생산액 현황과 축산물 생산액(1994년 불변가격)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7 축산물 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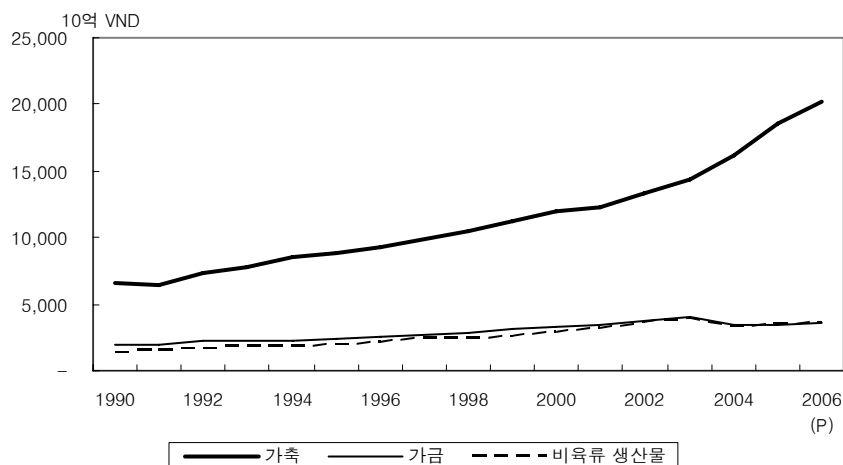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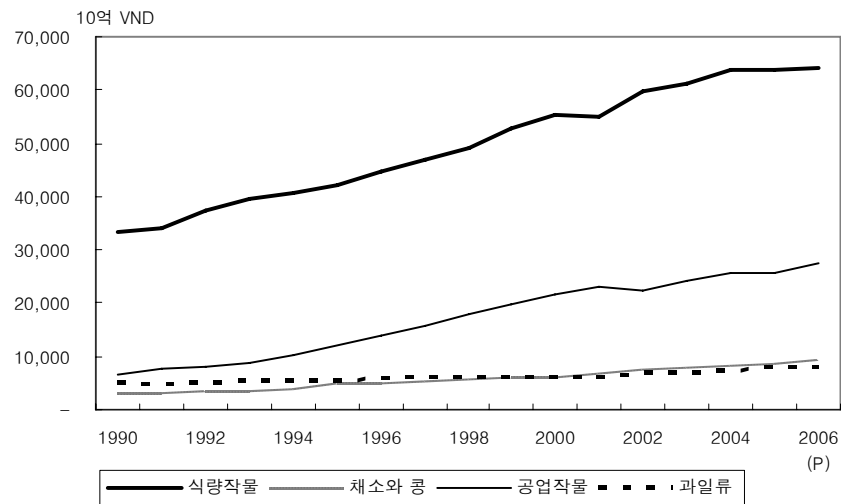


그림 8 농산물 생산액



농산물 수출

베트남의 수출액 중 농림수산물(농림수산물)은 2006년에 약 96억 달러로 전체의 약 24.2%인데, 이는 2000년의 29.0%에 비해 약 5%p 낮아져 수출 중 농림수산물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수출액은 2000~2006년 기간에 145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 중 농림수산물은 2006년에 약 96억 달러 어치를 차지하여 전체의 약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의 29.0%에서 약 5%p 낮아져 수출 중 농림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산업부문별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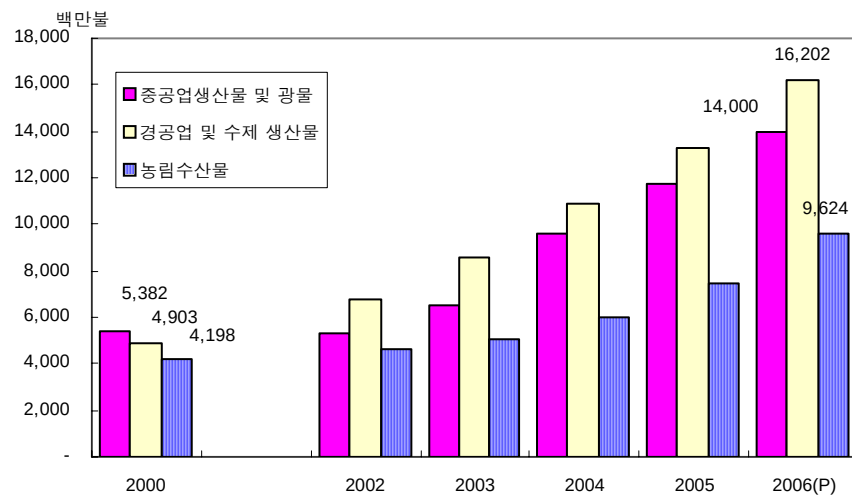


표 12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량

구 분	단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P)
원유	천톤	15423.5	16876	17142.5	19500.6	17966.6	16418.9
석탄	"	3251.2	6047.3	7261.9	11636.1	17987.8	29307.1
신선, 가공과일, 채소	"	213.1	221.2	151.5	177.7	235.5	259.1
고추	천톤	36.4	78.4	73.9	110.5	110	116.7
커피	"	733.9	722.2	749.4	976.2	912.7	980.9
고무	천톤	273.4	454.8	432.3	513.4	554.1	708
쌀	"	3476.7	3236.2	3810	4063.1	5254.8	4643.4
캐쉬넛	"	34.2	61.9	82.2	104.6	109	126.8
땅콩	"	76.1	106.1	82.4	46	54.7	14.2
육류	백만달러	25.6	27.3	21.1	39.9	35.6	
전분 곡류 가공식품	"	59.7	91.4	82.5	100.9	129.6	
낙농제품	"	80.4	85.9	67.2	34.3	85.3	90
설탕	"	28.9	9.4	10.7	0.5	0.3	2.4
차	천톤	55.7	77	58.6	104.3	91.7	105.6
식용유, 유지	백만달러		23.5	22.1	36.1	13.7	15.4
목재 및 목제품	"	311.4	460.2	608.9	1101.7	1561.4	1932.8
계피	천톤	3.5	5.1	4.9	8.3	8.3	14.8
수산물	백만달러	1478.5	2021.7	2199.6	2408.1	2732.5	3358.1
냉동새우	"	631.4	715.7	943.6	1084.5	1265.7	
냉동생선	"	172.4	337.5	333.7	491.5	608.8	
냉동오징어	"	76.8	83.7	136.3	62.5	73.9	

베트남은 연간 400~500만 톤의 쌀을 수출하여 태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쌀은 2006년에 금액으로 1,276백만 달러가 수출되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3.2%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5년의 4.3%에서 감소한 수치이나, 여타 농산물 수출액이 2006년 3,632 백만 달러임을 고려할 때 농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최근 국제 쌀값의 상승에 따라 베트남은 2008년 3월부터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 공급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 쌀값이 계속 오르면서 그 여파로 국내 쌀값도 상승하고, 이에 전반적인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 4, 5월 작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21.42%, 25.20%로 폭등 수준이다.

하지만 2008년 첫 벼 수확결과 전년에 비해 5.8% 증산된 것으로 나타나자 베트남은 수출금지조치를 7월에 해제할 예정으로 있다(서울신문, 2008. 5. 30). 그러나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으로 2006년에 1,276백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였는데, 최근 국제 쌀 가격 상승으로 2008년 3월부터 수출을 중단했다. 하지만 7월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베트남은 2020년까지 쌀 수출량을 감축할 계획인데 베트남 농업부는 쌀 수출을 2015년 430만 톤에서 2020년 380만 톤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 이는 9,860만 명으로 추정되는 2020년 인구의 식량수요에 부응하려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표 13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구 분	단위	2000	2003	2004	2005	2006(P)
식품, 음료제조용기계, 도구, 부품	백만달러	61.7	98.9	106.2	130.9	
비료	천톤	3971.3	4135.1	4064.8	2915	3118.8
암모니아	"	436.4	509	671.1	731.8	734.2
요소	"	2108.3	1926	1709.5	858.4	728
복합비료	"	200.1	219	311.6	169.5	148.4
암모니아 수소제거제	"	591	767	596.8	606.3	755.2
염화칼륨	"	411.5	662	696.3	456.5	753.1
기타	"	224	52.1	79.5	93.4	
농약 물질	백만달러	143.5	116.1	142.8	168.3	305.2
식용유 및 유지	"	89	166.3	244.2	192.3	256.7
밀가루	천톤	86.7	52.1	48.2	38.8	37.8
밀	백만달러	77.8	125.7	162.8	200.6	225.3
낙농제품	"	140.9	170.8	201.2	278.9	321.1

참고자료

- 권 울, “베트남의 WTO 가입 추과 전망,” KIEP 세계경제, 2006. 7/8월호.
 동아일보 2008. 5. 29 B1면.
 서울신문 2008. 5. 30 18면.
 신승관, 박기임, 박필재, “최근 베트남 경제현황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International Trade Report, 2007-1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06.
 World Bank, Taking Stock: An Update on Vietnam's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Dec. 6~7, 2007.

미국 농어업부문 시장개방 피해대책*

정 호 근

미국은 NAFTA, 개별국가와의 FTA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곡물, 축산물 등에서는 수요확대에 따른 이득을 보고 있다. 반면 어류, 과일, 화훼 등과 같은 품목에서는 남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으로 생산된 수입 농어산물로 인해 해당 농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부 관할로 모든 산업에 대해 시행되는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2002년 농업부문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2003년부터 적용하였다. 농어민을 위한 TAA는 농어민들이 무역 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입품에 맞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2년 전까지 농어민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실질조건을 적용받기 어렵고, 선결조건인 실업수당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원래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던 TAA는 그 범위를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조, 소득보조기간 연장, 고령자의 소득보전 등 포괄적인 내용을 지원내용으로 포함 하였다. TAA는 2007년 말로 제도 시행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는 수정된 새로운 법안(Trade and Globalization Assistance Act of 2007)이 상정 중에 있다.

TAA 주관기관인 미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지원청(FAS)의 농업부문 지원은 대체 작물 개발, 마케팅 기법 전수, 현금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금 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2007년까지 시행된 내용과 상정중인 개정법의 주

미국은 NAFTA, 개별국가와의 FTA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곡물, 축산물에서는 이득을 보는 반면, 어류, 과일, 화훼 등과 같은 품목에서는 해당 농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본 내용은 GAO 자료 등 시장 개방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다.
(hogunc@krei.re.kr, 02-3299-4150)

정부는 2003년부터 농어민들의 무역 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동부 관할로 모든 산업에 시행되고 있는 TAA를 2002년 농업 부문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요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FAS는 원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을 개발, 유지, 확대시키기 위해 무역장벽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무역 협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해외시장개발계획(FMD)을 통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 관련 협회나 단체들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특정 품목의 상표(Brand-Name) 판촉이나 소비자 판촉이 아닌 포괄적 상품기준(Generic Commodity Basis)의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 무역지원계획실(TAPO: Trade Assistance and Planning Office)과 FAS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1. 개요

농업부문 지원 중 현금보조금 지급은 가격지원제도로써 가격하락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되면 하락부분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준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기관 ERS는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변동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해외농업지원청(FAS)에 분석결과를 제공하는데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로 수입, 수출, 생산, 소비자 기호변화, 기상, 질병 등을 고려하고 있다.

TAA의 현금보조금 지급은 가격지원제도로써 가격하락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되면 하락부분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준다. 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기관 ERS는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변동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해외농업지원청(FAS)에 분석결과를 제공하는데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로 수입, 수출, 생산, 소비자 기호변화, 기상, 질병 등을 고려하고 있다.

매년 현금보조금 예산으로 9천만 달러가 배정되어 있으며 개별 농가는 1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3년 이후 2007년 말까지 TAA의 지원을 받은 농가는 주로 포도, 리치, 올리브, 블루베리, 감자, 플로리다 아보카도, 금어초, 새우, 연어, 메기와 같은 어류, 과일, 화훼 농가이다.

2007년 9월 제도시행기간이 만료되어 2007년 말까지 제도를 연장하는 임시법을 시행하고 추가예산 9백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사후적인 피해보상제도로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도고안의 미숙 내지 실제 일어난 피해정도의 경미함 등으로 인해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2003년 제도시행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인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TAA에 지원하는 농가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청은 8월 15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여야 하고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은 기각된다. 설사 작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올해 들어 수입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승인은 연장되지 않는다.

미 농무부 산하 농업연구교육기관인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CSREES)에서는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기술지원, 교육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것과 집중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TAA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의 개관, 생산자가 이룰 수 있는 비

즈니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수혜농가당 2004년에는 평균 1,650불, 2005년에는 평균 2,520불의 지원을 받았으며 2006년 말까지 수혜를 받은 8,000 농가 중에서 1,000농가가 상한인 10,000불의 지원을 받았다.

농무부는 지원이 많지 않은 이유로 농가가 전년 대비 농가 순소득의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과 적은 지원 금액을 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생산자 평균판매가격의 80%와 현재금액 차이의 절반을 단위 지원금으로 설정하는 지금까지의 산정방식 하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받는 금액이 3,000불을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제도의 운영체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세 명 이상 되는 생산자 그룹이 해외농업지원청(FAS)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하나의 신청이 일정지역 내지는 다수의 주를 포함할 수도 있다. 지원 서류에는 품목가격이 어떻게 하락하였는지, 생산자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해외농업지원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신청의 적격여부를 판정하고 해당지역의 해당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 생산자의 판매 가격이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가격의 80% 이하일 경우
- 해당품목 또는 경쟁재의 수입증가가 가격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
- 지원신청은 8월 15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해야 함

미 농무부 산하 기관들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한 역할을 알아보면 다음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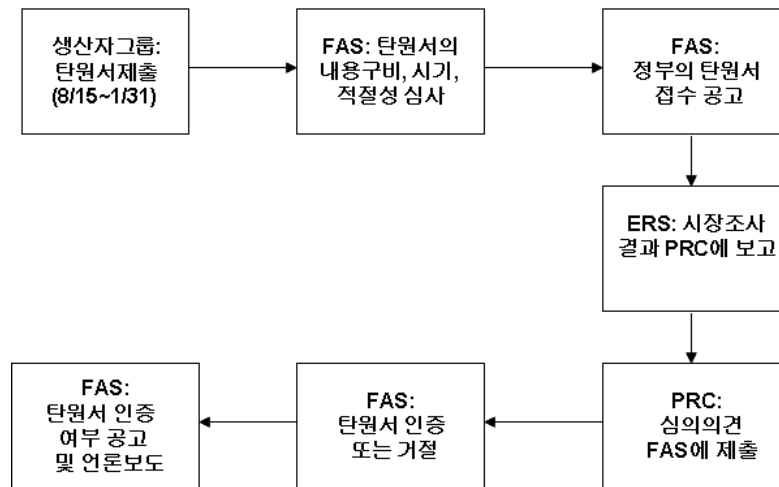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해외농업지원청에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데, 품목가격이 어떻게 하락하였는지, 생산자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등을 명시해야 한다.

표 1 TAA와 관련한 미 농무부 산하기관의 역할

산하기관	업무
해외농업지원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	- 제도시행 총괄 - 신청접수 및 심사 - 생산자(생산자단체)의 TAA 지원 적격여부 판정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Service(ERS)	- 신청된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신청심의회위원회 Petition Review Committee(PRC)	- ERS조사결과,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FSA에 의견을 내는 내부위원회
농업진흥청 Farm Service Agency(FSA)	- 현금지원 신청을 하는 것을 도움 - 현금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농가별 적격여부 판정
협동연구교육지도청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CSREES)	- 생산자들에게 기술지원

자료: GAO (2006)

그림 1 TAA 신청절차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농업 수입이 작년에 비해 감소해야 하며, 지난 3년간 평균 농업 총수입이 2백 5십만 달러보다는 적어야 하고, CSREES가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생산자그룹(생산자대표)의 탄원서가 인증을 받은 이후 TAA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에는 새로운 작목대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현금지원이 있다.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의 범위는 농어업인으로 경영자, 농지소유자, 임차농 등이 들어간다.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 순농업 수입이 작년에 비하여 감소함
- 지난 3년간 평균 농업 총수입이 2백 5십만 달러보다는 적음
- CSREES가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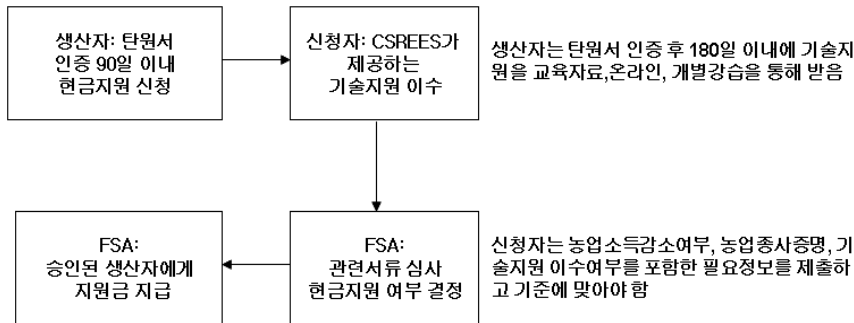
다만 농가의 평균 총소득(adjusted average gross income)이 2백 5십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도 소득 중 최소 75% 이상이 농업, 목축업, 임업에서 발생하였다면 현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농가가 받을 수 있는 현금지원에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 한 회계연도에 10,000달러 이상의 현금보조를 받지 못함.
- 소득보전직접지불금(Counter Cyclical Payments)과 TAA의 현금지원액의 합계가 6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현금 보조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text{현금지원} = \text{당해년도 생산량} \times (0.80 \times \text{최근 5년간 평균가격} - \text{당해 연도 평균가격}) \times 0.5$$

그림 2 농가별 현금지원 절차



3. 실적

2006년 말까지 총 101건의 탄원서 제출이 있었고 이 중 64건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심의를 거쳤다. 64건에서 30건이 TAA 지원의 인증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여러 주에서의 새우 생산자 그룹이고 나머지는 농무부 품목프로그램(commodity program)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포도, 리치, 금어초(snapdragon)¹⁾와 같은 시장규모가 작은 특정품목 그룹이다.

2006년 말까지 총 101건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 30건이 TAA 지원을 인증 받았는데, 주로 새우 생산자그룹이고 나머지는 포도, 리치, 금어초같은 시장규모가 작은 특정품목 그룹이다.

표 2 연도별 탄원서 인증품목과 인증건수

품목	2004	2005	2006
새우	7	8	
연어	2	2	
포도		1	2
리치	1	1	
메기	1		
블루베리	1		
감자		1	
올리브		1	
아보카도			1
금어초			1
총계	12	14	4

주: 대부분의 탄원이 최소한 한 개의 주를 대표하여 이루어짐. 2004년 메기나 2005년 포도는 여러 주에서 한 개의 탄원을 제출한 경우임.
자료: GAO(2006)

1) 현삼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20~80cm이며, 잎은 어긋나거나 마주나고 가름한 피침 모양임. 여름에서 가을까지 흰색,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따위의 금붕어 입처럼 생긴 꽃이 줄기 끝에 이삭을 이루며 핀. 관상용이며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라 금붕어 꽃이라고도 불림.

낮은 지원율로 2005년에는 지원금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었는데,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순수입 감소 증명과 같은 조건의 까다로움과 낮은 보상율이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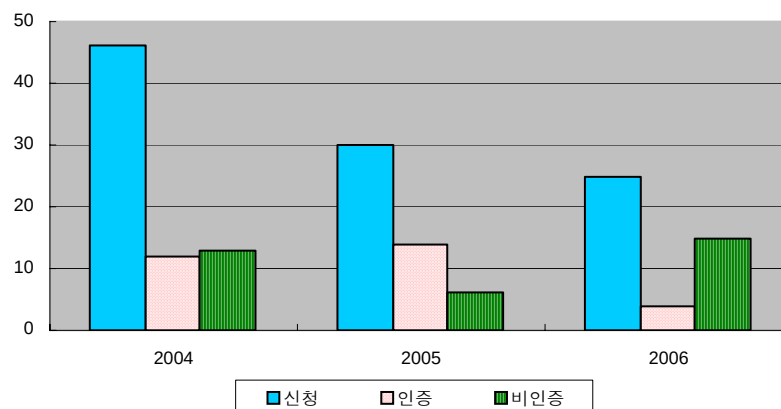
인증을 받지 못한 34건의 대부분은 다음 해의 수입량 증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재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2006년 8건의 새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특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여야 하고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수입증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은 기각되게 된다. 설사 작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올해 들어 수입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승인이 연장되지 않는다.

표 3 품목별 부적격(비인증)사유

품목	사유*						계
	1	2	1과 2	3	4	3과 4	
어류	10	3	1	1			16
과일	6	3				1	10
야채	4	1					5
기타	1	2			1		3
계	21	9	1	1	1	1	34

주: 1) 해당품목 또는 경쟁품목의 수입증가 2) 가격이 20% 이상 하락 3) 판매가격의 증빙여부 4) 부적절한 신청
자료: Bacho & Goodwin, 2008

그림 3 TAA 지원을 위한 생산자그룹 탄원추이



2003년 제도시행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인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TAA에 지원하는 농가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3년 제도시행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인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TAA에 지원하는 농가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생산자들은 2004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12,000건 정도의 현금지원 신청을 하였고 8,000건이 넘는 2/3 정도가 현금지원을 받았다. 수혜농가당 2004년에는 평균 1,650달러, 2005년에는 평균 2,520달러의 지원을 받았으며 2006년 말까지 수혜를 받은 8,000농가 중에서 1,000농가가 상한인 10,000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새우, 연어농가였다.

2005년의 경우 개별생산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신청 중에서 2,000건이 기각되었

는데 이 중 1,000건 정도가 순수입의 감소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는 기술지원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평균 총 수입이 2백 5십만 달러를 넘는 경우이다.

낮은 지원율로 인해 2004년 지원금 예산 9천만 달러의 15%에 해당하는 1천 3백 6십만 달러만이 집행되었고 2005년에는 같은 예산규모의 16%에 해당하는 1천 4백 4십만 달러가 집행되었다. 지원율이 낮은 이유로 순수입 감소 증명과 같은 조건의 까다로움과 낮은 보상율이 지적된다. 예를 들면 가격하락으로 톤당 74달러의 수입 감소를 가진 포도농가의 경우 현재 보상율 적용시 톤당 9.8 달러만을 지원받게 된다.

그림 4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금액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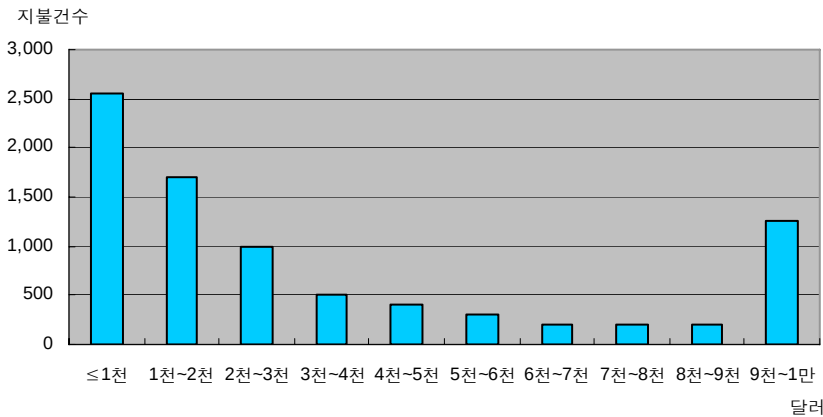


표 4 TAA 보상금액의 산정 예

품목	생산량	보상단가	보상액	가격하락
포도	100 톤	$\{(\$272 \times 80\%) - \$198\} / 2$	\$980.00 (\$9.80/톤)	\$74.00/톤
알래스카 연어	95,000 파운드	$\{(\$0.403 \times 80\%) - \$0.261\} / 2$	\$2,916.50 (\$0.0307/파운드)	\$0.142/파운드
캘리포니아 올리브	100 톤	$\{(\$598 \times 80\%) - \$432\} / 2$	\$2,320.00 (\$23.20/톤)	\$166.00/톤

4. 새로이 제안된 무역조정지원법(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7)의 주요 변화내용

TAA 시행기간은 2007년 말에 종료되었고 현재는 개정된 TAA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새로운 농어업에 대한 TAA는 2007년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격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율을 높이는 것이 주 내용인데 크게 네 가지다.

새로이 제안된 무역 조정지원법의 내용을 보면, 재승인 부문, 가격과 관련된 품목의 적격요건, 농업 순수입과 관련된 기준, 보상율 산정방식 등에서 완화 및 개선을 하도록 제안되었다.

우선 재승인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의 제도상에서는 재승인을 받으려면 수입량이 증가해야만 하는데 제안된 내용은 작년에 자격이 되었으면 다음해의 수입량 증감에 상관없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re-certification eligibility).

둘째, 가격과 관련한 품목의 적격요건이 전에는 현재 가격이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여 20% 이상 하락하는 것인데 새로 제안된 것은 현재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또는 지난 2년 평균의 9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이다.

셋째, 농업 순수입과 관련한 예전 기준은 수입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적자가 줄어들었다면 자격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지원을 받지 않은 최근 2년간 순 농업 수입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조건을 바꾸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넷째, 기존의 제도에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설사 승인을 받더라도 지원 금액이 미미하여 지원을 꺼렸다. 이에 보상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제안되었는데 현재가격과 지난 5년 평균가격 80%의 차이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현재가격과 지난 2년 또는 5년 평균가격 85% 차이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상율을 일정부분 높이고 연도별 가격변화의 추이에 따라 농가에 보다 유리한 평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표 5 보상 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보상금의 변화 예 (포도)

구분	생산량	보상단가	보상액	가격하락
기존(80%)	100 톤	$\{(\$272 \times 80\%) - \$198\} / 2$	\$980.00 (\$9.80/톤)	\$74.00/톤
개정(85%)	100 톤	$\{(\$272 \times 85\%) - \$198\} / 2$	\$1660.00 (\$16.60/톤)	\$74.00/톤
보상액 차이	\$680.00 (6.8/톤)			

5. 시사점

통상 농업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일부 품목에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02년 무역법 개정을 통해 농업부분에 새로이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는 2007년 말까지 시행되면서 당초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품목의 적격여부를 일차적으로 심사한 후 개별농가에 대해 별도로 현금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2단계로 이루어진 TAA는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고(targeted) 피해 농가를 잘 구분한다(focused)는 의미에서 선진화된 제도이기는 하나 조건의 까다로움과 지원 금액의 적음으로 인해 성과가 미미하다. 이에 기간연장과 함께 새

로이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김관수, 이태호. “모형평가 및 해외주요국의 FTA 피해대책.”

Bacho Allan P. and H.L. Goodwin, Jr., "Outcomes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Trade Reform Act of 2002." Presented at Souther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 Texas, 2008.

GAO, 「Trade Adjustment Assistance: New Programs for Farmers Provides Some Assistance, but Has Had Limited Participation and Low Program Expenditures」 Dec. 2006.

미국의 복지개혁*

박 대 식

1. 머리말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연방 차원의 복지제도 개혁을 시도하였다. 닉슨 정부는 가족지원제도를, 포드 정부는 근로강제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카터 정부는 '직업, 소득 개선제도'를 제안하였다.

미국은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이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연방 차원의 복지제도 개혁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닉슨 정부는 '마이너스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보조금 교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지원제도(Family Assistance Program)를, 포드 정부는 근로강제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그리고 카터 정부는 '마이너스소득세'와 공공부문의 직업 창출을 통한 근로기회 보장과 강제를 핵심으로 하는 '직업·소득 개선제도'(Program for Better Jobs and Income, PBJI)를 제안하였다.

1970년대의 경기 침체와 1981년 레이건의 집권 및 1990년대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라는 정치 환경의 변화는 루즈벨트 이후 지속되어오던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를 보수적 복지체제로 전환시켰다. 레이건 정부에서는 주요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레이건 정부 이후 집권한 부시 정부와 클린턴 정부의 복지정책은 레이건 정부의 유산을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시 정부에서는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클린턴 정부에서는 1994년에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됨으로서 공공부조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심화되었다. 1990년대의 미국의 복지개혁은, 복지제도 내부적으로는 복지 수급자들을 압

* 본 내용은 미국의 복지개혁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pds8382@krei.re.kr 02-3299-4345)

박하여 그들이 복지제도를 떠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복지제도 외부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1996년에는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책임과 노동을 통한 자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획기적인 복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 복지 및 복지개혁의 개념 정의

미국에서 복지(welfare)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를 의미한다.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현금지원 프로그램(cash assistance programs)과 현물지원 프로그램(in-kind programs)으로 구분할 수 있다(Schiller, 2004).

미국에서 복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의미하는데,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현금지원 프로그램과 현물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미국의 복지제도

구 분	세 부 제 도
현금지원 프로그램	보충적 소득보장제도 (SSI)
	빈곤가구 일시부조 (TANF)
	일반부조(GA)
	근로소득장려제도 (EITC)
현물지원 프로그램	식품권제도(Food Stamps)
	의료부조(Medicaid)
	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
	여성 및 아동들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WIC)

현금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빈곤가구 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GA), 근로소득장려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등이 있다(Schiller, 2004).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는 1974년에 만들어졌으며,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자산 조사에 기초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이다.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장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시각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최소 소득을 보호해주기 위한 마지막 소득 안전망 개념으로 생긴 프로그램이다. 보충적 소득보장제도의 재원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의 일반 세수에서 충당된다.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는 1996년에 만들어졌으며 임신부나 아동이 포함된 가

구로서 부모의 사망, 기출, 정신적·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및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지원된다.

일반부조(GA)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나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의 수급자격에는 못 미치나 생활이 궁핍한 가구나 개인에 대해 지원한다(일부 현물지원도 함). 일반부조는 긴급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보완적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이다. 일반부조 대상자의 수급권은 주정부에 따라 다르다.

근로소득장려제도(EITC)는 1975년에 도입되었고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근거로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표 1 참조). 근로소득장려제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다 유리한 소득보전을 행하기 위해서 자녀수에 따라 각 구간의 임계치와 급여 증가율 및 급여 감소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근로소득장려제도는 모든 국민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급자격 조건은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근로활동 참여가 가능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 2 미국의 EITC제도

도입 연도	도입 목적	변천 과정	최대 급여액 (2자녀 기준)	수급가구	소요 예산
1975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증대, 근로유인 제고	시행 20년 동안 집중률이 20배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이 4배로 상승함	4,536달러 (2006년)	1,960만 가구 (2006년)	414억 달러 (2006년)

자료: 재정경제부 EITC 추진기획단, 2007,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재정경제부 정책백서.

현금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보충적 소득 보장제도, 빈곤가구 일시부조, 일반부조, 근로소득장려제도 등이 있으며 현물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식품권제도, 의료부조, 주거지원, 여성 및 아동들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이 있다.

현물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식품권제도(Food Stamps), 의료부조(Medicaid), 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 여성 및 아동들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al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등이 있다.

식품권제도(Food Stamps)는 1964년에 만들어졌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보조 현물급여 프로그램이며, 수급자는 매달 일정액의 식비보조금을 식권으로 제공받는다. 연방정부가 재원의 100%를 담당하며, 행정체계에 있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농무부에서 총괄하며, 프로그램의 실제 운용은 각 주의 사회복지부서에서 담당한다. 식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소득공제 후 현금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지침선의 130% 이하이어야 한다.

의료부조(Medicaid)는 1965년에 만들어졌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의료부조의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각 주에서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의료부조의 급여내역은 연방정부에서 정하는 필수급여와 각 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급여로 나눌 수 있다. 의료부조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비용과 관리비용을 Matching Fund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주정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한다.

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은 총소득이 신청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Public Housing) 프로그램, 저소득 가구이며 거주지역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보조금(Housing Choice Voucher) 등이 있다.

여성 및 아동들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WIC)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서비스 연계를 시행하며, 아동발달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단순히 ‘복지개혁(welfare reform)’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미국의 복지개혁을 사회복지의 여러 문제점들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를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지개혁이란 저소득층(특히 근로능력이 있는)에 대한 공공부조체계의 개편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의 최근 복지개혁 과정은 제1차 복지개혁(1996~2005)과 제2차 복지개혁(2006~2007)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개혁이란 저소득층(특히 근로능력이 있는)에 대한 공공부조체계의 개편을 의미한다.

3. 제1차 복지개혁(1996~2005)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PRWORA) 및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던 미국의 복지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1996년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을 제정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PRWORA)은 1996년 8월에 공포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999년 4월에 공포되었다.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PRWORA)의 주요 내용은 ①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 ②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 아동의 수급자격을 제한), ③ 아동지원의 강화, ④ 이민자들의 복지 및 공공혜택의 제한, ⑤ 아동보호·보육, 아동 영양, ⑥ 식품권과 생활필수품의 분배, ⑦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한 성욕 절제 교육 등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제1차 복지개혁은 전통적인 소득지원전략(income support

1996년부터 시작된 제1차 복지개혁은 전통적인 소득지원 전략에서 고용지원 전략으로의 이행 및 빈곤가족에 대한 연방정부의 소득보장 책임의 철회를 가져왔다.

복지의존도 감소와 빈곤층의 행동양식 변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 프로그램은 근로준비, 근로,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복지의존을 줄이며, 미혼출산을 예방하고, 가정의 유지를 장려한다.

strategy)에서 고용지원전략(employment support strategy)으로의 이행 및 빈곤가족에 대한 연방정부의 소득보장책임의 철회를 가져왔다.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PRWORA)은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미국 공공부조의 중심적 제도로 자리 잡은 부양아동가족부조(AFDC)를 폐지하고, 이를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로 대체하였다.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는 복지 수급기간의 제한과 근로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다. 수급조건으로는 ① 임신부나 아동이 포함된 가구, ②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비 청구권을 주정부에 위임, ③ 18세 미만의 미혼모는 그들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어야 함, ④ 1996년 이후 입국한 비시민권자는 5년 동안 수급자격 제한, ⑤ 중범죄자는 수급자격 제한, ⑥ 수급자격을 갖춘 자는 신청을 해야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 신청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빈곤가구 일시부조를 받는 가정은 일생동안 60개월 동안만 일시부조를 받을 수 있다(다만, 주별로 수급자의 20%까지는 이러한 수급기간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음).

빈곤가구 일시부조를 받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부조를 받기 시작한 후 24개월 이내에 주정부가 규정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30시간(부부는 35시간) 이상의 근로의무가 부과된다.

빈곤가구 일시부조는 근로참여의 요건에 해당되는 다양한 활동들(일반 취업,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취업, 직업경험 프로그램, 현장 직업훈련,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정부는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 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자료(수급권자 특성, 서비스 유형 및 이용도)를 매년 연방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부간의 역할분담에서 행정책임은 주(군)정부가, 재정책임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한다.

부양아동가족부조(AFDC) 프로그램에서는 누구나 수급자격만 가지면 자동적으로 수급권을 보장받았던 것이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 프로그램에서는 연방정부의 기본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으며, 자동적 수급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 프로그램은 복지의존도 감소와 빈곤층의 행동양식 변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즉, 빈곤가구 일시부조는 빈곤가구의 지원을 통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이나 친척집에서 보호·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근로준비, 근로,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복지의존을 줄이며, 미혼출산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가정의 유지를 장려한다.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 프로그램에서 자활을 강조하는 근로연계 시책은 각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유형은 고용 중심형(employment-focused)과 교육 중심형(education-focused)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 중심형은 궁극적 자활을 위해서는 수급자들을 실제 근로상황에 빠른 시일 내에 투입하여 직접적인 일을

통하여 근로성을 향상시킨다. 교육 중심형은 교육을 통한 기술증진에 초점을 두는데, 먼저 교육과 훈련에의 투자를 통하여 근로기술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에서는 외국인의 복지 및 공익 수혜 자격을 제한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부분의 공익(public benefits) 수혜 자격을 부정한다(응급의료서비스는 예외). 합법적인 이민자도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적어도 10년간 일을 할 때까지 식품권 및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의 수혜를 제한한다.

연방정부에서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를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의 아동가정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이다.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각 주마다 다른데 대체로 주정부의 재정 상태와 경제수준에 따라 연방정부는 최소 50~80%의 재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한다.

미국 복지개혁의 재승인 과정

1996년에 공포된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PRWORA)은 2002년 9월 30일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한시적 법안이었다. 이 법안이 2002년 10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복지개혁법의 재승인(re-authorization)이 이루어져야 했다.

복지개혁법의 재승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2002년 2월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자활지향근로(Working toward Independence)”라는 제안서를 통해서 근로연계복지의 기본이념을 더욱 강화시킨 재승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각 주정부의 주지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에서는 2002년 5월에 “자활지향근로(Working toward Independence)”에 의해 제안된 복지개혁 재승인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그대로 계승하고 보다 구체화시켜 입법을 추진하였다. 공화당 당원들이 제안한 법안(Personal Responsibility, Work, and Family Promotion Act)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상임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2002년 9월 말까지 복지개혁법의 재승인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 대신 의회는 2002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단기간(3개월 또는 6개월)의 법안 연장을 13차례 실시하였다.

4. 제2차 복지개혁(2006~2007)

복지개혁 재승인은 2006년 2월 8일 부시대통령이 『2005 적자감축법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DRA 2005)』에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어 제2차 복지개혁이 시작되었다. 『2005 적자감축법(DRA 2005)』은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에 대한 재

2006년 2월 8일 부시 대통령이 ‘2005 적자감축법’에 서명함으로써 제2차 복지개혁이 시작되었다. 2005 적자감축법은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의 포괄보조금의 총 재원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2010년까지 연장하도록 확정하였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와 탈빈곤을 위해 아동양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근로활동 참여여부 판정기준을 강화하였다.

승인 뿐만 아니라 의료부조(Medicaid)의 예산삭감 등과 같은 정부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05 적자감축법은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의 총 재원을 기존과 동일한 수준(연간 165억 7천 달러)으로 2010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하도록 확정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에 배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빈곤가구 일시부조의 총 재원을 향후 5년간 동결하였다.

기존의 경쟁적 보조금(grant)제도는 폐지하는 대신에 건전한 가정을 형성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쟁적 보조금제도(연간 1억 5천만 달러 규모)를 신설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와 탈빈곤을 위해 아동양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주정부별 근로활동 참가 비율 기준(전체 수급 가구는 50%, 양부모 수급가구는 90%)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근로활동 참여여부를 판단하는 주당 근로시간 기준 역시 기존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모든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당 30시간 기준을 적용하되 6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20시간을 적용하였다. 양부모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주당 35시간을 적용하되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아동보육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주당 55시간을 적용하였다.

관련 벌칙조항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전체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50%의 근로활동참가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주정부를 대상으로 첫 해에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TANF포괄보조금의 최대 5%까지 삭감하고, 연속해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삭감비율이 2%씩 증가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은 주정부 자체 재원으로 보충해야 한다. 양부모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수급가구 대비 양부모 가구의 비율에 비례해서 벌칙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HHS)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벌칙의 비율을 낮춰주거나 중단할 수 있다. 근로활동 참가율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주정부는 MOE 의무비율(각 주정부가 TANF 포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적어도 1994년 당시 복지급여 지출의 75%를 복지급여 지원활동에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Caseload Reduction Credit(1995년 당시 AFDC 수급가구의 규모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수급가구를 몇 %나 감소시켰는지 계산하여 이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주정부가 충족시켜야 하는 근로활동참가율에서 감소시켜 줌)의 기준연도를 1995년에서 2005년으로 조정하였다. 기존의 수급기간 제한 규정은 60개월로 유지하고, 수급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면제가구의 비율도 전체 수급가구의 20%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빈곤가구 일시부조(TANF) 운영규정을 개편하였다.

근로활동참여비율 계산 시 인정하는 근로활동을 12개의 범주(9가지 필수적 근로활동, 3가지 비필수적 근로활동)로 구분하였다(표 2 참조). 근로활동 참여여부를 판

단하는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유지하는 대신, 근로활동의 범주 구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최초 20시간을 직접적인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근로활동 참여 조건 강화 관련 규정에 있어서는 근로활동 참여 여부 판정기준을 강화하였다. 계획된 시간이 아닌 실제로 근로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정하며,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활동에 대해서는 제한된 시간만을 근로활동 참여로 간주한다.

근로활동 참여율 측정대상 포함 여부 관련 규정에 있어서는 2007년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들도 근로활동 참여율을 산출하는데 포함하도록 하였다(주정부 자체 재원인 경우는 제외함).

주정부의 책임성 강조 관련 규정에 있어서는 연방정부는 근로활동 참여 조건이 행 여부 판정 및 주정부별 근로활동 참여율 계산 및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입증 및 보고, 감사 등을 강화하였다.

표 3 근로활동 참여율 계산 시 인정하는 근로활동

범주	근로활동
필수적 근로활동	· 임금이 보조되지 않는 일반고용 · 임금이 보조되는 사적 영역에서의 고용 · 임금이 보조되는 공적 영역에서의 고용 · 근로활동 경험 · 현장직업훈련 · 연간 6주일로 한정되는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활동 · 지역사회서비스 활동 · 직업교육훈련(12개월 한도) ·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가구의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비필수적 근로활동	· 고용과 직접 관련된 직업기술훈련 · 고용과 직접 관련된 교육 · 중등학교 등에서의 성실한 출석

자료: NGA Center for Best Practice, 2006, 『The Wait is Over, the Work Begins: Implementing the New TANF Legislation』.

5.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성과와 한계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성과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성과로는 ① 복지급여 수급 규모의 감소, ② 복지급여 의존 비율의 감소, ③ 근로활동 참여의 증가, ④ 빈곤율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복지급여(빈곤가구 일시부조) 가구 수가 1996년 8월 441만 가구에서 2005년 8월에는 189만 가구로 57%가 감소하였다. 복지급여 수급자는 1994년의 약 1,400만명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성과로는 복지급여 수급규모의 감소, 복지급여 의존 비율의 감소, 근로활동 참여의 증가, 빈곤율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에서 2000년의 약 50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복지급여 수급자가 감소함에 따라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도 감소하였다. 한 부모 가구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가구의 비율은 1997년 38%에서 2002년 35%로 감소하였다.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 수급가구의 비율은 1997년 31%에서 2002년 39%로 증가하였다. 한 부모 가구의 여성가구주의 근로활동 참여 비율은 1993년 58%에서 2005년 69.3%로 증가하였다. 미혼모의 근로활동 참여 비율은 1996년 49.3%에서 2005년 63.1%로 증가하였다.

빈곤율의 경우에는 일반 빈곤율은 1996년 13.7%에서 2000년 11.3%로 감소했다가, 2005년에는 13.0%가 되었다. 아동 빈곤율은 1996년 20.5%에서 2000년 16%로 감소했다가, 2005년에는 18.0%가 되었다. 즉, 빈곤율은 2000년까지는 감소했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200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한계

2001년부터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복지수급 가구규모를 제외한 빈곤율, 근로활동 참여율 등과 같은 지표들이 서서히 반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복지개혁의 일반적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00년 이전의 장기간의 경기 호황,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의 영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01년부터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복지수급 가구 규모를 제외한 빈곤율, 근로활동 참여율 등과 같은 지표들이 서서히 반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주정부가 일부 복지 수급자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수급자로 간주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수급자의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복지 수급자의 감소 그 자체만을 가지고 바람직한 변화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급기간의 제한, 근로 조건부 등 복지 수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필연적으로 수급자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 수급 중단자들(welfare leaver)은 주로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서비스 및 판매 부문에 고용됨으로써 취업 이후에도 실직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임금 또한 시간당 7~8달러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한 자활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복지개혁은 복지 수급 중단자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근로빈곤자(working poor)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전의 복지 수급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집단(예를 들면, 교육수준이 낮은 흑인 남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복지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부족하여 취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아주 낮은 계층에 대

미국 복지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부족하여 취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아주 낮은 계층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아주 부족했다.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조하지 않고, 즉각적인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강조하는 복지개혁은 복지수급자의 장기적 고용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복지개혁은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공급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6. 미국 복지개혁이 농촌복지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전체 자료를 이용해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할 경우에는, 복지개혁의 영향은 도·농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state) 단위 내에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개혁의 영향이 도·농간에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로는 지역 노동시장의 여건과 일과 가족지원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지역 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s) 여건의 차이로는 ① 농촌의 지역 노동시장은 도시에 비해서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적음, ②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평균 소득이 낮음, ③ 농촌지역의 직업은 최저임금이거나 시간제 일(work)인 경우가 많음, ④ 농촌주민은 도시주민에 비해서 공식교육을 덜 받음, ⑤ 농촌은 실업 및 저고용(Underemployment) 비율이 도시보다 높음 등을 들 수 있다.

일과 가족지원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및 접근성(access)의 차이로는 ① 일터와 지원서비스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농촌주민들에게 장애가 됨(농촌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 ② 일, 보육, 훈련, 기타 지원서비스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개인 교통수단이 필요함, ③ 농촌은 공식적 지원서비스는 부족한데 반해 보다 광범위하고 비공식이며 개인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④ 아동보육서비스 및 응급(emergency)서비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주별 자료를 검토해 보면, 복지개혁의 영향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 및 농촌 지역(counties)의 경우에는 근로연계복지가 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복지개혁의 영향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빈곤 집중지역 및 오지 농촌에서는 근로연계 복지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 버지니아의 조사사례, 지속적 극심 빈곤지역(South Dakota의 아메리카 인디언 보호구역, 켄터키의 애플래치아 산악지역, 텍사스의 멕시코 접경지역, 미시시피의 흑인 밀집 지역)의 사례, 앨라배마, 알칸사, 캘리포니아, 메인 주의 12개 군(counties) 사례 등을 통해서 볼 때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서 농촌지역 내부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개혁의 영향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 및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근로연계복지가 덜 이루어지고 있었다.

7. 맺는 말

미국의 복지개혁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노동연계복지, 생산적 복지 등과 관련된 논의에서 미국의 복지개혁 과정이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복지(공공부조)개혁은 주로 미혼모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빈곤층 전반을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복지개혁에서 강조되고 있는 ‘근로참여 의무’부과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복지수급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알맞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복지를 빈곤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제도 자체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하려 시도했다. 미국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시각도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어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복지개혁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고용기회, 교통, 각종 편의시설 등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뒤져있는 농촌빈곤 집중지역(예를 들면, 인디언보호구역)에서 특히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복지개혁은 경제가 호황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작동하지만 불황기에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나빠져 이전의 복지 수급자들이 먼저 실업의 위험을 떠맡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복지개혁은 빈곤 해소 및 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공공부조제도의 본래의 목적보다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복지 의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지 수급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근로참여 의무를 강조하는 ‘수단’에 집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참여 의무에 대한 강조가 단지 복지 수급자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복지개혁에서 강조되고 있는 ‘근로참여 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복지 수급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알맞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근로장려세제(EITC)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KEITC)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빈곤상태를 완화시키거나 빈곤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부(-)의 소득세 환급을 통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아동빈곤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소득과약 업무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수준(최대 80만원)은 제도시행의 초기라는 상

황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최대급여액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활사업 대상자도 사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빈곤의 완화와 근로유인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근로장려세제는 향후의 제도 발전이 기대되며, 보육지원정책, 최저임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과의 조화를 통해서 저소득근로자의 자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집행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시범사업 수준이며,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정책 대상의 확대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구인회. 2000. “복지에서 근로로: 미국 사회정책의 이행과 그 교훈.” 『사회보장연구』 16(2): 1-28.
- 김상균 외. 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김학주. 2003. “미국의 복지개혁: ‘제3의 길’이 해결방안인가?.” 『해외지역연구』 7: 106-126.
경상대학교 해외지역연구센터.
- 김환준. 2003.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복지학』 53: 129-153.
- 이상은. 2003. “미국의 복지개혁: 소극적 현금지원정책으로부터 적극적 자립지원정책으로.” 『사회보장연구』 19(1): 23-58.
- 정익중. 2004. “미국의 복지개혁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181-215.
- Danziger, Sheldon. 2002. Welfare Reform Policy from Nixon to Clinton: What Role for Social Science?. Population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PSC Research Report 02-512.
- Golonka, Susan. 2006. The Wait is Over, the Work Begins: Implementing the New TANF Legislation. NGA Center for Best Practices.
- Haskins, Ron. 2006. “Welfare Reform, 10 years Later.” National Poverty Cente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overty Research Insights, Pp. 1-10.
- Karger, Howard Jacob and David Stoesz. 2006.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A Pluralist Approach(Fifth Edition).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Larrison, C. R. and M. Sullivan(eds.). 2005. The Impact of Welfare Reform: Balancing Safety Nets and 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The Haworth Social Work Practice Press.
- Marzilli, Alan(ed.) 2005. Welfare Reform. Philadelphia: Chelsea House Publishers.
- Schiller, Bradley R. 2004.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9th Edi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 The Urban Institute. 2006. A Decade of Welfare Reform: Facts and Figures.

한·일간 사료가격 비교*

허 덕

1. 서론

일본, 멕시코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수입국인 한국은 연간 800만~9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며, 그 중 사료용은 600~700만 톤 정도이다.

최근 1년 수개월 동안 대부분의 사료원료와 유통·가공 경비 등이 급등하고 있다. 사료 대책이 우리나라의 축산업 존립의 최대 관건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옥수수 수입국이며, 우리나라의 옥수수 수입량도 세계 3위이다. 일본은 연간 1,600만 톤 이상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1,200만 톤은 사료용이다. 일본, 멕시코에 이어 세계 제 3위의 수입국인 한국은 연간 800만~9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며, 그 중 사료용은 600~700만 톤 정도이다.

한·일 두 나라 모두 축산업이 옥수수 등 수입 사료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등 생산 구조가 지극히 비슷하면서도 생산비, 특히 사료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양국간 사료가격의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한·일간 돼지 생산비 비교

이시다 마사아키¹⁾의 연구에 따르면, 2003년의 생산비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한국의 생산비는 일본의 약 60%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 그는 일본의 경우 사료비와 노동비의 합계가 생산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9%로 매우 크므로, 이

* 본 내용은 日本農畜産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08년 5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uhduk@krei.re.kr, 02-3299-4261)

1) 石田正昭, 미에대학 대학원 생물자원학 연구과 교수

2) 일본양돈협회, 「양돈경영 조사보고서(한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비용 비교)」, 2007.3

2개 비목에 주목하여 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경우 사료비가 생산비의 62.3%를 차지하며 한국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국의 사료가격은 일본 사료가격의 63%정도이기에 이 차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농장 단계에서의 생산성 향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향후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1 한국, 일본, 미국의 육돈생산비(지육 1kg 당 생산비)

단위: 엔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평균	2천두이상	평균	2천두이상	일반경영	번식비육	번식경영	비육경영
가축비	6	5	15	15	0	53	2	94
사료비	152	151	245	233	96	68	118	78
기타경영비	29	30	61	57	27	24	57	16
자본비	33	30	31	38	50	44	114	29
노동비	22	19	65	40	44	30	84	13
(그중 가족)	9	4	57	23	30	20	31	10
(그중 고용)	12	15	8	17	13	10	53	3
비용합계	242	236	418	375	216	240	375	230
부산물 수입	1	1	13	4	12	13	2	13
생산비	241	235	405	375	205	226	377	217
생산비에서 점하는 비율(%)								
가축비	2	2	4	4	0	23	1	44
사료비	63	64	61	62	47	39	31	36
기타경영비	12	13	15	15	13	11	15	7
자본비	14	13	8	10	24	20	30	13
노동비	9	8	16	11	21	15	22	6
(그중 가족)	4	2	14	6	15	9	8	5
(그중 고용)	5	6	2	4	7	5	14	1
비용합계	100	100	103	102	106	106	99	106
부산물 수입	0	0	3	2	6	6	-1	6
생산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돈육생산비는 돼지 지육 1kg당. 생체-지육 수율 65%로 환산. 100원=10엔, 1달러=120엔으로 산출

자료: 사단법인 일본양돈협회, 「양돈경영조사보고서」, 2007년 3월, 미에대학대학원 생물자원학연구과 이시다 마사아키 교수

원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축산물생산비」, 2003년판

한국-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생산비조사」, 2003년판

미국- 「Hog Production Survey」, 2002년판

한편, 같은 보고서에서 고바야시 신이치³⁾는 엔/원 환율변동에 의해 한·일간 사료 가격비가 70%에서 100% 수준까지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2005년에 한국의 배합사료 가격 수준은 일본의 70% 정도인 것으로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표 3).

3) 小林信一, 일본대학 생물자원 과학부 교수

2007년 3월 일본양돈협회의 '양돈경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 생산비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한국의 생산비는 일본의 약 60% 수준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2005년 한국의 배합사료 가격 수준은 일본의 7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일간 돈육 생산비 격차의 요인 분석

구 분	일본의 생산비 구성비(%)	돈육생산비(엔/kg)		명목 비용비율 (b/a)	실질투입 비율	가격비율
		일본 2천두이상(a)	한국 2천두이상(b)			
가축비	3.9	15	5	0.37		
사료비	62.3	233	151	0.65	1.02	0.63
기타 경영비	15.2	57	30	0.53		
자본비	10.3	38	30	0.79		
노동비	10.6	40	19	0.49	1.14	0.43
(그중 가족)	6.1	23	4	0.19	0.49	0.39
(그중 고용)	4.5	17	15	0.90	1.87	0.48
비용 합계	102.2	383	236	0.62		
부산물 수입	2.2	8	1	0.10		0.83
생산비	100	375	235	0.63		0.71

주: 돈육생산비는 돼지 지육 1kg당. 생체-지육 수율 65%로 환산. 100원=10엔으로 산출

자료: 사단법인 일본양돈협회, 「양돈경영조사보고서」, 2007년 3월, 미에대학대학원 생물자원학연구과 이시다 마사아키 교수

원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축산물생산비」, 2003년판

한국-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생산비조사」, 2003년판

미국- 「Hog Production Survey」, 2002년판

표 3 배합사료 가격의 한일 비교(2005년)

단위: %

비용항목	각 비목의 구성비율		가격비
	일본	한국	한국/일본
원재료	73.0	84.1	81.8
인건비	6.7	3.3	34.9
외주비	0.7	0.1	14.8
제품구입비	3.8	0.0	0.0
연료비	1.1	1.3	83.8
감가상각비	1.3	3.1	169.7
기타	11.7	6.1	37.0
마진	1.7	2.0	83.4
합계	100.0	100.0	71.1

자료: 사단법인 일본양돈협회, 「양돈경영조사보고서」, 2007년 3월, 일본대학 생물자원과학부 고바야시 신이치 교수의 청취조사결과

한편, 사료가격 형성에 작용하는 원료비용과 그 외의 제조비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원료의 조달(종류별 수출국별 수입량 및 가격, 수입 원료의 관세율), 항만 하역 관련비용(사일로 보관료, 항만 제비용), 배합사료 공장, 배합사료 원료비, 배합사료의 종목수, 가공형태, 전력요금, 인건비, 세금, 수송비 등을 제시하였다.

사료가격 형성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항목으로 원료의 조달, 항만 하역 관련비용, 배합사료공장, 배합사료 원료비, 배합사료의 종목수, 가공형태, 전력요금, 인건비, 세금, 수송비 등을 제시했다.

고바야시 교수는 같은 보고서에서 관련 사례조사 결과에 근거한 생후부터 비육 후기까지 사육단계별로 이용되는 사료의 농가인도가격도 함께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젓먹이 돼지사료, 육성 전기사료를 제외한 비육용에서는 한·일간 비용이 90% 수준이며, 인공유에서는 오히려 한국 쪽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4). 과거 한국은 주로 저렴한 중국산 옥수수를 사용하였지만,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일본 엔화에 비해 원화 가치가 높아지자 한·일간 사료가격 차이는 좁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4 사료 농가 인도가격의 한일 비교(2007년 3월)

<일본>

구 분	생후주령, 체중	단백질(CP)함량(%)	가격 A
인공유	0-3주	23.5	220.7
젓먹이 돼지사료 전기	3-6주	21.0	179.9
젓먹이 돼지사료 후기	30 kg 이내	18.0	57.7
비육돈 사료 전기	70 kg 이내	15.5	38.3
비육돈 사료 후기	70 kg 이상	12.0	38.9
종돈 사료	120 kg 이상 성돈	15.3	38.8

자료: 사단법인 일본양돈협회 조사(2006년 8월)

<한국>

구 분	생후주령, 체중	가격 B		B/A
		원	엔/kg	
인공유	0-3주	20만	240.0	108.7
젓먹이 돼지사료 전기	3-6주	12만	144.0	80.0
육성돈 전기	30 kg 이내	3만 5천	42.0	72.8
육성사료 후기	70 kg 이내	3만 1천	37.2	97.1
비육돈 사료 후기	70 kg 이상	2만 9천	34.8	89.5
종돈사료	120 kg 이상 성돈	3만 2천	38.4	99.0

자료: 농협사료 조사, 100원=12엔으로 환산

3. 한일간 사료가격에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

환율변동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간 비용을 비교할 때, 환율변동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배합사료 공장도가격(일본은 육돈비육용·벌크사료, 한국은 비육용 후기·25kg)을 엔화 환산 베이스로 비교하면, 1995~2005년도 사이에 한국/일본 가격비는 70%~96%의 폭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한일간 사료가격에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율 변동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 엔화에 대해서 원화가 비싸지면 한·일간 사료가격은 접근하고, 반대로 엔고가 되면 차이가 벌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의 농가구입가격(육돈비육용·벌크사료)의 비교에서도 동기간에 68%~88%의 폭으로 변동하였다.

일본 엔화에 대해서 원화가 비싸지면(그림 1에서 환율 지수가 오르면) 한·일간 사료 가격은 접근하고, 반대로 엔고가 되면(그림 1에서 환율 지수가 내리면) 차이는 벌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일간 배합사료 가격비와 엔·원 환율지수는 거의 평행하게 변동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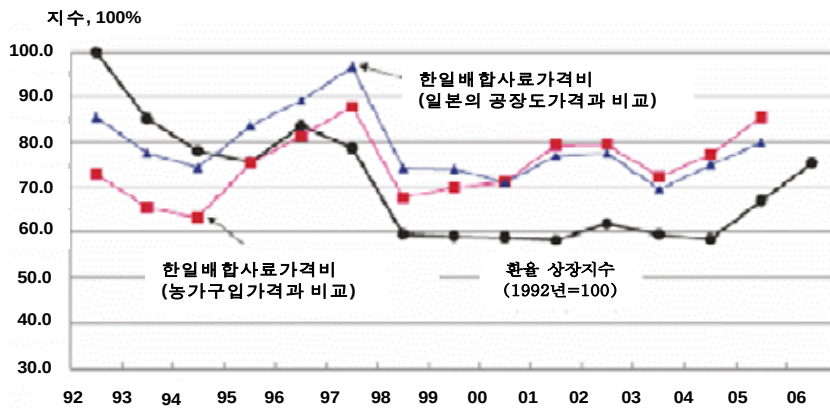
또한, 원래 한·일 양국은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사료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엔·원 환율뿐만 아니라 월·달러 및 엔·달러 환율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5 배합사료 가격의 한일간 비교

연월	일본		한국			환율 (엔/100원)	한일사료 가격비(%)	
	육돈 비육용 벌크 A(농가구입 가격: 엔/톤)	육돈 비육용 벌크 B(공장도가 각: 엔/톤)	양돈용 (비육후기용) (원/25kg)	양돈용 (비육후기용) (원/톤 환산)	양돈용 (비육후기용) C(엔/톤 환산)		C/A	C/B
1995	35,911	32,380	5,537	221,480	27,105	12.238	75.5	83.7
1996	42,748	38,920	6,418	256,720	34,770	13.544	81.3	89.3
1997	42,829	38,947	7,379	295,160	37,651	12.756	87.9	96.7
1998	39,874	36,309	6,992	279,680	26,958	9.639	67.6	74.2
1999	34,364	32,448	6,280	251,200	24,022	9.563	69.9	74.0
2000	32,496	32,548	6,075	243,000	23,129	9.518	71.2	71.1
2001	33,952	35,028	7,141	285,640	26,942	9.432	79.4	76.9
2002	32,453	36,286	7,036	281,440	28,181	10.013	79.5	77.7
2003	36,399	37,871	6,839	273,560	26,338	9.628	72.4	69.5
2004	39,758	40,953	8,101	324,040	30,683	9.469	77.2	74.9
2005	37,518	40,142	7,407	296,280	32,102	10.835	85.6	80.0
2006	39,298	43,382	—	—	—	12.213	—	—
2007.4-12	47,760	52,139	—	—	—	12.652	—	—
2007년4월	47,230	51,689						
5월	47,230	51,638						
6월	47,280	51,628						
7월	48,724	52,617						
8월	48,582	52,598						
9월	48,582	52,583						
10월	47,378	52,139						
11월	47,416	52,186						
12월	47,416	52,175						

주: 일본의 농가구입가격은 배합사료를 구입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제 구입가격이며, 일본의 공장도가격은 배합·혼합사료 및 OEM사료를 제조하고 있는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장출하단계의 가격임.
자료: 농림수산성생산국축산진흥과 편,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발행, 「사료월보」, 한국농림부, 「농림주요통계」, 일본은행

그림 1 환율변동과 한일 배합사료 가격비의 추이



주: 1) 환율 상장지수는 1992년의 일본은행 환율상장(엔/원)을 100으로 한 지수. 지수치가 적을수록 엔고, 원저를 의미함.

2) 한일배합사료 가격비에서는 일본의 데이터는 돈육비육용 벌크사료의 농가구입가격과 공장도가격의 2종류를 가지고 이용하였으며, 한국의 데이터는 양돈비육 후기용의 공장도가격을 이용하였음.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생산국축산진흥과 편, 「사료월보」, 한국농림부, 「농림주요통계」, 일본은행

배합·온합 사료원료 비율 차이

일본양돈협회의 「양돈경영 조사보고서」에서는 배합·혼합사료 원료 비율에 주목하여 한·일간을 비교하였다. 한국 측은 옥수수가 적고, 밀과 박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밀을 대신하여 수수나 보리가 배합사료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직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사료 원료로 쌀의 사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옥수수에 이어 원료사용비율이 높은 대두박에 대해서는 일본이 13.8~14.1%, 한국이 14.5%로 비슷하며, 한국에서는 식물성 박류 중 「기타 박류」의 비율이 더 높다.

이와 같이 수입 원료의 구입에 관해 비교적 조건이 비슷한 두 나라에서 원료 사용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수입 및 국산원료가 구입하기 쉽다는 점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사료에 대한 요구 내용의 차이,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기호,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양돈경영 조사보고서」에서는 양국의 배합사료 생산량의 축종별 비율 차이도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사 시점에서의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표 7).

표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양돈용 배합사료가 가장 많고, 일본에서는 양계용 배합사료가 가장 많다. 한국의 경우 데이터 상으로는 축종별로 원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적어도 중소가축인 양계용과 양돈용 사료의 차이는 축우용 사료와의 차이만큼은 나지 않는다.

한·일간 배합·혼합 사료 원료 비율의 차이 또한 주목할 수 있는데, 한국은 옥수수가 적고 밀과 박류가 많은 반면, 일본은 밀을 대신하여 수수나 보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표 6 한일간 배합·혼합 사료원료의 사용 비율

단위: %

구 분		일본			한국
		2007년 4-12월	2006년도	2003년도	2003년
곡류	옥수수	48.8	49.2	50.2	43.6
	소맥	0.4	0.4	0.5	9.1
	기타	12.3	12.2	11.7	2.8
	그 중 수수	4.8	5.2	6.1	
	대과맥	3.5	3.4	3.0	
	쌀	2.2	1.7	0.1	
	소계	61.5	61.8	62.4	55.5
조강류	소맥강	3.8	3.6	3.5	5.4
	기타 조강류	6.1	5.8	5.8	4.9
	소계	9.9	9.4	9.3	10.3
식물성 박류	대두박	14.1	13.8	14.1	14.5
	기타 박류	4.7	5.1	4.6	8.5
	그 중 채종유박	3.5	3.8	3.4	
	소계	18.8	18.9	18.7	23.1
동물성단백질	육분, 육골분	0.4	0.3	0.2	0.2
	기타 동물성단백질	1.1	1.3	1.3	0.7
	그 중 어분, 어박	0.6	0.7	0.8	
	소계	1.5	1.6	1.5	0.9
	무기물	3.7	3.7	3.8	4.2
	기 타	4.6	4.6	4.3	6.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일본의 '기타 박류'에는 두류를, '육분·육골분'에는 '확인된 킨칠 밀 등'을 각각 포함함. 일본의 '무기물'에는 탄산칼슘류, 인산칼슘류를 포함함.

자료: 일본농림수산성생산국축산진흥과 편,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발행, 「사료월보」, 사단법인 일본양돈협회(농축산업진흥기구 18년도 축산업진흥사업), 「양돈경영 조사보고」, 2007년 3월

표 7 배합사료의 축종별 생산량 비율

구 분	양계용	양돈용	육우용	젖소용
한국(조사시)	25.6%	37.1%	19.2%	11.4%
일본(조사시)	43.0%	25.0%	17.0%	13.8%
일본(2006년)	42.3%	24.5%	17.7%	13.1%

자료: 사단법인 일본양돈협회, 「양돈경영 조사보고서」, 2007년 3월
일본농림수산성생산국축산진흥과 편,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발행, 「사료월보」

수입원의 차이에서 오는 원료비용의 차이

옥수수는 일본의 경우 배합·혼합 사료원료의 50% 미만, 한국의 경우 44%(중량 베이스)를 차지한다. 옥수수 수입물량 중 일본은 95% 전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

옥수수 수입물량 중 일본은 95% 전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에 대부분을 의존해 왔다. 따라서, 최근의 중국내 수요급증 및 옥수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한국의 수입원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만,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부분을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수입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였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의 사료곡물이나 녹말 등 고도가공용 수요의 확대로, 중국이 최근 옥수수의 수출 일시중단이나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였고, 2007년 말부터는 수출억제책을 발표하여, 한국도 2004년 이후 미국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일 양국의 배합사료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양만 제비용 등 양만 아역 관계 비용

한국은 파나맥스(panamax)급(5.5만 톤급) 접안 가능 항만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항의 점유율은 62%에 이른다. 그 외에 파나맥스(panamax) 급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은 평택항, 울산항 등이며, 군산항은 중국산 사료원료를 중심으로 수입되는 항구이다. 파나맥스(panamax)급의 배에서 소규모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핸드맥스(handymax)급 항구는 제주도뿐이다.

한편, 일본에서 파나맥스(panamax)급 접안 가능한 항구는 카시마, 시부시, 하치노헤, 미즈시마, 나고야, 시미즈, 치바, 카마이시, 오타루 등이며, 이시노마키, 토마코마이, 쿠시로는 소규모 선박으로 옮겨 실어야 하는 핸드맥스급 항구(4만 톤급)이다.

한국에서는 거점항만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북동 아시아의 허브(HUB, 중심이 되는 기간항)로서 기능에 충실하며 국제 가공 물류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부산항과 서울 수도권권의 수입 물류 거점항(주로 북중국)으로서 인천항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항만 이용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과거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의 자료에 의하면, 40피트 컨테이너 1개 당 취급 총 요금은 도쿄항을 100(23,000엔)으로 볼 때 부산항 64(14,720엔), 싱가포르 64(14,720엔), 다카오항 65(14,950엔), 로테르담 92(21,160엔), 로스앤젤레스 191(43,930엔), 홍콩 223(51,290엔)이라 한다. 도쿄항이 부산항이나 다카오항에 비해 비싼 이유는 선박 관계 비용과 하역료 때문이다⁴⁾.

사료의 유통 형태와 거래 방법

일본의 배합사료와 혼합사료의 유통은 벌크형태의 사료가 92~9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사료월보」에 의하면 벌크 형태의 사료는 포장형태(20kg 포대)의 가격보다 공장도가격 베이스로 7~8% 정도 싸기 때문에, 양국의 공표 자료에 근거하여 한·일 간 배합사료 가격을 비교할 경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벌크사료와 포장사료의 유통 비율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한국에서는 부산항과 인천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의 항만 이용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하역관계비용이 높게 든다.

일본의 배합사료와 혼합 사료의 유통은 벌크형태의 사료가 92~93%를 차지하고 있는데, 벌크 형태가 포장형태보다 가격이 7~8% 정도 저렴하다.

4)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我が国主要港湾地域の国際競争力強化に向けた調査報告書』, 2002년 3월

한국 정부의 통계에서는 25kg 포장 가격이 공표되고 있어, 전술의 배합사료 가격 비교(표 5)에서는, 일본은 벌크형(농가구입가격과 공장도가격), 한국은 포장형태의 가격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표 8 일본의 배합·혼합 사료의 유통 형태

구 분	출하량		벌크 비율
	(천톤)	그 중 벌크 사료	
1975년	16,868	9,546	56.6%
1980년	22,226	15,896	71.5%
1985년	25,405	20,656	81.3%
1990년	26,150	22,940	87.7%
1995년	24,950	22,651	90.8%
1996년	24,783	22,439	90.5%
1997년	24,590	22,443	91.3%
1998년	24,455	22,674	92.7%
1999년	24,180	22,450	92.8%
2000년	24,023	22,335	93.0%
2001년	24,183	22,583	93.4%
2002년	24,557	22,983	93.6%
2003년	24,665	23,117	93.7%
2004년	24,028	22,120	92.1%
2005년	24,294	22,330	91.9%
2006년	24,733	22,853	92.4%
2007년 4-12월	18,602	17,368	93.4%
2007년 1월	1,911	1,792	93.8%
2007년 2월	1,921	1,789	93.1%
2007년 3월	2,242	2,069	92.3%
2007년 4월	1,976	1,842	93.2%
2007년 5월	2,102	1,946	92.6%
2007년 6월	2,041	1,911	93.6%
2007년 7월	1,934	1,815	93.8%
2007년 8월	1,988	1,858	93.5%
2007년 9월	1,909	1,786	93.6%
2007년 10월	2,149	2,012	93.6%
2007년 11월	2,149	2,009	93.5%
2007년 12월	2,354	2,189	93.0%

주: 벌크사료란 벌크제품(사료전용 운반차로 출하하는 제품)과 트랜스백 제품(500kg)의 합계임.
 자료: 농림수산성생산국축산진흥과 편,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발행, 「사료월보」

일본 「양돈경영 조사보고서」에서 실제의 사료가격은 상대, 규모, 지불방법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서도 정가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유무, 지불조건, 거래기간, 거래량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지불 조건이 (1) 선불이면 5~10% 저렴하며,

(2) 현금지불이면 정가의 3~5% 싸고, (3) 후불이면 금리분을 포함하여 10% 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농협계 사료도 규모별 가격차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2006년도 조사 결과⁵⁾에 의하면, 일본의 출하량 점유율로 본 배합사료 제조공장에서 사료제품을 수송하는 패턴은 「특약점이나 현 연합회가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하여 축산경영체까지 직송」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 56.1%(전년도 58.0%), 「축산 경영체가 직접 공장에서 제품을 인수」케이스가 17.3%(전년도 16.7%), 「공장이 다른 사람(운송 회사 등)과 계약하여 수송-축산 경영체까지 직송」하는 케이스의 비율이 15.1%(전년도 14.6%) 정도 된다.

일본에서 실제 사료 가격은 상대, 규모, 지불방법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서도 정가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유무, 지불 조건, 거래기간, 거래량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표 9 일본의 포장과 벌크형 사료의 공장도가격 비교

단위: 엔

구 분	포장사료 20kg (육돈용배합사료)	포장사료 1톤 환산	벌크사료 (육돈비육용)	벌크사료가격/포장 사료가격
1975년	1,204	60,200	—	—
1980년	1,337	66,850	—	—
1985년	1,121	56,050	53,161	94.8%
1990년	856	42,800	39,856	93.1%
1995년	707	35,350	32,380	91.6%
1996년	839	41,950	38,920	92.8%
1997년	842	42,100	38,947	92.5%
1998년	792	39,600	36,309	91.7%
1999년	716	35,800	32,448	90.6%
2000년	716	35,800	32,548	90.9%
2001년	766	38,300	35,028	91.5%
2002년	795	39,750	36,286	91.3%
2003년	826	41,300	37,871	91.7%
2004년	885	44,250	40,953	92.5%
2005년	887	44,350	40,142	90.5%
2006년	949	47,450	43,382	91.4%
2007년	1,130	56,478	52,139	92.3%
2007년 4월	1,120	56,000	51,689	92.3%
2007년 5월	1,119	55,950	51,638	92.3%
2007년 6월	1,119	55,950	51,628	92.3%
2007년 7월	1,139	56,950	52,617	92.4%
2007년 8월	1,139	56,950	52,598	92.4%
2007년 9월	1,138	56,900	52,583	92.4%
2007년 10월	1,134	56,700	52,139	92.0%
2007년 11월	1,129	56,450	52,186	92.4%
2007년 12월	1,129	56,450	52,175	92.4%

자료: 농림수산성생산국축산진흥과 편,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발행, 「사료월보」

5) 社団法人配合飼料供給安定機構□平成18年度に係る配合飼料産業調査結果□平成19年11月

4. 요약 및 결론

일본양돈협회의 '양돈경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환율 및 국제수급 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정책으로 배합사료 가격에는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일본양돈협회의 「양돈경영 조사보고서」에서는 2003년 정부 공표 생산비의 분석에 근거하여 한·일간 사료가격을 비교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사료비는 일본의 대략 60% 정도이지만, 사료비 차이는 거의 사료가격에 의해 발생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2005년의 배합사료 가격의 한일 비교를 실시한 결과, 2005년 단계에서 한국의 사료가격이 일본의 70% 정도였다. 그 중에서 배합사료 가격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싼 옥수수를 수입하거나 대두박 등 상대적으로 싼 원료의 배분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비용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일본에서는 배합사료 가격의 7%정도)가 한국은 일본의 3분의 1 정도인 점에 기인한다.

2007년 3월의 사례 조사에서는 인공유부터 비육후기까지 각 단계 중 비육용 사료가격은 한국이 일본의 90%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각 단계에서의 실제 급여량을 감안한 가중 평균가격을 비교하면, 최근의 사료 가격은 반드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싸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산하여 본 결과, 환율과 그 이외의 모든 요인이 고려된 결과로 양국의 배합사료 공장도가격(일본: 육돈비육용·벌크사료, 한국: 비육용 후기·25kg)을 엔으로 환산한 베이스로 비교하면, 1995~2005년도 사이에 한국/일본 가격비는 70%~97%로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 비용과 가격을 비교할 경우 환율변동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료가격을 둘러싼 한일 비교에서도 일본 엔화에 비해 원화가 비싸지면 한일의 사료가격은 접근하며, 반대로 엔고가 되면 차이는 벌어진다.

환율 이외의 큰 요소 중 하나는 국제적인 수급 환경의 변화나 각국의 정책이다. 사료원료를 어디에서 얼마에 조달할 수 있는지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해상운임이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값이 싼 중국산 옥수수나 캐나다산 규격 외 밀 등에 의존해 오던 한국이 2003년 이후 중국의 반복적인 수출 중단으로 점차 미국산으로 조달 주체를 옮기고 있어 양국간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인 곡물 수급 궁핍, 중국의 국내 수요 확대 및 수출 억제책으로 원료조달 면에서도 한·일간 구조가 유사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료 가격 상승 요인이 되어 한·일간 사료 가격차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日本農畜産振興機構, 「畜産の情報」, 2008년 5월호



국제기구 동향

DDA 2008년 5월 농업협상

DDA 2008년 5월 농업협상*

신 유 선

2차 수정안은 민감 품목 개수 및 TRQ 증량수준, 특별품목 개수, 보조감축률 등 1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을 유지하며, S&D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5월 19일 팔코너(Falconer) 농업협상그룹의장은 동시협상 이전에 농업분야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2008년 2월 세부원칙(Modalities)¹⁾ 수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3월 중순 제시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농산물 예외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대립으로 2개월 가량 지연되었다.

2차 수정안은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²⁾ 개수 및 TRQ³⁾ 증량수준,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⁴⁾ 개수, 보조감축률 등 1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을 유지하며, 개도국 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⁵⁾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 1)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2) 민감 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 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 3)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물량을 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p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p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5%p의 관세를 쿼터내관세(in-quota tariff)라 하고, 120%p의 관세를 쿼터밖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한다.
- 4)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개도국 간 입장차가 크다.

내용을 수정하고 최근의 진전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장해 온 직접적인 관세상한(Tariff Capping)⁶⁾ 배제, 일부 특별품목의 관세감축면제 인정, 민감품목의 세번별 지정방식(partial designation),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⁷⁾의 블루박스(Blue Box)⁸⁾ 전환시 신축성 등은 유지되었다.

핵심 관심사항인 관세상한의 보상방안 및 민감품목 등에 있어 개도국 우대 규정(S&D) 도입을 명확히 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우리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2차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를 계기로 연내 최종 타결 모색을 위한 DDA 협상⁹⁾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접근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민감한데, 특히 이 중에서도 관세상한, 특별품목(SP), 민감품목이 주요 쟁점이다.

1. 시장접근 분야

관세감축(Tariff Reduction)

팔코너 의장은 그간 시사해 왔던 것처럼 최상위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대해 <표 1>과 같이 감축율(Reduction Rate)¹⁰⁾을 제시하였다. 특이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¹¹⁾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여전히 []¹²⁾로 남겨두었으므로

- 5) DDA 협상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작고 이행기간도 길다. UR에서 개도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선진국의 2/3 수준이었고 이행기간도 개도국은 10년, 선진국은 6년이었다. DDA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이행기간은 8년, 선진국은 5년이다.
- 6) 관세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으로 미국은 관세상한 75%p, EU와 G20은 관세상한 100%p를 제안하였고, G10과 여타 일부 주요국들만 관세상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7) DDA 협상에서는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AMS, 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도 감축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 수(OTDS)를 줄이고 각 방(AMS, De-minimis, Blue Box)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몇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국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이다.
- 8) 단순히 보면 본질적으로는 AMS와 같은 보조금이다. 그러나 UR 협상 과정에서 주요국간 타협의 산물로 탄생했는데,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신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보조금이다. 이것이 기존의 블루박스(old blue box)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블루박스의 사용 실적이 없다.
- 9) 중동지역에 있는 '카타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도하(Doha)'인데, 2001년 11월 전세계 장관들이 '도하'에 모여서 무역자유화협상을 하기로 하고 그 이름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하였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하개발의제'인데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10) 관세를 감축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0%p에 관세감축율이 50%를 적용하면 감축후 관세는 100%p가 된다. 극단적인 경우로 관세감축률이 100%이면 모든 관세는 감축 후에는 0%p가 된다.
- 11) DDA 협상에서는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Blue Box)를 묶어서 OTDS 이라고 하기로 했다. AMS, 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합한 OTDS도 감축해야 한다. 아파트에 비유하면 아파트의 전체 평 수(OTDS)를 줄이고 각 방(AMS, De-minimis,

선진국의 최소 평균감축율은 54%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민감품목, 열대작물 및 경사관세 감축결과를 반영토록 한 것으로 선진국에 대한 관세감축 의무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에 대한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최소 평균감축율은 54%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민감품목, 열대작물(Tropical Product)¹³⁾ 및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¹⁴⁾ 감축결과를 반영토록 한 것으로 선진국에 대한 관세감축 의무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 관세감축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 관세감축 대상품목은 양허표에 기재된 쿼터밖 관세('all final bound tariffs') - AVEs 리스트를 모델리티에 부속서로 첨부할 것을 명시 ○ 선·개도국 구간경계 및 감축률은 작업문서와 동일 -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으로 각각 명시					○ 좌동 ○ 좌동 : 기존 틀 유지				
구분	선진국		개도국		구분	선진국		개도국	
	구간경계	감축율	구간경계	감축율		구간경계	감축율	구간경계	감축율
1구간	0~20%	[48~52%]	0~30%	[32~35%]	1구간	0~20%	50%	0~30%	33.3%
2구간	20~50%	[55~60%]	30~80%	[37~40%]	2구간	20~50%	57%	30~80%	38.0%
3구간	50~75%	[62~65%]	80~130%	[41~43%]	3구간	50~75%	64%	80~130%	42.7%
4구간	75%이상	[66~73%]	130%이상	[44~49%]	4구간	75%이상	[66~73%]	130%이상	[44~49%]
○ 선진국의 최소 평균감축율을 [54]%로 하되, 구간감축공식(민감품목 감축 포함) 적용시 감축율이 이보다 낮을 때는 추가 감축의무 부과 - 열대작물 및 경사관세 감축 결과는 반영치 않되, 동 감축 결과가 2.5 AV 포인트 이상의 추가 감축율 인상을 가져오는 경우는 반영					○ 선진국의 평균감축율을 최소 54%로 설정 - 동 수치는 열대작물 및 경사관세 감축 결과를 반영하는 수치가 되도록 명시하여 선진국 의무 완화				
○ 개도국의 최대 평균감축율이 [36]%이하가 되도록 감축율 축소 가능 - 기존 내용중 [40]% 옵션 제거					○ 개도국의 평균감축율을 최대 36%이하로 설정 - 동 수치에는 민감품목도 포함하는 것임을 추가 - 만약 상기에 의한 관세 감축이 36%이상일 경우, 36%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는 여지 유지				

블루박스)의 크기도 줄여야 하며, 더욱이 각 방도 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국내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품목별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도 도입하는 등 각종 제약을 도입하자는 것이 협상의 전반적인 방향이다.

- 12) DDA 협상에서는 회원국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 를 없애고, 합의가 덜 이루어진 부분은 [] 로 표시하였다. 즉, 협상의 목표는 [] 의 수치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2008년 2월 1차 세부원칙수정안에서 [] 의 개수는 171개에서 5월에 배포된 2차 수정안에서는 34개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 13)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 14)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표 1 계속)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 o RAM(신규가입국)¹⁾에 대한 신축성 부여 - 각 구간별로 [7.5]% AV 포인트만큼 조정가능. 10% 이하 양허관세는 의무면제 - 최근가입국 및 소규모취약 RAM은 의무면제. 다른 RAM은 가입공약 이행 종료 1년후 감축의무 이행 개시 - 개도국보다 2년 더 긴 이행기간 인정 - o SVE(소규모취약경제)²⁾는 감축율 적용후 [10]%p 추가를 통한 조정 가능 - 기존 내용중 평균감축율 수치(24%) 및 SP로 인한 조정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을 SP 조항에 옵션으로 이동	- o 좌동 - 각 구간별로 10% AV 포인트만큼 조정가능. 10% 이하 양허관세는 의무면제 - 좌동 - 좌동 - o 좌동 (10% 수치 설정) - 단, SVE의 범위를 확대하여 ceiling binding and homogenously low binding countries, SP 감축율을 활용 하는 국가도 포함

주 1) 신규가입국(Recently Acceded Members)은 WTO에 새로 가입한 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중이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DDA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소규모취약국가(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는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덜 감축할 수 있는 혜택을 갖는다.

관세상한(Tariff Capping)

관세상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2차 수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다만 고관세 품목 유지에 대한 쿼터 제공 보상 방안은 1차 수정안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감축후 관세가 100%를 초과하는 세번(Tariff Line, TL)¹⁵⁾수가 4%를 초과할 경우는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만큼 추가 증량해야 하며, 개도국의 경우는 150% 초과 세 번수가 5.3%를 초과할 경우 [0.33] % 추가 증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선진국 기준시) 및 150%(개도국 기준시) 이상 세 번수는 각각 7.3~8.4% 및 7.2~8.3%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TRQ 증량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개도국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2개 신설하였는데, 이는 개도국에게 유리한 측면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개 옵션을 선별적으로 품목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에게 동일한 옵션을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다.

감축후 관세가 100%를 초과하는 세번수가 4%를 초과할 경우는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만큼 추가 증량하고, 개도국은 150% 초과 세번수가 5.3%를 초과할 경우 [0.33] % 추가 증량해야 한다.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세 번 (무세 세번 제외 문구 삭제)의 4~6%로 기존 수정안과 수치가 동일 (개도국은 5.3~8%)하다.

15) 세번이란 관세를 부과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쌀이라는 한 가지 품목에는 16개 정도의 세번이 있다.

TRQ 증량수준은 deviation에 따라 소비량의 3~6% 수준으로 기존 수평안과 동일하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TRQ 증량 외 이행기간 조정 등 대안을 추가하여 선택 가능토록 규정하였다.

TRQ증량 이행기간 2년으로 이행첫날 총 증량분의 1/3만큼 증량하고 매 12개월마다 1/3씩 추가 증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행초기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2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민감품목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 o 민감품목 숫자([4] [6]%), 산정 base([dutyable] tariff line), 개도국 우대(선진국의 1/3 추가) 등은 작업문서 내용과 동일 - 최상위 구간에 전체품목의 30% 이상이 집중된 경우 [6][8]% 지정 - HS 6단위 양허로 인해 불공평한 효과가 있을 경우 [6][8]% 지정 - o 단, 상기와 같이 추가 세번을 인정받는 경우의 소비량 확대폭을 기존 [4.5] [5.5]에서 ([4] [6] + [0.5] [1])%로 구분 - 관세상한 대안 조항의 threshold를 5%→4%로 하향 조정하고, 증량대상을 전체 민감품목으로 명시(trigger는 100%) - import penetration 관련 10% 및 30% 구간의 TRQ 증량을 deviation에 따라 세분화 - o 이외 deviation에 따른 TRQ 증량폭 및 조정폭, 개도국 우대(선진국의 2/3 증량) 등은 작업문서 내용 유지 - o 쿼터증량을 양허케하고, 이행 첫날 최소 1% 추가 증량을 시작하여 매 12개월마다 1%씩 추가 증량 - o 국내소비량 산정방안관련 부속서(Annex C) 내용도 대체로 작업문서 내용에 준하여 두 가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열거 ① 품목 단위 소비량 기준 TRQ 증량 - 품목 범위내 일부 세번만을 민감품목으로 지정 하더라도 품목 단위 소비량을 기준으로 TRQ 증량 산정 - FAO, OECD의 국제 데이터를 우선 사용하고 국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국내 데이터 사용, 종자용·사료용 등을 모두 포함한 balance sheet을 사용하여 소비량 산정	- o 좌동 - 좌동 (단, 표현을 "2% 추가"로 변경) - 좌동 (단, 표현을 "2% 추가"로 변경) - o 상기와 같이 추가 세번을 인정받는 경우의 소비량 추가 확대폭을 기존의 [0.5][1]에서 "0.5%추가"로 변경 - 관세상한 대안 조항의 threshold를 TL의 4%로 유지하고, trigger를 100%로 유지 (dutyable을 삭제하여 범위 확대) - 개도국이 상기 관세상한 대안 조항을 사용코자 할 경우, 적용되는 entitlement는 선진국의 4/3이며, trigger는 150%가 적용될 것임을 신규 명시 - 좌동. 다만, 수치를 조정하여 10% import penetration의 경우 0.5%p 감축, 30%일 경우 1%p 감축으로 설정 - o 좌동 (단, 표현을 일부 수정) - 개도국 우대 조항을 강화, full cut+longer period(3년), shorter dev+2년 단축(이 경우, formula cut의 3/4 적용 및 TRQ 확충 없음. 단, SeP 한도의 2/3를 초월하여 사용 금지) - o 쿼터증량을 양허케하고, 이행 첫날 추가 소비량의 최소 1/3을 추가증량하고 매 12개월마다 1/3씩 추가 증량 - o 기존의 2가지 옵션을 유지하되, 기존의 두 번째 옵션을 대폭 수정, G-6측이 합의한 partial designation 방식을 삽입 ① 좌동

(표 2 계속)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② 세번 단위 소비량 기준 TRQ 증량 - 세번별 국내 소비량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사용하고 소비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 proxy 사용 · Step 1-4에 따라 관련 세번의 소비량을 산정 · 6단위 통계를 향후 합의되는 'data template'에 따라 제출 - [수입량이 작은 경우 품목전체(attachment)에 대해 global safety net([1] [3]%) [및] [proportional]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TRQ 증량 수준 중 큰 것을 적용] - 회원국은 세부원칙 타결시 계산방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현재 양허세번을 기준으로 민감품목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량 산출을 위한 기준 년도는 '03-'05년 - TRQ 양허 방식 관련 두 가지 방안을 제시 ([single tariff quota], [최대 2개로 TRQ 구분 양허]) o 다만, 기존 내용에 비해 추가 또는 수정된 부분도 존재 - 세번간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는 동일 세번으로 간주 - in quota/out-quota의 운용시 별개의 세번이 있을 경우 단일 세번으로 운용할 것을 의무화 (treated as) - 국내소비량 산정방식(template와 attachment)을 모델러터와 불가결의 일체로 간주하고, 동 방식을 첨부시킨 품목만을 민감품목으로 인정 - 새로운 쿼터와 기존 쿼터를 분리, 기재	② 문안 대폭 수정 - floor minimum access을 [1~3]로 설정 (기존의 대안 삭제) - 여타 내용은 G-6측이 합의한 partial designation 방식의 내용을 포함 o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삭제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

zero cut¹⁷⁾ 문구에 대해 괄호([])가 한 개 풀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3개의 관세감축 범주가 2개로 축소되면서 평균수치가 도입된 것은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현행 텍스트에서는 SP의 수치를 8%로 한정하고 있어 그동안 G33¹⁸⁾이 요구해 온 6%-6%-8%에는 크게 미달하며, zero cut에 대한 확정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2개 범주의 관세 감축율이 8%, 12%가 아닌 12%, 20%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16)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 등은 피소감축율을 적용하는 SP로의 지정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7) 관세를 0%로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도국들은 특별품목의 zero cut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8)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 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미국 등이 제안한 negative indicator¹⁶⁾가 도입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거나 SP 지정 및 대우에 관한 G33 입장을 고려할 때 2월 세부원칙안보다 전반적으로 불리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특별품목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 o Indicator에 따라 SP를 지정하되, 최소 8%, 최대 [12] [20]% 지정가능 - 이 중 [6]% 세번에는 [8][15]% 감축율, 나머지 [6]% 세번에는 [12] [25]% 감축율 적용. [나머지 [8%][zero] 세번에 대해서는 감축면제 - 최소 SP수치에 대해서는 indicator를 비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G33 indicator 리스트를 Annex F로 첨부	- o 최소 8%를 유지하면서 20%까지를 [] 처리 - zero cut의 경우 이중 []을 풀고 [0 ~ 40% of SP]로 변경 - 기존의 3개 범주를 2개 범주로 변경하며 zero cut을 제외한 잔여 SP의 관세 감축율을 12~20%로 추진토록 설정하고, overall average cut 수치(15%) 신설 - 최소 SP수치에 대해서는 indicator를 비적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를 삭제
- o Indicator에 따르더라도 최소 수치의 SP 이상을 지정치 못하는 국가는 사용치 않은 민감품목을 SP로 전환 가능(transfer mechanism) - 이 경우 최대 허용치가 [12][20]%를 넘어설 수 없고, 감축면제 대상불가	- o transfer mechanism 문구 정비하여 아래 2개 조건 하에서만 가능토록 명시 - 전체 SeP entitlement의 1/3까지 가능 - 전환되는 entitlement에 대해서는 20% cut 적용 필요
o SVE의 경우 (1) 조정되는 관세감축율 및 상기 SP 방식을 적용하거나, (2) 24% 평균감축율을 넘어서는 감축율에 대해 SP지정으로 조정. 이 경우 최소 감축율을 적용치 않고 지정	o 좌동 (문구 조정)
o RAM의 경우 indicator 비적용 threshold를 [2]% 높게, 총 SP숫자를 [1]% 많게, 감축율은 [2]% 작게 설정. [추가로 1% 세번에 대해 감축 면제]	- o indicator 비적용 threshold를 삭제 - 기존의 "1%p 추가"를 "10%추가"로 소폭 조정 - zero cut 관련 []을 삭제하는 대신, SP 대비 2%p 추가 감소된 수치를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¹⁹⁾

가격기준 SSM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분명히 감소하고 있거나 수입량이 경미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

개도국은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기준 SSM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분명히 감소하고 있거나 수입량이 경미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 발동 대상품목의 제한은 없으나 12개월 동안 [3-8] 품목²⁰⁾까지만 발동할 수 있으며, 물량기준 SSM과 가격기준 SSM의 동시발동 또는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²¹⁾ 등 다른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동시 발동할 수 없다.

19)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 HS 6단위 1개를 1개 품목으로 정의하고 1개 품목당 세번은 최대[4-8개]이다.

21) UR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특별긴급관세 제도가 생겼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UR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에 표시해 두었다.

물량기준 SSM은 최대 12개월까지 발동하되 계절성 품목은 최대 6개월까지만 발동가능하고 어떤 품목도 2회 초과하여 연속발동은 할 수 없다. 물량기준 SSM이 발동 중인 경우에 수입된 물량도 다음번 물량기준 SSM 발동 기준 물량 계산에 산입하되, 만약 그 산입으로 인하여 당초 발동기준 물량보다 낮아지면 당초 발동기준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

표 4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SSM

기준	발동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실행관세에 부과)
물량 기준 SSM	1안 (G33)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05%초과 110%이하
		양허관세의 50% 또는 40%p 중 높은 것
		110%초과 130%이하
	2안 (수출국)	130%초과
		양허관세의 75% 또는 50%p 중 높은 것
		양허관세의 100% 또는 60%p 중 높은 것
가격기준 SSM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30%초과 135%이하	양허관세의 20% 또는 20%p 중 낮은 것 한도 : DDA 양허관세
		양허관세의 25% 또는 25%p 중 낮은 것 한도 : UR 양허관세와 DDA 양허관세의 중간
	155% 초과	양허관세의 30% 또는 30%p 중 낮은 것 한도 : UR 양허관세
		발동가격과 수입가격 차이[의 50%] [한도: UR 양허관세]

긴급수입관세(Special Safeguard, SSG)

선진국의 경우 SSG를 모두 철폐하거나 전체 세번의 1.5%로 축소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개도국의 경우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와 같은 운용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품목을 전체 세번의 3%로 축소하는 방안을 [] 로 규정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SSG를 모두 철폐하거나 전체 세번의 1.5%로 축소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TRQ 관리방안²²⁾

수입국은 다음과 같은 쿼터 미소진(Underfill)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표 5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TRQ 관리

시기	해당 조치
(1단계) 발동	- 모니터링 첫째, 수입국이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이하로 하락시, 수출국은 TRQ 실행과 관련하여 농업위원회에 문제제기 가능(메카니즘 발동) - 수입국은 시장상황, TRQ관리방식, 미소진 야기 요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수출국들을 이해시켜야 함

1차 수정안과 비교하여 절차적 측면 규정은 변동 없으며, 쿼터 미소진과 관련하여 수입국들의 의무를 일부 완화하였다.

22) 각국별로 수입쿼터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다. 예컨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가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수입쿼터를 운영하는 것을 수입쿼터 관리 즉 TRQ 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표 5 계속)

시기	해당 조치	
(2단계) 2년후	■ 메커니즘 발동이후, 연속 2년 동안 지정된 비율이하로 소진율이 하락하거나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면, TRQ관리방식 수정 요구 가능 ■ 수입국들은 요구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진율을 향상시킬 효율적인 다른 조치 필요	
	메커니즘 발동이후 상황	결 과
	i)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이상으로 상승시 ii) 낮은 소진율이 시장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시	‘해결된’ 것으로 보아 모니터링 불필요
	i)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 이하로 유지	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추가 수정 요구 가능
(3단계) 3년후	■ 모니터링 세 번째해 이후, 아래의 경우 수입국들은 선착순과 비조건적 허가 중 하나로 수입관리방식 변경(최소 2년간 유지) (a) 연속 3년간 소진율이 지정된 비율 이하로 유지 (b) 소진율이 직전 3년동안의 소진율보다 지정된 최소수량 비율만큼 증가하지 않을 경우 (c) 미소진 사유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d) 수출국이 미소진 메커니즘의 3단계를 시작할 것을 희망시	

2. 국내보조 분야

무역왜곡보조금액(OTDS)

감축구간, 감축율 및 이행기간 등 주요 내용은 기존 문서와 동일하나, 감축을 관련 기존에는 두 개의 괄호를 하나로 처리하였다. 한편, 이번 문서에서는 OTDS감축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인 생산액 데이터를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감축기간 [] 방식과 생산액 데이터를 모델리티에 첨부하도록 한 것은 2차 수정안의 두드러진 점이다. 3구간의 하위 수치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OTDS한도(56,464억 원)에서 선진국 적용(50%)시 28,232억 원, 개도국 적용시(33.3%) 55,119억 원으로 감축이 추산되므로 실제 OTDS 지급액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다.

표 6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OTDS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o 감축구간 및 감축율은 작업문서 내용과 동일			o [] 표현방식을 [75][85]%에서 [(75)(85)]방식으로 변경	
구간	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600억불 이상	[75][85]%		
	100~600억불	[66][73]%		
100억불 이하	[50][60]%	2/3 감축		
o 이행기간 관련, 이행초년도 감축부담을 강화하고 구체적 기간 제시(선진국 5년간 6번, 개도국 8년간 9번)하며 국가별로 차등			o 좌동	
- EU·미·일 : 이행 첫날 총 OTDS의 1/3 감축, 나머지 5년 균등 감축				

(표 6 계속)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 나머지 선진국 : 이행 첫날 총 OTDS의 25% 감축, 나머지 5년 균등 감축 - 개도국 : 이행 첫날 총 OTDS의 20% 감축, 나머지 8년 균등 감축	
- o SVEs와 소규모취약 RAMs는 감축의무 면제 - 최근 신규가입국 및 소규모취약 RAM : OTDS, AMS, de minimis 감축의무 면제 - 기타 신규가입국 : AMS의 경우 선진국 감축율 2/3적용	o 좌동
o LDC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OTDS 산정기준, 연간 및 최종 OTDS 한도를 금액단위로 양허표에 기재.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은 산정기준만 기재	o 좌동
o (신설)	o OTDS를 사용하는 국가는 생산액 데이터를 모델리티에 첨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해야 함

감축대상보조(AMS)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개도국은 AMS 계산시 고려되며, 선진국의 품목별 AMS를 모델리티에 첨부하는 내용 등이 2차 수정안의 특이한 사항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AMS 한도(14,900억 원) 선진국 적용(45%)시 8,195억 원, 개도국 적용(30%)시 10,430억 원으로 감축액이 추산된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²³⁾

보조금 감축율의 표현방식을 [50][60]%에서 [(50)(60)]방식으로 변경했을 뿐 달라진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De-minimis수준 이하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에도 이 보조액을 AMS로 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 최소허용보조 지급실적 및 지급한도 비교

구분(억 원)	지급 실적		지급 한도			
	UR 평균 (‘95-‘04)	최근 평균 (‘03-‘04)	선진국기준시		개도국 기준시	
			이행초	이행말	이행초	이행말
품목불특정보조	1.3	1.2	5	2	10	6
품목특정보조						

23) 최소허용보조는 AMS와 성격이 비슷하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UR 협상 결과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이고 감축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AMS 지급실적 중 쌀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04년의 경우 92%)을 차지하는 상황이나 ‘05년부터 양정제도가 개편, 쌀 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따라 AMS한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계속)

구분(억 원)	지급 실적		지급 한도			
	UR 평균 (‘95-’04)	최근 평균 (‘03-04)	선진국기준시		개도국 기준시	
			이행초	이행말	이행초	이행말
소	2.95	1.50	5	2	10	6
돼지	0.34	0.01	5	2	10	6
닭	0.01	0.00	5	2	10	6
맥주보리	1.28	0.55	5	2	10	6
감자	0.04	0.00	5	2	10	6
고구마	0.03	0.02	5	2	10	6
마늘	1.82	1.95	5	2	10	6
양파	1.63	2.17	5	2	10	6
당근	0.76	2.44	5	2	10	6
고추	0.24	0.56	5	2	10	6
파	0.12	0.26	5	2	10	6
기타채소류	0.26	0.32	5	2	10	6
인삼	1.55	0.24	5	2	10	6
밤	1.15	0.43	5	2	10	6
배	0.82	1.97	5	2	10	6
참다래	0.79	0.00	5	2	10	6
사과	0.66	1.27	5	2	10	6
감귤	0.20	0.86	5	2	10	6
복숭아	0.06	0.00	5	2	10	6
포도	0.04	0.00	5	2	10	6
감	0.14	0.52	5	2	10	6
(평균)	0.71	0.72	5.00	2.00	10.00	6.00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를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품목에 대해 어떤 보조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는 이행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양허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블루박스(Blue Box)

1차 수정안에서는 공란으로 있던 Annex A에 첨부된 미국의 블루박스 내용 및 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쌀의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할 경우 블루박스 한도(1995-2000년 총생산액의 5%) 이상의 한도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린박스(Green Box)²⁴⁾

G-10²⁵⁾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24) 일반서비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자연재해 구호지원 등의 보조금은 감축의무가 없으며, 이를 허용보조라고 한다.

25)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으로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표 8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그린박스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o (신설)	o 개도국의 public stockholding 관련 저소득층지원이나 빈곤자원보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acquisition)은 AMS 산업에서 제외
o 부속서 6, 11, 13항에 대한 고정·불변 기준(fixed and unchanging base level) 관련, 예외적 업데이트가 인정되는 조건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생산자의 기대와 생산계획에 영향이 없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생산자의 기대와 생산계획에 영향이 없고 이에 따라 지급자격(entitlement)도 부속서 1항에 상반되는 방식으로 생산을 야기치 않을 경우]로 수정	o 예외적 업데이트 인정조건을 명확히 함 - 생산자의 기대와 생산계획에 영향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1) 업데이트기준기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수년이 지나야 하고, 2) 업데이트기준기간결과는 생산자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중립적이거나 지지를 감소하는 조건하에서 가능

3. 수출경쟁 분야

수출보조(Export Subsidy)²⁶⁾

1차 수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2010년까지 50%, 나머지는 그 후 매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농업협정 제 9.4조에 따라 수출보조 철폐 후 5년간 마케팅비용, 운송비용 등의 수출보조는 유지 가능하다.

수출신용(Export Credit)²⁷⁾

선진국의 최대상환기간은 이행기간 첫날 또는 2010년 말 중 빨리 도래하는 시기부터 180일을 적용한다. 개도국의 경우는 180일로 하되 3년에 걸쳐 적용한다. 선진국 자생기간(self-financing)은 [4][5]년, 개도국은 50% 연장개도국의 자생기간(self-financing)이 [6] [7.5]년에서 50% 추가 증가한 점이 특기한 사항이다.

수출보조와 수출국 영무역기업의 내용은 1차 수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수출신용에서는 개도국의 자생기간이 [6] [7.5]년에서 50% 추가 증가한 점이 특기한 사항이다.

수출국영무역기업(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 STE)²⁸⁾

1차 수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2013년까지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을 철폐

26) 농산물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27) 농산물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이자 등 금융거래가 필요하다. 과거에 농산물 수출에 조달되는 자금을 대해서는 낮은 금리 등을 적용했는데, DDA 협상에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시장금리에 가깝게 되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중이다.

28)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거대한 수출국영무역기업이 있어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DDA 협상에서는 이들 기업의 독점력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긴급상황시 수요 평가내용을 추가하고 현금화 관련하여 일부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대북 지원문제가 있으나, 이는 내부거래로 보아 WTO 식량원조 규정에 대한 반대 주장을 자제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해야 한다. 단, 개도국의 경우, ①국내소비자 가격의 안정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출국영무역기업, ② 연속 3년간 해당품목 세계수출의 5% 미만을 차지하는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력은 허용한다.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²⁹⁾과 소규모취약국가(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SVE)들은 상기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독점력이 허용된다.

식량원조(Food Aid)³⁰⁾

모든 식량원조는 무상공여로 제공하며, 재수출은 금지하나 긴급 식량원조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수혜국의 동종 또는 대체 품목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원조를 지양하며, 점차적으로 현금원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지원문제가 있으나, 이는 정치적·인도적 문제로서 WTO 식량원조관련 규정에 대한 이의를 자제해 온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 9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의 내용: 식량원조

1차 수정안(2008년 2월)	2차 수정안(2008년 5월)
- o 긴급상황 (Safe Box) - (a) 및 (b) 공히 UN 관련 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의한 수요평가(need assessment)가 필요 - 수요평가 기간은 3개월로 하되, 동 기간동안은 분쟁제기 불가 - 현금화를 금지하되, LDC의 경우 예외 인정 - o 비긴급상황(Non-emergency situations) - 공인기관에 의한 수요평가, 확인된 수혜대상 환경, 특정 개발 목적 또는 영양상의 이유 적용, 상업적 재처분 금지 - o 현금화는 [금지] [LDC 및 NFIDC에 대한 식량원조 이행에 직접 관련된 활동][개도국 수혜국의 식량원조 이행에 관련된 활동, 저소득·자원빈곤에 대한 농업투입재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 허용	- o UN기구를 Multilateral agency로 변경 - o 평가는 객관적이고, 국제기구나 수혜자 국가가 공표하는 증명할 수 있는 빈곤과 굶주림 데이터를 반영 내용 추가 - o 현금화대상을 transportation and delivery에서 internal transportation and delivery로 구체화

29) UN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국가들로 2007년 7월 현재 50개국이 최빈개도국이다. DDA 협상에서 최빈개도국들에게 우대를 주기로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최빈개도국들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량을 제한하지 말고 관세도 부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30)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제고식량을 덤핑으로 해외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덤핑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중이다. 구체적으로 예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원조해야 한다는 것이 협상의 기본방향이다.

4. 양우 전망 및 일정

최근 2차 세부원칙 수정안이 배포되면서 DDA 농업협상은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월 26일 주간부터 2차 수정안을 기초로 주요국간 다자분야 협의를 거친 후, 비농업부문(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³¹⁾간의 동시협상(Horizontal Process) 이전에 보완된 수정안(3차)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인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등을 중심으로 G10 및 G33 국가가 공조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2, 19 May 2008

31)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이라고 한다.

·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5)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5)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5)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 5)*

성명환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이 악화되고 있다. 2006년 후반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국제 연물가격

쌀의 본선인도가격

2008년 5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 인도 가격(FOB)은 전년 동월대비 68.1% 상승한 톤당 926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 인도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99.4% 상승한 톤당 973달러이다.

미 농무부(USDA)가 2008년 5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68.1% 상승한 톤당 926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99.4% 상승한 톤당 973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점차 하락한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2006년 3월에 톤당 491달러로 하락했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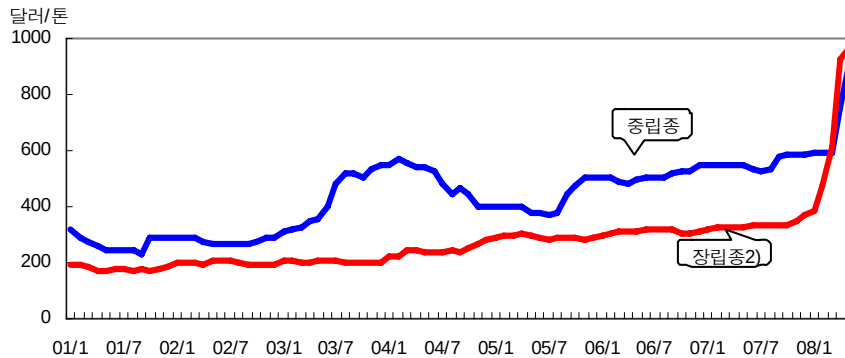
2006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8년 5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68.1%, 전월대비 22.2% 상승한 톤당 92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 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2008년 5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99.4%, 전월대비 4.7% 상승한 톤당 97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쌀 수요가 증대하고 수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 등이 자국 쌀 수요가 늘면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2008년도 국제 쌀 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쌀 수요 증가와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 등이 자국의 쌀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주: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급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자료: USDA, Rice Outlook.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5/06	2006/07	2007.5	2008.4	2008.5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미국	남부 장립종1	334	407	397	816	926	133.2	13.5
	CA 중립종1	484	538	551	758	926	68.1	22.2
태	국2	301	320	325	929	973	199.4	4.7
베	트 남3	259	292	303	875	1,100	263.0	25.7

주: 1) 남부 장립종은 2등급,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USDA, Rice Outlook, May 12, 2008.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

2008년 5월 14일 현재 각 곡물의 운임포함가격은 옥수수가 톤당 375달러, 대두가 톤당 635달러, 대두박이 톤당 532달러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4년 4월 톤당 209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에는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5월 14일 현재 톤당 375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59.6%, 전월대비 3.0% 상승한 것이다.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5월 14일 현재 톤당 635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75.9%, 전월대비 4.6% 상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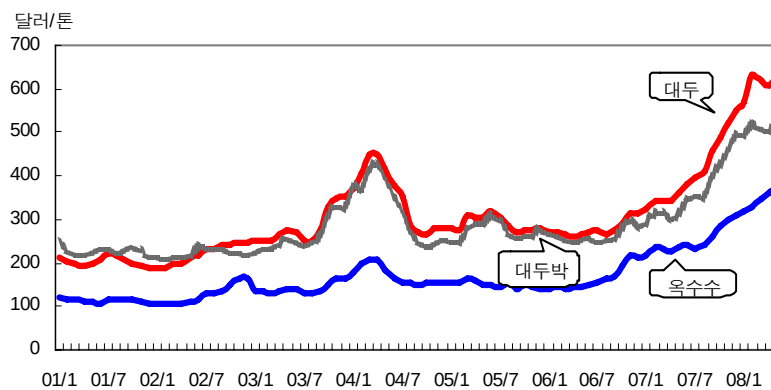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5월 14일 현재 톤당 532달러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70.5% 상승한 것이다.

최근 운임포함 국제 곡물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과 함께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걸프만 기준 2006년 12월 해상운임은 톤당 53달러였으나 2008년 5월에는 126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최근 운임포함 국제 곡물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과 함께 해상운임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5월 14일 기준 가격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품 목	2005 평균	2006 평균	2007.5	2008.4	2008.5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 수 수	150	164	235	364	375	59.6	3.0
대 두	290	278	361	607	635	75.9	4.6
대 두 박	272	261	312	503	532	70.5	5.8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5월 14일 기준 가격

2. 국제 선물가격

2008년 5월 14일 현재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8년 5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78.0% 상승한 톤당 315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8년 5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7.8% 상승한 톤당 232달러, 2008년 5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76.8% 상승한 톤당 504달러이다.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소맥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7월에는 18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5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5월 14일 현재 톤당 315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78.0% 상승하였으나 전월보다는 8.7% 하락하였다. 2008/09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 증가와 세계 소맥 재고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맥가격은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5월물 인도분이 2008년 5월 14일 현재 톤당 232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7.8%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 0.4%

2008년 5월 현재 캔사스 상품 거래소의 2008년 5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315달러이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5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232달러, 대두 선물가격은 504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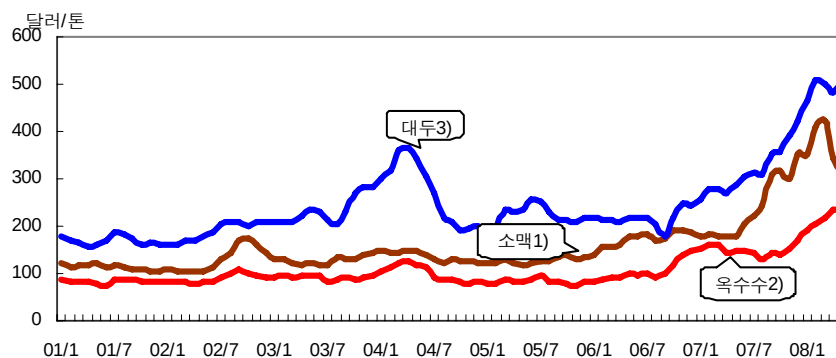
하락하였다. 2008/09년도 옥수수 소비량은 늘어나지만 생산량이 줄어들고 재고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선물가격

밀, 옥수수, 대두 등 세계 곡물의 재고량이 대폭 감소하여 앞으로도 곡물의 선물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8년 5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2008년 5월 14일 현재 톤당 504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76.8%, 전월대비 4.3% 상승하였다. 2007/08년도 대두 생산량과 공급량은 줄어들고 기말재고량도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앞으로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목	2005/06	2006/07	2007.5	2008.4	2008.5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소 맥1)	142	181	177	345	315	78.0	△8.7
옥 수 수2)	88	140	147	233	232	57.8	△0.4
대 두2)	214	267	285	483	504	76.8	4.3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008년 5월 14일 기준 가격임.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8년 5월 14일 기준 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연도1)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2)		태국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소맥3)	옥수수4)	대두4)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주: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 (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http://www.ams.usda.gov/LSMNpubs/PDF_Daily/DGR.pdf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 5)*

성명환

미 농무부(USDA)가 지난 5월 9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8/09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21억 5,869만 톤, 소비량은 1.7% 증가한 21억 4,838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3.2% 늘어난 3억 3,380만 톤, 기말재고율은 0.2% 포인트 상승한 15.5%로 전망되었다.

1. 전체 곡물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21억 5,86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21억 4,838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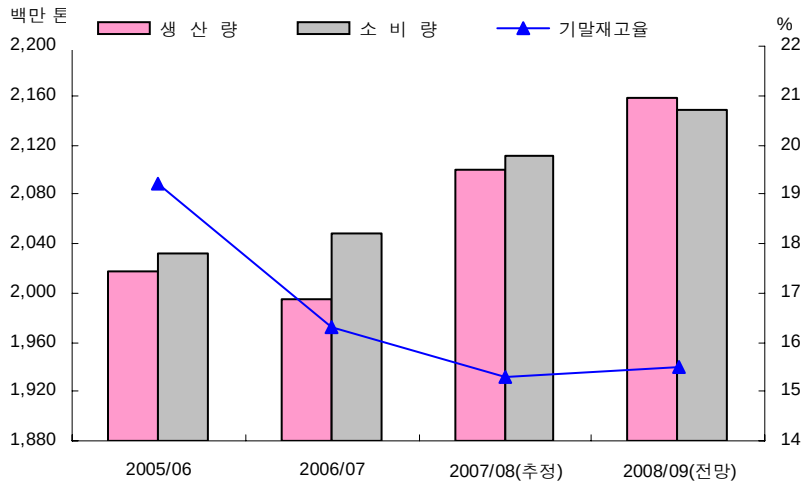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21억 5,86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소맥 등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0.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09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2,350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4억 8,219만 톤으로 전년보다 1.9%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4,690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2008/09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21억 4,838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으나 2008/09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031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그림 1 전체 곡물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0.6% 증가한 2억 6,38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3억 3,38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7/08년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1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 (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생 산 량	1,995.21	2,100.60	2,158.69	2.8
공 급 량	2,383.41	2,435.29	2,482.19	1.9
소 비 량	2,048.71	2,111.80	2,148.38	1.7
교 역 량	258.34	262.27	263.80	0.6
기말재고량	334.69	323.50	333.80	3.2
기말재고율(%)	16.3	15.3	15.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2.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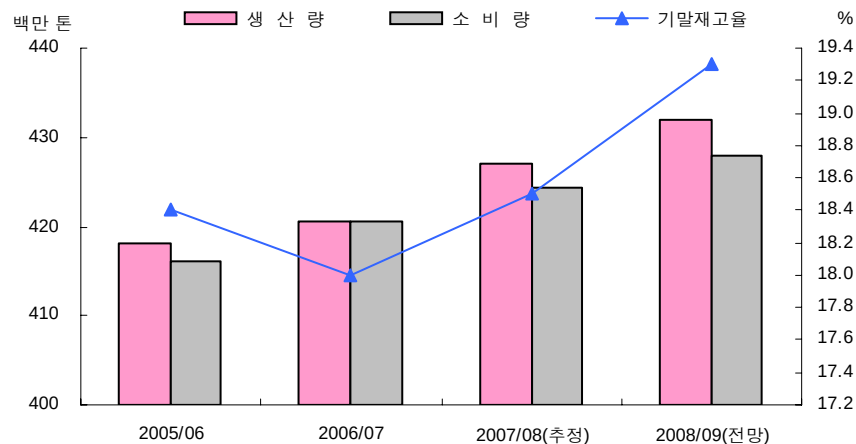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4억 3,204만 톤 수준으로 주요 아시아 지역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쌀 소비량은 4억 2,797만 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2007/08년보다 1.2% 증가한 4억 3,204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 지역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0.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09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4억 2,797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2,440만 톤보다 약 36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과 비슷한 약 2,70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수출량의 경우 베트남은 전년대비 9.8% 늘어나지만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미국은 전년대비 12.6% 감소될 전망이다. 세계 수출량에서 태국이 33.3%, 베트남 16.7%, 미국이 11.6%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개국의 비중이 6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8,258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08/09년도 기말재고율은 19.3%로 전년도보다 약 0.8% 포인트 상승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은 55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0.3%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5.4%, 10.2%, 5.6%, 10.0% 늘어날 전망이다.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 (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생 산 량	420.60	427.07	432.04	1.2
공 급 량	495.04	502.91	510.55	1.5
소 비 량	420.45	424.40	427.97	0.8
교 역 량	30.82	27.05	27.01	△0.1
기말재고량	75.84	78.51	82.58	5.2
기말재고율(%)	18.0	18.5	19.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3. 소맥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6억 5,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연속해서 줄어들었던 호주의 소맥 생산량은 2005/06년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7/08년도보다 3.5% 증가한 6억 4,20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량이 증가될 전망이며, 특히 미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16.0%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7.2% 증가한 1억 1,746만 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09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대비 23.8% 줄어든 2,654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2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1,7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도 전년대비 66.7% 늘어난 1,500만 톤 정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5,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속해서 이상기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던 호주의 소맥 생산량이 2005/06년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 (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생 산 량	592.00	606.40	656.01	8.2
공 급 량	739.50	730.45	766.03	4.9
소 비 량	615.45	620.43	642.04	3.5
교 역 량	110.69	109.56	117.46	7.2
기말재고량	124.05	110.02	123.99	12.7
기말재고율(%)	20.2	17.7	19.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2008/09년 기말재고량은 1억 2,399만 톤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EU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101.4%, 8.4%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17.7%에서 19.3%로 1.6% 포인트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4. 옥수수

미국 등의 국가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0.3% 감소할 전망이다. 에탄올 생산에 대한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은 전년보다 1.6%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0.3% 줄어든 7억 7,756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7.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7억 8,82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에탄올 생산에 대한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은 1.6% 증가하고 멕시코와 중국도 전년대비 각각 3.1%,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1,065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08/09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6.9% 감소한 9,231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7.8%, 17.5%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75.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6.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8.0%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9.7% 감소한 9,90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1,066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2008/09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5% 포인트 줄어들어 12.6%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 (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생 산 량	706.72	779.83	777.56	△0.3
공 급 량	831.21	885.29	887.25	0.2
소 비 량	725.73	775.60	788.21	1.6
교 역 량	93.06	99.13	92.31	△6.9
기말재고량	105.46	109.69	99.03	△9.7
기말재고율(%)	14.5	14.1	12.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5. 대두

2007/08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1,972만 톤으로 전년대비 7.4%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생산량은 3.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는 각각 18.9%, 10.5%, 3.7%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007/08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6/07년 2억 2,518만 톤보다 약 865만 톤 늘어난 2억 3,383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르헨티나, 중국, 브라질의 소비량이 각각 12.7%, 5.8%, 2.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7,533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은 미국이 39.4%, 브라질이 35.2%, 아르헨티나가 15.3%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약 9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이 전년대비 2.5% 줄어드는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12.8%, 20.5%씩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4,904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6,302만 톤과 비교하여 22.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7.0% 포인트 낮은 21.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7.4% 감소한 2억 1,972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세계 대두 소비량은 약 865만 톤 늘어난 2억 3,383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4	2008.5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20.54	237.36	219.99	219.72	△7.4	△0.1
공 급 량	268.00	290.15	283.25	282.74	△2.6	△0.2
소 비 량	215.33	225.18	233.83	233.83	3.8	0.0
교 역 량	63.93	71.03	75.45	75.33	6.1	△0.2
기말재고량	52.79	63.02	49.31	49.04	△22.2	△0.5
기말재고율(%)	24.5	28.0	21.1	21.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6. 대두박

2007/08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6,167만 톤으로 전년대비 5.0%, 소비량은 1억 5,995만 톤으로 전년대비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72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5,79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2007/08년도 세계 대두박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5.0%, 소비량은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생산량의 3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수출 비중이 86.3%에 이를 전망이다.

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아르헨티나가 50.0%, 브라질 22.3%, 미국이 14.0%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41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4.1%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줄어든 3.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4	2008.5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45.73	153.90	161.67	161.67	5.0	0.0
공 급 량	152.23	159.76	167.30	167.31	4.7	0.0
소 비 량	145.71	151.73	160.26	159.95	5.4	△0.2
교 역 량	51.44	54.09	57.84	57.94	7.1	0.2
기말재고량	5.86	5.64	5.41	5.41	△4.1	0.0
기말재고율(%)	4.0	3.7	3.4	3.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 (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공급량	495.04	502.91	510.55	1.5
기초재고량	74.44	75.84	78.51	3.5
생산량	420.60	427.07	432.04	1.2
미국	6.24	6.31	6.30	△0.2
태국	18.25	18.50	18.80	1.6
베트남	22.92	23.54	23.56	0.1
인도네시아	35.30	35.50	36.25	2.1
중국	127.80	129.50	130.90	1.1
일본	7.79	7.93	7.90	△0.4
수입량	27.55	25.66	25.55	△0.4
인도네시아	2.00	2.00	0.80	△60.0
중국	0.47	0.47	0.33	△29.8
일본	0.68	0.68	0.70	2.9
소비량	420.45	424.40	427.97	0.8
미국	4.05	3.99	4.02	0.8
태국	9.87	9.97	9.70	△2.7
베트남	18.78	19.72	19.38	△1.7
인도네시아	35.90	36.35	36.85	1.4
중국	127.80	127.00	128.00	0.8
일본	8.25	8.15	8.13	△0.2
수출량	30.82	27.05	27.01	△0.1
미국	2.94	3.58	3.13	△12.6
태국	9.50	9.00	9.00	0.0
베트남	4.52	4.10	4.50	9.8
기말재고량	75.84	78.51	82.58	5.2
미국	1.27	0.69	0.55	△20.3
태국	2.48	2.02	2.13	5.4
베트남	1.39	1.27	1.40	10.2
인도네시아	4.61	4.86	5.06	4.1
중국	35.92	37.72	39.85	5.6
일본	2.41	2.69	2.96	1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 (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공급량	739.50	730.45	766.03	4.9
기초재고량	147.50	124.05	110.02	△11.3
생산량	592.00	606.40	656.01	8.2
미국	49.32	56.25	65.10	15.7
호주	10.64	13.10	24.00	83.2
캐나다	25.27	20.05	25.00	24.7
EU27	124.78	119.48	140.00	17.2
중국	104.47	106.00	109.00	2.8
러시아	44.90	49.40	52.00	5.3
수입량	112.33	107.31	114.59	6.8
EU27	5.14	6.50	5.00	△23.1
브라질	7.75	7.00	7.30	4.3
북아프리카	16.30	18.80	20.30	8.0
파키스탄	0.06	1.70	2.00	17.6
인도	6.71	2.00	0.10	△95.0
러시아	0.86	1.00	1.00	0.0
소비량	615.45	620.43	642.04	3.5
미국	31.04	29.89	34.67	16.0
EU27	125.50	118.97	129.00	8.4
중국	101.00	102.50	104.00	1.5
파키스탄	21.90	22.40	22.90	2.2
러시아	36.40	38.20	39.00	2.1
수출량	110.69	109.56	117.46	7.2
미국	24.73	34.84	26.54	△23.8
캐나다	19.64	14.50	17.00	17.2
EU27	13.87	9.00	15.00	66.7
기말재고량	124.05	110.02	123.99	12.7
미국	12.41	6.52	13.13	101.4
EU27	13.94	11.95	12.95	8.4
중국	35.96	36.96	39.99	8.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 (전망)	전년대비 변동율(%)
공급량	831.21	885.29	887.25	0.2
기초재고량	124.49	105.46	109.69	4.0
생산량	706.72	779.83	777.56	△0.3
미국	267.60	332.09	307.99	△7.3
아르헨티나	22.50	21.50	23.50	9.3
EU27	54.72	48.39	56.12	16.0
멕시코	22.35	22.50	23.00	2.2
동남아시아	16.81	17.94	18.40	2.6
중국	145.48	145.00	150.00	3.4
수입량	90.65	94.32	90.70	△3.8
이집트	4.83	4.20	4.30	2.4
EU27	7.06	13.00	7.00	△46.2
일본	16.71	16.30	16.10	△1.2
멕시코	8.94	9.70	10.50	8.2
동남아시아	4.00	3.55	3.90	9.9
한국	8.74	8.80	9.00	2.3
소비량	725.73	775.60	788.21	1.6
미국	230.79	266.97	270.78	1.4
EU27	62.30	61.80	60.20	△2.6
일본	16.50	16.40	16.10	△1.8
멕시코	30.70	32.00	33.00	3.1
동남아시아	20.45	21.15	21.98	3.9
한국	8.83	8.90	9.10	2.2
중국	143.00	146.00	150.00	2.7
수출량	93.06	99.13	92.31	△6.9
미국	53.97	63.50	53.34	△16.0
아르헨티나	15.31	15.00	16.20	8.0
중국	5.27	0.50	0.50	0.0
기말재고량	105.46	109.69	99.03	△9.7
미국	33.11	35.12	19.37	△44.8
아르헨티나	1.66	1.46	1.86	27.4
EU27	8.76	8.01	9.93	24.0
중국	32.48	31.08	30.68	△1.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4	2008.5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68.00	290.15	283.25	282.74	△2.6	△0.2
기초재고량	47.46	52.79	63.26	63.02	19.4	△0.4
생산량	220.54	237.36	219.99	219.72	△7.4	△0.1
미국	83.37	86.77	70.36	70.36	△18.9	0.0
아르헨티나	40.50	48.80	47.00	47.00	△3.7	0.0
브라질	57.00	59.00	61.00	61.00	3.4	0.0
중국	16.35	15.97	14.30	14.30	△10.5	0.0
수입량	64.05	69.08	75.33	75.26	8.9	△0.1
중국	28.32	28.73	34.00	34.00	18.3	0.0
EU27	13.94	15.29	14.95	15.15	△0.9	1.3
일본	3.96	4.09	4.10	4.10	0.2	0.0
소비량	215.33	225.18	233.83	233.83	3.8	0.0
미국	52.61	53.20	52.64	52.64	△1.1	0.0
아르헨티나	33.34	35.09	39.54	39.54	12.7	0.0
브라질	31.17	33.67	34.48	34.48	2.4	0.0
중국	44.54	45.60	48.25	48.25	5.8	0.0
EU27	15.09	16.09	15.94	16.12	0.2	1.1
일본	4.19	4.31	4.28	4.28	△0.7	0.0
멕시코	3.86	4.02	4.05	3.94	△2.0	△2.7
수출량	63.93	71.03	75.45	75.33	6.1	△0.2
미국	25.58	30.43	29.26	29.67	△2.5	1.4
아르헨티나	7.25	9.54	11.50	11.50	20.5	0.0
브라질	25.91	23.49	27.00	26.50	12.8	△1.9
기말재고량	52.79	63.02	49.31	49.04	△22.2	△0.5
미국	12.23	15.62	4.36	3.95	△74.7	△9.4
아르헨티나	16.47	22.63	20.99	20.99	△7.2	0.0
브라질	16.73	18.63	18.27	18.77	0.8	2.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8.4	2008.5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52.23	159.76	167.30	167.31	4.7	0.0
기초재고량	6.50	5.86	5.63	5.64	△3.8	0.2
생산량	145.73	153.90	161.67	161.67	5.0	0.0
미국	37.42	39.03	39.86	39.77	1.9	△0.2
아르헨티나	25.01	26.06	29.50	29.50	13.2	0.0
브라질	21.89	23.80	24.51	24.51	3.0	0.0
인도	4.77	5.27	6.32	6.32	19.9	0.0
중국	27.30	28.09	30.17	30.17	7.4	0.0
수입량	50.79	51.70	56.21	56.00	8.3	△0.4
EU27	22.82	22.08	24.40	24.40	10.5	0.0
중국	0.84	0.03	0.40	0.30	900.0	△25.0
소비량	145.71	151.73	160.26	159.95	5.4	△0.2
미국	30.11	31.17	32.02	31.84	2.1	△0.6
아르헨티나	0.57	0.60	0.64	0.63	5.0	△1.6
브라질	9.30	11.11	11.84	11.80	6.2	△0.3
인도	1.66	1.95	2.10	2.10	7.7	0.0
EU27	32.88	33.09	35.35	35.52	7.3	0.5
중국	27.78	27.26	29.92	29.82	9.4	△0.3
수출량	51.44	54.09	57.84	57.94	7.1	0.2
미국	7.30	7.97	8.03	8.12	1.9	1.1
아르헨티나	24.20	25.62	28.96	28.96	13.0	0.0
브라질	12.90	12.72	12.90	12.90	1.4	0.0
인도	3.68	3.46	4.20	4.20	21.4	0.0
기말재고량	5.86	5.64	5.41	5.41	△4.1	0.0
미국	0.29	0.32	0.27	0.27	△15.6	0.0
아르헨티나	1.67	1.52	1.42	1.42	△6.6	0.0
브라질	1.47	1.61	1.60	1.60	△0.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8, May 9, 2008.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1)	소비량2)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E)	199,521	238,341	204,871	25,834	33,469	16.3
2007/08(P)	210,060	243,529	211,180	26,227	32,350	15.3

주: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 5)*

김 현 중

지난 5월 16일 발표된 미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쇠고기와 유제품 수출량 및 돼지고기, 계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쇠고기

2008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약 8% 감소하였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에탄올의 주요 원료가 옥수수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재배면적 감소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기상 여건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2008년, 2009년 전망치는 평균적인 기상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콘벨트 지역¹⁾의 홍수로 인해 옥수수 작황은 좋지 않은 편이며, 대평원주 및 애팔라치아 산맥에는 가뭄 영향을 받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암소 사육두수는 1950년대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1월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7년 하반기 암소 도축 증가 때문이다. 대평원주 및 애팔라치아 산맥의 가뭄으로 소 사육농가의 사육환경은 악화되었으며, 암소 및 송아지 가격 하락 및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경산우(최소 한번 이상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도축이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2009

2008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8% 감소하였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에탄올의 주요 원료가 옥수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재배면적 감소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08년 5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kim1025@krei.re.kr, 02-3299-4376)

1) 콘벨트[Corn Belt]: 미국의 중·서부에 걸쳐 형성된 세계 제1의 옥수수 재배지역.

사료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증가로 사육장에서 송아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2008년 쇠고기 생산량 역시 사료비 상승에 따른 암소도축 증가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년, 2010년 송아지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육용 암소 도축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7년 하반기 이후 젖소 도축률은 평년수준보다 약간 높게 유지되고 있다. 달러화 약세로 수입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암소가격은 다소 호전된 상황이며, 암소 도축 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현상을 완화시켰다.

2008년, 2009년 비육용 송아지(비육 밀소) 및 번식용 암송아지 생산 감소로 송아지 고기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아지의 도축두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도체중이 감소하여 송아지 고기 생산량도 전년보다 15% 감소한 상황이다. 사육장에서 송아지 수요가 늘어날 경우 송아지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젖소 송아지를 송아지 고기 생산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송아지 도체중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젖소 송아지가 도축됨에 따라 일반 송아지 도축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로 사육장에서 송아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상황을 전망해 본다면, 송아지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요인과 송아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도체중 감소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쇠고기 생산량은 사료비 상승에 따른 암소도축 증가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267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암소도축 증가로 2009년 쇠고기 생산량은 올해보다 감소한 264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소비지 시장에서 쇠고기와 대체 육류 사이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이 계속될 경우 쇠고기 도매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육업자의 이윤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교역

2008년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16억 4,500파운드로 전망되는데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수출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쇠고기 수입은 28억 1,500만 파운드로 전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소도축 증가로 쇠고기 공급이 증가한데다 미국 달러화 약세로 수입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 쇠고기의 선호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암소도축의 감소로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한 30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호주는 지난해 가뭄으로 사육두수 증가에 지장을 받고 있다. 기상 여건이 호전될 경우, 사육두수가 서서히 늘어나고 암소 도축이 줄어들어 단기에 쇠고기 수출 증가 여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기상 여건은 앞으로 호주의 소 도축과 쇠고기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일부가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료비 상승 및 캐나다 도축장의 경영악화,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로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으로 쇠고기보다는 생우 수출을 더 선호하고 있다.

2. 낙농

사료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원유 생산량은 2007년보다 2.3% 증가한 1,898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1,904억 파운드로 0.3% 증가할 전망이다. 사료비가 크게 상승하였지만 2009년까지는 젖소 사육두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젖소 사육두수는 926만 5천두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2009년에는 923만두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두당 산유량은 매년 서서히 증가하여 왔다. 2008년 두당 산유량은 지난해보다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에도 20,630파운드로 2008년보다 1% 미만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유사비(우유가격/사료비)는 2009년 말로 갈수록 우유가격 상승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유제품 수요는 비교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지분유의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탈지분유의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유제품 수출 경쟁국인 EU(유럽연합)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미국의 유제품 수출량은 경쟁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내 유제품 수요 강세로 인해,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젖소 사육두수 감소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전지분유 수출량(원유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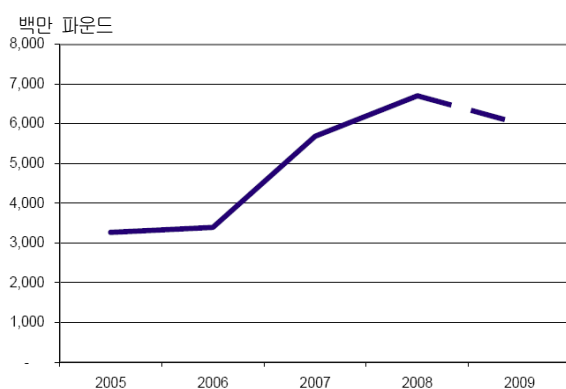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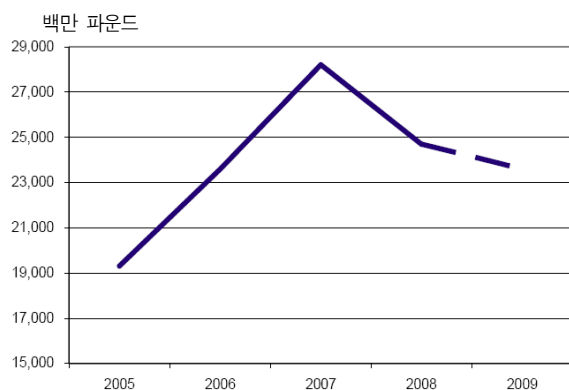


그림 2 탈지분유 수출량(원유환산)



유제품 수출 증가로 인해 2008년 치즈와 버터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며, 치즈 생산능력의 한계와 치즈 생산 비용으로 인해 원유는 버터, 분유로 가공되는 양이 많아질 것이다.

유제품 수출 증가로 인해 2008년 치즈와 버터가격은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제품으로 가공되는 원유량은 2008년에 2007년보다 약 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1% 증가할 전망이다. 치즈 생산 능력의 한계와 치즈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원유는 버터, 분유로 가공되는 양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지와 탈지 분유의 재고는 2008년보다 2009년 말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치즈 가격은 파운드당 1.820~1.870달러, 2009년에는 파운드당 1.790~1.890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2008년 버터 가격은 파운드당 1.335~1.415달러, 2009년에는 1.335~1.48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탈지분유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하여 파운드당 1.360~1.400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며, 2009년에는 상승하여 파운드당 1.470~1.540달러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유장 가격은 2007년보다 크게 하락한 파운드당 27.5~30.5센트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다소 회복하여 29.5~32.5센트로 전망된다.

2008년 원유 가격은 하락하지만 높은 유제품 가격으로 인해 2009년에는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원유 III등급 가격은 100파운드당 17.00~17.50달러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16.80~17.80달러로 전망된다. 2008년 원유 IV등급 가격은 15.45~16.05달러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16.50~17.60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 2008년 평균 원유 가격은 2007년보다 낮은 100파운드당 17.95~18.45달러로 전망되고, 2009년에는 다소 상승한 17.90~18.90달러로 전망된다.

3. 양돈

높은 사료비로 인해 양돈 농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적자 누적으로 농가에서는 모돈수를 줄이고 있으며,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높은 사료비로 인해 양돈 농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적자 누적으로 농가에서는 모돈수를 줄이고 있고 이에 따라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229억 파운드로 2008년보다 2.4% 감소할 전망이다. 돼지 사육두수 감소는 2008년 하반기부터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09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07년 초부터 모돈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9년 돼지 도체중은 올해와 비슷할 전망인데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09년 돼지가격은(정육 51~52% 기준) 2008년보다 9% 상승한 100파운드당 46~50달러로 전망된다.

2008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이전 전망치보다 약 5,200만 파운드 낮춰졌다. 이는 4월에 캐나다로부터의 돼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의 총 돼지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7% 증가한 235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8년 2분기 돼지가격은 100파운드당 46~48달러로 전망되며 올해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7% 하락한 43~45달러로 전망된다.

미국의 돼지 수입 두수는 2007년 1,000만두에서 2008년 1,040만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와 2009년 돼지 수입두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돼지 수입두수는 960만두로 2008년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사육두수 감소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미국의 돼지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캐나다의 모돈(후보돈 포함)수가 2005년 4월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08년 4월에는 4.58%나 감소하였다. 특히 캐나다 남부의 온타리오 주와 서부의 앨버타 주에서의 번식돈 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2008년 1분기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1% 상승한 파운드당 2.84달러였으며, 4월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6% 상승한 2.86달러였다. 2분기 소비자 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1% 하락한 파운드당 2.90달러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2008년 상반기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올해 소비자 가격 상승 폭을 둔화시켰다. 소매업자들이 비용 증가 부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올해 상반기 닭고기 공급량의 증가는 소매업자들의 가격 인상예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9년 돼지고기 공급량 감소로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이 크지만, 파운드당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올해와 비슷한 2.90달러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2008년 미국의 돼지 수입 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분기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39.6% 증가하였는데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1 국별 미국의 1분기 돼지고기 수출량

단위: 백만 파운드, %

구 분	2008	2007	증감률(08/07)
일본	313	290	7.8
멕시코	135	135	0.2
중국	119	42	186.2
홍콩	119	17	619.5
러시아	100	41	141.1
캐나다	99	78	27.1
한국	88	97	-9.0
호주	22	26	-16.7
필리핀	17	3	515.5
프랑스	9	2	438.6
계	1,106	792	39.7

2008년 1분기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11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간보다 39.7% 증가하였는데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량은 일본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1분기 러시아로의 수출량 또한 전년 동기간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중국의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올해 비교적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 돼지 질병(PRRS) 피해로 약 4천만두(중국의 2008년 1월 돼지 사육두수 4억 9천만두)의 돼지가 폐사하였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공급 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1월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69%나 상승하였다.

중국의 돼지고기 수요 강세와 달러화 약세, 미국의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로 2008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43억 파운드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에는 중국이 돼지 질병 피해로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40억 파운드로 2008년보다 7.5% 감소할 전망이다.

4. 닭고기

2008년 1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5.6% 증가했고 수출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입국 수요 증가와 달러화 약세로 미국산 닭고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8년 1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5.6% 증가한 91억 파운드였다. 이는 도계수수가 전년보다 3.6% 증가하고, 평균 생체중 또한 1.8% 증가한 5.6파운드(2.54kg)였기 때문이다.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한 94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도계일수 증가로 4월 도계수수는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다.

입란 감소로 5월 브로일러 생산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5일~5월 3일까지 주간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7년 동기간보다 0.1% 감소하였으며, 부화기에 입란된 숫자가 전년보다 감소하여 향후 병아리 생산수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말 닭고기 재고량은 전년 동기보다 33% 증가한 7억 7천만 파운드였다. 이는 닭고기 수출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닭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위별 재고 중 다리살 재고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은 수출 선적 대기물량이다.

1분기 미국 닭고기 수출량은 2007년보다 18% 증가한 15억 파운드였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입국 수요 증가와 달러화 약세로 미국산 닭고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러시아(수출 증가율: 36%), 중국(28%), 멕시코(27%), 태국(124%), 그루지아(158%), 몰도바(116%) 등이다. 2008년 닭고기 수출량은 6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수출량은 2008년보다 2% 증가한 61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사료비와 연료비 상승으로 2009년 미국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0.8%(당초 예상 2%) 증가하는데 그친 372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9년 상반기에는 2008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 증가가 미미하고 수출 확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도계수수는 2008년보다 다소 증가하나 사료비 상승으로 평균 도체중이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브로일러 냉동 비축량은 2008년 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닭고기 생산이 감소하는 2009년 상반기까지 냉동 비축량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2009년 12개 도시 닭고기 도매가격은 2008년보다 3% 상승한 파운드당 80~86센트로 예상되며, 모든 가금류 평균 도매가격은 79~82센트로 전망된다. 2009년 브로일러 생산이 다소 감소하나 소득 감소로 닭고기 가격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기타 계육 생산량은 2008년보다 1% 감소한 5억 3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생산량 감소로 2009년 1인당 기타 계육 생산량 또한 2008년보다 0.1파운드 감소한 1.2파운드로 예상된다.

5. 계란

산란용 마리수가 전년보다 2.2% 감소하였으나 산란율이 향상되어 2008년 1분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1% 감소하는데 그쳤다. 계절적으로 부활절 이후 계란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하며, 1분기 뉴욕시장 계란 도매가격은 1.59달러(대란 12개들이)였다. 4월 뉴욕 계란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하였으나 3월보다는 0.4달러 하락한 판당(12개들이) 1.19달러였다.

2009년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64억판(12개들이)으로 전망된다. 산란용 마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지난 2년간 계란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4분기와 2008년 1분기 계란 가격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산란용 마리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2009년 종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감소한 10억판(12개들이)으로 예상되며, 브로일러 생산 증감여부에 따라 종란 생산량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과 2009년 계란 재고량은 비교적 안정된 1천 2백만판(12개들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계란 수출량은 달러화 약세로 2008년보다 4% 증가한 2억 4천만판(12개들이)으로 전망된다.

산란용 마리수는 전년보다 2.2% 감소하였으나, 산란율이 향상되어 2008년 1분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1% 감소하는데 그쳤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LDP-M-167/May 16, 2008> 발췌정리

표 2 U. 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산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26,421	6,374	6,910	6,945	6,485	26,714	6,255	26,385
- 돼지고기	21,943	6,023	5,645	5,680	6,135	23,483	5,755	22,930
- 양고기	183	46	44	42	44	176	44	173
- 닭고기	36,126	9,108	9,375	9,200	9,175	36,858	9,000	37,150
- 칠면조고기	5,958	1,540	1,550	1,530	1,560	6,180	1,505	6,140
- 전체 육류	91,264	23,260	23,696	23,563	23,567	94,086	22,724	93,447
- 계란, 백만판/12개	6,435	1,590	1,590	1,610	1,650	6,440	1,590	6,435
1인당 소비량, 파운드								
- 쇠고기	65.2	15.5	16.8	16.5	15.5	64.3	15.2	62.8
- 돼지고기	50.8	12.5	12.6	12.6	13.3	50.9	12.3	50.2
- 양고기	1.1	0.3	0.3	0.2	0.3	1.1	0.3	1.1
- 닭고기	85.4	21.4	22.0	21.5	21.2	86.1	21.1	85.6
- 칠면조고기	17.5	4.0	4.3	4.4	5.3	18.0	3.8	17.6
- 전체 육류	221.6	54.2	56.4	55.6	55.9	222.1	53.1	219.0
- 계란, 개수(백만더즌)	250.1	61.6	61.5	62.2	63.5	248.8	61.0	246.3
시장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Neb, \$/cwt)	91.82	89.59	92-94	89-95	86-94	89-93	88-96	88-95
- 비육필소(Ok City, \$/cwt)	108.23	99.88	102-104	99-105	99-107	100-104	97-105	100-107
- 유틸리티급 정육(S. Falls, \$/cwt)	52.12	53.88	53-55	50-52	48-52	51-53	50-54	50-54
- 초이스급양고기(San Angelo, \$/cwt)	84.93	86.23	83-85	82-88	84-92	84-88	83-91	85-92
- 돼지고기(N. base, l.e. \$/cwt)	47.09	39.64	46-48	45-47	40-44	43-45	44-48	46-50
- 닭고기(12도시, cents/lb)	76.40	78.1	79-81	80-84	79-85	79-82	81-87	80-86
-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82.10	77.4	86-88	89-95	91-99	86-90	77-83	82-89
- 계란(뉴욕, cents/doz)	114.4	158.8	113-117	102-108	106-114	120-125	95-103	90-98
교역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수출량	1,431	365	395	455	430	1,645	420	1,870
- 쇠고기 수입량	3,052	620	740	740	715	2,815	725	3,010
- 양고기 수입량	202	55	50	44	51	200	55	203
- 돼지고기 수출량	3,138	1,150	1,020	965	1,175	4,310	1,050	3,985
- 돼지고기 수입량	968	220	225	235	245	925	215	3,010
- 닭고기 수출량	5,771	1,400	1,475	1,525	1,600	6,000	1,425	6,100
- 칠면조 고기 수출량	553	135	150	160	160	605	145	635
- 모든 수입두수(천두)	10,005	2,625	2,725	2,500	2,400	10,550	2,400	9,60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3 낙농업 전망

구 분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연간
젖소 (천두)	9,158	9,250	9,275	9,275	9,255	9,264	9,240	9,229
두당 산유량 (파운드)	20,267	5,141	5,255	5,050	5,040	20,486	5,150	20,630
우유 생산량 (십억 파운드)	185.6	47.6	47.7	46.8	46.6	189.8	47.6	190.4
- 농가소모분	1.2	0.3	0.3	0.3	0.3	1.2	0.3	1.2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4	188.6	47.3	189.2
유지방 (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4	188.6	47.3	189.2
- 연초 재고량	9.5	10.4	12.1	13.5	12.3	10.4	10.5	10.5
- 수입량	4.6	1.1	1.1	1.1	1.4	4.6	1.1	4.7
- 총공급량	198.6	58.7	61.7	61.1	60.0	203.6	58.9	204.4
- 수출량	5.7	1.9	1.8	1.5	1.5	6.7	1.5	6.0
- 연말 재고량	10.4	12.1	13.5	12.3	10.5	10.5	12.0	9.4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82.5	44.6	46.4	47.4	48.0	186.4	45.4	189.0
전지분유 (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184.4	47.3	48.4	46.5	46.4	188.6	47.3	189.2
- 연초 재고량	9.1	9.9	10.1	10.8	10.0	9.9	10.0	10.0
- 수입량	4.4	1.0	1.1	1.1	1.3	4.4	1.0	4.5
- 총공급량	197.9	58.1	59.6	58.4	57.6	202.9	58.3	203.7
- 수출량	28.2	6.4	6.5	5.9	5.9	24.7	6.1	23.6
- 연말 재고량	9.9	10.1	10.8	10.0	10.0	10.0	10.0	9.7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59.8	41.7	42.3	42.5	41.7	168.2	42.2	170.4
우유가격 (달러/100 파운드) 1)								
- 우유	19.13	19.23	17.70	17.20	17.80	17.95	17.85	17.90
- III 등급	18.04	18.12	17.14	16.48	16.40	17.00	16.53	16.80
- IV 등급	18.36	15.04	14.87	15.62	16.51	15.45	16.33	16.50
유제품 가격 (달러/파운드) 2)								
- 체다 치즈	1.738	1.933	1.851	1.770	1.745	1.820	1.760	1.790
- 유장 분말	0.600	0.305	0.252	0.265	0.295	0.275	0.295	0.295
- 버터	1.344	1.230	1.366	1.402	1.360	1.335	1.325	1.355
- 탈지분유	1.708	1.364	1.272	1.342	1.465	1.360	1.465	1.470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4 육류 통계

구 분	2007년 1~5월	2008년 1~5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10,537	10,986	2,232	2,039	2,100	2,255	2,360
- 송아지고기	64	59	11	11	11	12	13
- 돼지고기	8,869	9,913	2,158	1,903	1,963	2,015	1,874
- 양고기	80	76	15	15	16	15	15
적색육 전체	19,549	21,033	4,416	3,968	4,091	4,297	4,262
- 육계	14,681	15,561	3,230	2,910	2,967	3,202	3,252
- 기타 계육	199	234	46	44	46	46	52
- 칠면조육	2,388	2,564	547	506	486	497	527
백색육 전체	17,267	18,359	3,823	3,461	3,499	3,745	3,831
전체 육류 생산량	36,817	39,392	8,239	7,428	7,590	8,042	8,093
도축두수(천두)							
소	13,907	14,294	2,898	2,643	2,728	2,960	3,065
- 거세우	7,117	7,151	1,415	1,295	1,348	1,518	1,575
- 미경산우	4,157	4,355	882	833	851	879	910
- 경산우	1,329	1,350	315	256	262	287	230
- 젖소	1,082	1,195	240	218	219	223	295
- 비거세우	221	243	46	41	48	53	55
- 송아지	328	352	72	69	71	73	67
양	1,135	1,085	213	212	231	221	208
돼지	43,912	48,944	10,557	9,378	9,662	9,995	9,352
- 비육돈	42,371	47,272	10,209	9,071	9,321	9,668	9,003
- 모돈	1,355	1,510	306	272	302	320	310
육계	3,645,611	3,790,823	785,892	713,136	725,872	778,103	787,820
칠면조	104,636	109,917	22,698	21,538	20,886	21,363	23,432

구 분	2007. 5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정육량(파운드)						
소	753	775	776	775	766	760
송아지	210	159	160	160	164	164
양	73	70	72	70	71	72
돼지	202	205	203	204	202	201
재고 입고량(백만파운드)						
쇠고기	417.3	482.5	445.1	424.1	423.2	429.3
돼지고기	528.5	458.7	570.3	605.7	652.7	652.2
- 내장	61.8	54.7	70.6	79.3	98.9	100.4
- 햄	79.6	49.0	84.4	86.8	90.2	110.3
닭고기	606.1	741.1	773.0	760.8	764.8	753.4
칠면조고기	360.2	260.6	327.6	416.7	428.1	492.7
냉동달걀	14.3	14.7	12.0	16.7	16.3	16.2

표 5 생축 가격

구 분	2007. 5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1,300 파운드급						
· 텍사스 팬핸들	96.67	92.45	91.83	89.40	88.90	93.80
· 네브라스카	95.50	88.63	90.85	89.28	89.04	93.60
- 암소(수폴스지역)						
· 유틸리티급 1,200~1,600파운드	57.90	53.55	57.94	57.81	56.95	57.25
· 유틸리티급 800~1,200파운드	55.50	50.00	55.94	55.69	54.40	55.60
- 비육밀소(오클라호마)						
· 거세우						
1) 500~550 파운드	126.40	119.36	122.86	123.04	120.81	121.20
2) 600~650 파운드	119.27	105.21	113.16	112.15	110.90	114.00
3) 750~800 파운드	109.54	97.45	102.89	99.29	102.29	107.80
· 미경산우						
1) 450~500 파운드	117.12	109.41	110.53	109.72	107.59	109.45
2) 700~750 파운드	102.34	93.77	97.04	93.01	95.18	101.20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 살코기 51~52% 기준	54.40	36.77	42.74	39.40	45.06	57.00
- 모돈						
· 아이오와 #1-2, 300~400파운드	39.89	21.60	25.89	25.33	18.92	27.00

표 6 곡물 및 사료가격

구 분	2007. 5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곡물(\$/부셸)						
- 옥수수, #2 Yellow, Cen. Ill	3.52	4.55	4.91	5.16	5.59	5.58
- 밀, HRW Ord., K.C. (\$/부셸)	5.49	9.63	11.63	11.92	9.82	9.94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198.66	331.28	345.87	331.57	329.94	331.68
- 알팔파, U.S. Avg.(\$/톤)	144.00	135.00	138.00	143.00	157.00	N/A
- 건초, U.S. Avg.(\$/톤)	116.00	118.00	122.00	128.00	140.00	N/A

표 7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 분	2007. 5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쇠고기 (\$/100파운드)						
- 쇠고기 절단 포장육						
초이스급 1-3, 600~900 lb	160.20	146.41	149.63	144.42	147.47	155.60
셀렉트급 1-3, 600~900 lb	148.42	138.06	146.11	142.64	145.52	152.25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50.36	140.32	149.08	144.67	144.35	160.40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32.35	137.50	143.81	146.38	152.73	164.00
- 가죽 및 내장	10.22	9.97	10.53	10.79	10.70	10.70
돼지고기 (\$/100파운드)						
- 지육	76.48	56.71	61.42	57.57	65.87	79.00
- 등심, 14-19 lb BI 1/4" trim	121.61	87.70	90.22	90.33	108.10	132.00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106.30	75.56	78.94	67.26	61.08	90.00
- 후지, 20-23 lb BI trmd. TS1	59.02	48.66	57.31	49.10	57.59	62.00
- 잡육, 72% fresh	57.19	38.51	51.30	48.28	50.81	65.00
육계 (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81.00	75.91	78.79	79.51	77.84	81.25
- 조지아 독(Georgia dock)	79.10	76.59	77.62	79.35	80.11	81.50
- 북동부						
· 뼈없는 가슴살	169.62	128.33	145.19	141.06	140.28	151.70
· 뼈있는 가슴살	115.64	77.60	87.58	87.00	85.82	88.40
· 다리(전체)	60.79	61.67	60.84	64.78	66.91	68.50
· 다리(1/4도체)	43.43	42.30	43.51	44.13	46.32	47.80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88.75	150.03	148.15	154.96	120.85	94.50
- 뉴욕	95.59	157.43	157.25	161.81	123.36	10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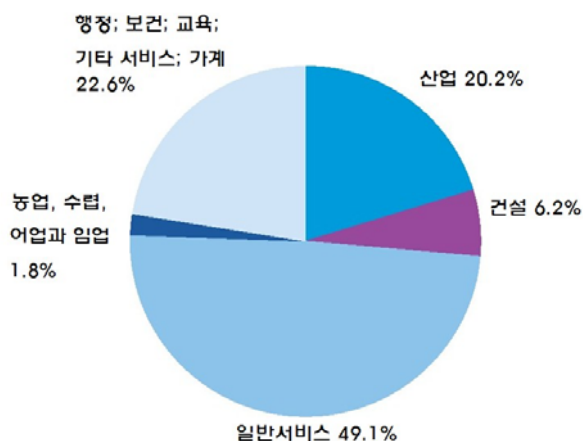
세계농업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세계 밀 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최근 상이한 농업구조와 교역조건을 지닌 회원국들이 유럽 연합(EU)에 새로이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및 수출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이 철폐되면서 농업부문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EU국가들이 국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로 EU-27의 농업부분 관련 통계들을 그래프에 담았다. 자료출처는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이다.

그림 1 EU-27의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2006)



2006년에 EU-27이 생산한 총부가가치는 103,240억 유로였다. 그 중 산업, 건설, 일반서비스업을 포함한 기업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전체의 75.5%에 이른다. 반면, 농업, 수렵, 어업 및 임업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총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의 농업부문 부가가치 비중이 기존 회원국들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회원국들의 농업 생산 비중이 높은 반면 전체 부가가치 규모가 작아 EU-27 차원의 비중에 미친 영향이 작은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산업, 건설, 일반서비스를 포함한 기업부문의 부가가치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내외로 EU 국가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룩셈부르크는 EU 회원국 중 기업부문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약 85%), 전체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27개 회원국가들 중 가장 낮다(0.4%). 2007년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농업부문 부가가치 비중이 약 10%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러나 이 두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 행정, 보건 및 교육관련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다른 EU회원국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실질가격 기준 농업부문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회원국 간에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농업부문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슬로바키아 10.9%, 헝가리 6.7%, 루마니아 4.1% 순이다. 반면 룩셈부르크 농업 부문의 성장률은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6.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컸던 과거와 달리, 룩셈부르크의 철강 산업과 금융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에 집중되었던 노동력과 자본이 유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2 EU국가별 ·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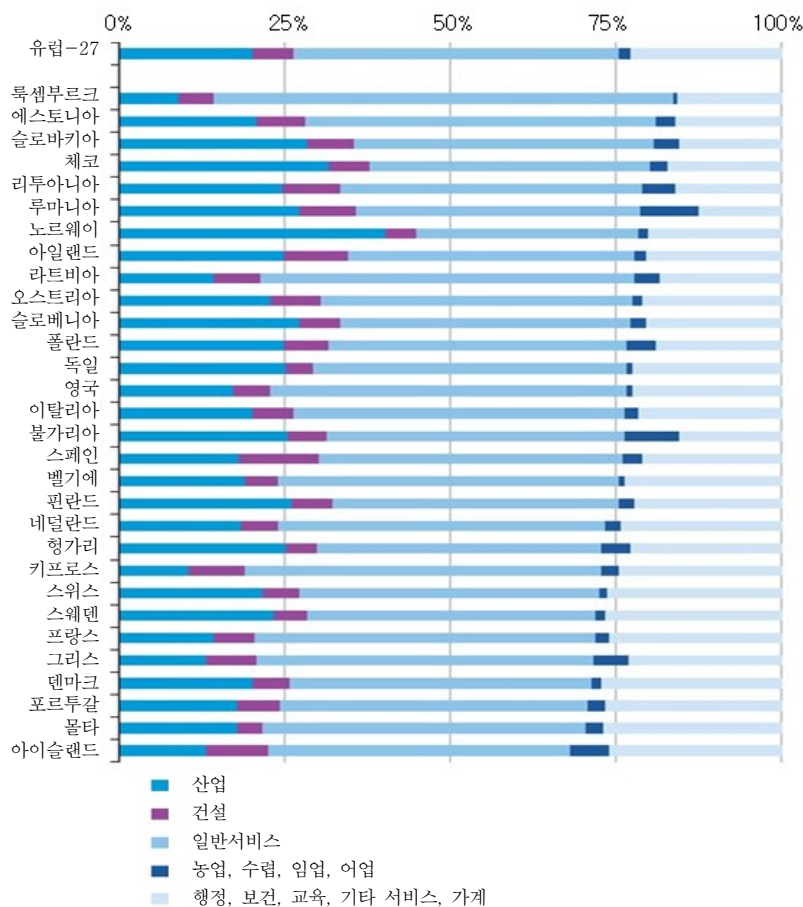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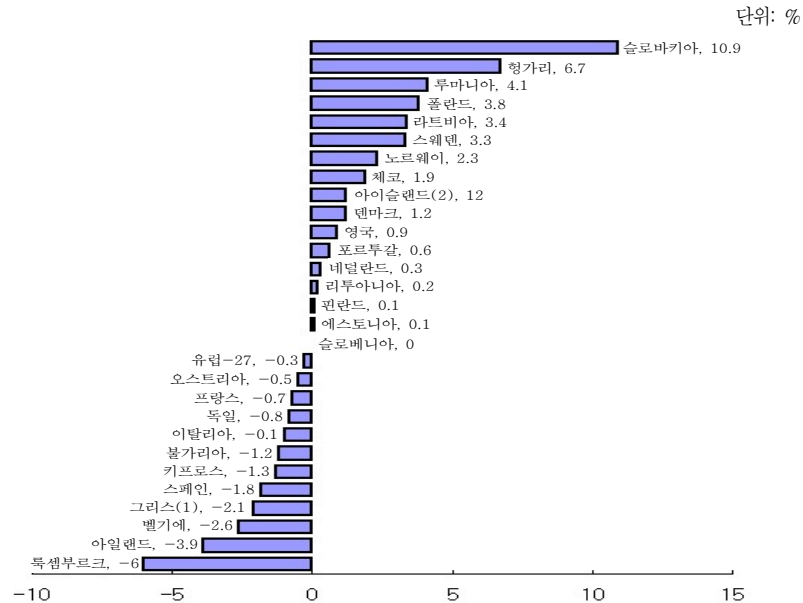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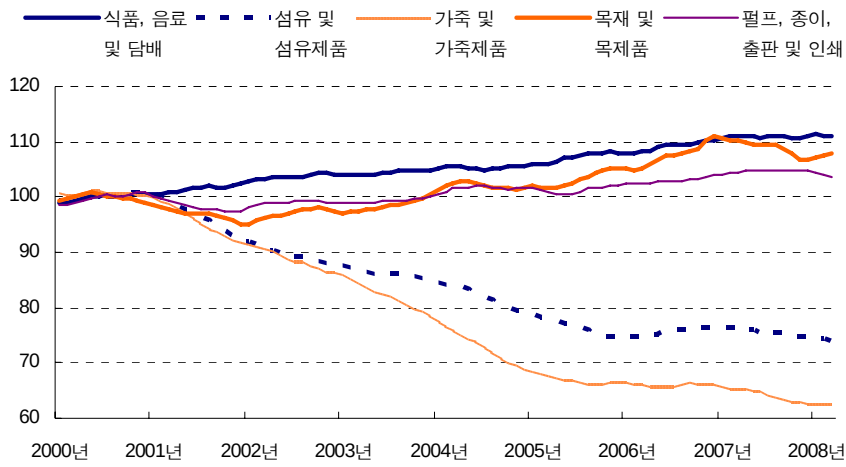
그림 3 농업부문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2000-2006, 실질가격 기준)



주: (1) 2000-2005년 평균
 (2) 2000-2004년 평균
 (3) 달타는 자료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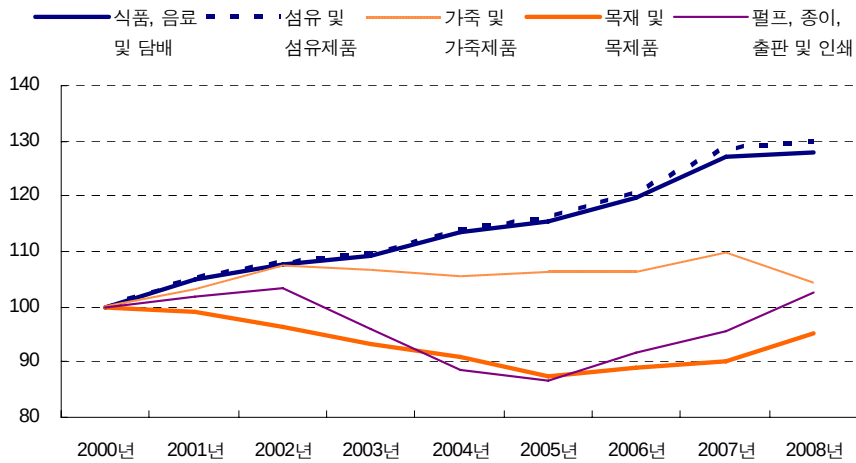
EU-27의 제조업 부문 중 식품, 목재, 펄프 및 종이산업은 생산량이 2000년을 기준으로 2008년 3월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식품산업의 생산량은 2000년 1월 대비 2008년 3월까지 11.1%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12.2% 증가하였다. EU-27 식품산업 매출액의 증가는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의 식품음료 수출이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식품산업의 매출액 증가분이 생산량 증가분보다 높은 것은 식품, 음료 및 담배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한편, EU-27의 섬유 및 가죽 산업의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EU 회원 국가들의 섬유 및 가죽제품 생산 공장이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의 아시아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상이 회원국 내 섬유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다. 또한 섬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베트남, 중국 등으로부터의 섬유 수입 증가도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다.

그림 4 EU-27의 산업과 건설 부문 생산지표 변화(2000=100)



주 : 2008년은 1~3월 평균임.

그림 5 EU-27의 산업과 건설 부문 연평균 매출액 변화(2000=100)



주 : 2008년은 1~3월 평균임.

자료 작성: 유찬희, 이성운

세계 밀 통계

표 1 한국의 국가별 밀 수입액 및 수입량

년도	국가	국가별금액			국가별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 성장율	점유율	물량: kg	전년대비 성장율	점유율
1998	미국	241,744,964	0	36.4	1,441,372,349	0	30.7
	호주	135,115,163	0	20.4	845,358,852	0	18.0
	우크라이나	126,912,288	0	19.1	1,164,532,264	0	24.8
	루마니아	30,841,332	0	4.6	237,882,363	0	5.1
	러시아연합	26,527,660	0	4.0	215,999,282	0	4.6
	캐나다	25,763,470	0	3.9	145,265,329	0	3.1
	네덜란드	22,972,927	0	3.5	221,669,314	0	4.7
	불가리아	21,067,729	0	3.2	187,090,394	0	4.0
	프랑스	7,646,280	0	1.2	54,856,503	0	1.2
	아르헨티나	7,434,922	0	1.1	52,278,607	0	1.1
	헝가리	5,963,382	0	0.9	42,514,587	0	0.9
	중국	2,471,895	0	0.4	17,673,812	0	0.4
	슬로베니아	2,470,411	0	0.4	17,407,000	0	0.4
	오스트리아	2,222,619	0	0.3	14,620,900	0	0.3
	스위스	1,202,439	0	0.2	10,810,198	0	0.2
	유고연방	973,607	0	0.1	6,860,000	0	0.1
	이탈리아	964,735	0	0.1	6,849,404	0	0.1
	아랍에미리트	816,904	0	0.1	8,715,500	0	0.2
	베네주엘라	280,836	0	0.0	2,150,440	0	0.0
	파나마	170,297	0	0.0	1,200,000	0	0.0
	우간다	98,335	0	0.0	1,050,000	0	0.0
	기타국가	37	0	0.0	0	0	0.0
	합계	663,662,232		100.0	4,696,157,098		100.0
2000	미국	213,476,800	105	45.3	1,427,232,716	106	42.9
	호주	177,688,005	117	37.7	1,250,692,508	115	37.6
	캐나다	39,926,332	218	8.5	281,763,597	267	8.5
	영국	23,807,460	377	5.1	221,087,931	377	6.6
	우크라이나	11,629,151	12	2.5	109,857,755	11	3.3
	네덜란드	3,230,237	32	0.7	29,577,905	29	0.9
	그리스	998,909	0	0.2	9,601,000	0	0.3
	프랑스	23,026	0	0.0	87,600	0	0.0
	중국	18,904	5	0.0	58,598	2	0.0
	이탈리아	7,511	59	0.0	8,640	13	0.0
	일본	1,447	0	0.0	1,011	0	0.0
	홍콩	1,182	0	0.0	200	0	0.0
	스위스	104	0	0.0	25	0	0.0
	합계	470,809,068		100.0	3,329,969,486		100.0

년도	국가	국가별금액			국가별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 성장율	점유율	물량: kg	전년대비 성장율	점유율
2002	미국	209,744,405	93	38.6	1,252,946,758	88	32.4
	호주	167,676,686	106	30.9	1,045,898,781	107	27.1
	우크라이나	59,807,840	224	11.0	616,603,210	242	16.0
	중국	58,491,574	156	10.8	570,481,385	168	14.8
	인도	26,894,765	78	4.9	256,752,754	87	6.6
	캐나다	20,226,710	43	3.7	115,760,305	34	3.0
	싱가포르	433,745	867	0.1	4,398,130	1,078	0.1
	프랑스	92,778	462	0.0	229,380	345	0.0
	네덜란드	30,769	111	0.0	49,014	163	0.0
	독일	13,577	0	0.0	66,440	0	0.0
	이탈리아	7,789	167	0.0	15,780	158	0.0
	홍콩	1,978	28	0.0	305	53	0.0
	일본	987	726	0.0	620	1,240	0.0
	가나	215	0	0.0	55	0	0.0
2004	합계	543,423,818		100.0	3,863,202,917		100.0
	미국	274,352,703	105	41.2	1,334,325,718	98	39.5
	호주	249,230,861	147	37.5	1,255,972,164	142	37.1
	중국	57,756,326	61	8.7	334,606,882	42	9.9
	캐나다	38,861,129	127	5.8	191,467,099	131	5.7
	인도	28,654,827	173	4.3	157,731,613	94	4.7
	우크라이나	15,835,600	67	2.4	106,428,683	43	3.1
	터키	165,622	329	0.0	600,000	300	0.0
	프랑스	119,393	86	0.0	222,750	73	0.0
	키르기스스탄	84,693	154	0.0	344,000	127	0.0
	이탈리아	34,430	158	0.0	41,770	108	0.0
	네덜란드	32,782	89	0.0	66,500	74	0.0
	싱가포르	24,980	6	0.0	35,001	1	0.0
	일본	17,788	664	0.0	10,403	1,107	0.0
2005	독일	6,594	12	0.0	4,620	2	0.0
	러시아연합	5,171	0	0.0	13,275	0	0.0
	파키스탄	1,203	115	0.0	4,040	135	0.0
	홍콩	890	45	0.0	60	20	0.0
	합계	665,184,992		100.0	3,381,874,578		100.0
	미국	262,404,145	96	38.9	1,261,843,792	95	34.4
	캐나다	197,239,714	508	29.2	1,280,041,948	669	34.9
	호주	196,723,823	79	29.1	998,251,802	80	27.2
	우크라이나	13,564,505	86	2.0	106,936,196	101	2.9
	중국	3,070,500	5	0.5	13,092,981	4	0.4
	인도네시아	1,030,660	0	0.2	7,586,420	0	0.2
	터키	718,978	434	0.1	2,590,000	432	0.1
	키르기스스탄	266,600	315	0.0	628,000	183	0.0
	프랑스	142,034	119	0.0	271,487	122	0.0
2005	이탈리아	79,685	231	0.0	99,139	237	0.0
	스리랑카	30,418	0	0.0	220,000	0	0.0
	러시아연합	20,333	393	0.0	55,480	418	0.0
	독일	18,088	274	0.0	17,980	389	0.0
	인도	10,850	0	0.0	53,209	0	0.0
	네덜란드	5,333	16	0.0	6,000	9	0.0
	베트남	5,290	0	0.0	10,500	0	0.0
	일본	4,230	24	0.0	1,632	16	0.0
	싱가포르	551	2	0.0	26	0	0.0
	파키스탄	120	10	0.0	1,000	25	0.0
	요르단	16	0	0.0	10	0	0.0
	합계	675,335,873		100.0	3,671,707,602		100.0

년도	국가	국가별금액			국가별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 성장율	점유율	물량: kg	전년대비 성장율	점유율
2006	미국	231,256,698	88	34.6	1,111,418,987	88	31.2
	호주	224,681,178	114	33.6	1,042,595,395	104	29.3
	캐나다	100,005,830	51	15.0	626,301,537	49	17.6
	중국	52,866,234	1,722	7.9	332,455,427	2,539	9.3
	우크라이나	47,494,055	350	7.1	356,963,994	334	10.0
	브라질	7,085,139	0	1.1	54,843,520	0	1.5
	불가리아	3,474,982	79	0.5	27,625,713	53	0.8
	터키	976,080	136	0.1	3,409,000	132	0.1
	키르기스스탄	408,360	153	0.1	1,195,000	190	0.0
	인도네시아	166,408	16	0.0	594,400	8	0.0
	프랑스	150,404	106	0.0	256,300	94	0.0
	싱가포르	140,636	25,524	0.0	1,042,740	4,010,539	0.0
	이탈리아	56,384	71	0.0	66,618	67	0.0
	일본	45,042	1,065	0.0	38,425	2,355	0.0
	러시아연합	11,496	57	0.0	39,160	71	0.0
	독일	9,612	53	0.0	7,872	44	0.0
	베트남	8,237	156	0.0	21,250	202	0.0
	리투아니아	5,600	0	0.0	21,250	0	0.0
	네덜란드	1,802	34	0.0	2,000	33	0.0
	인도	963	9	0.0	2,062	4	0.0
	파키스탄	150	125	0.0	1,000	100	0.0
	필리핀	93	0	0.0	200	0	0.0
	쿠웨이트	41	0	0.0	24	0	0.0
	몽고	30	0	0.0	1	0	0.0
	합계	668,845,454		100.0	3,558,901,875		100.0
2007	미국	349,091,797	151	40.8	1,215,185,642	109	37.4
	호주	235,845,764	105	27.5	824,739,492	79	25.4
	중국	225,942,124	427	26.4	1,073,740,181	323	33.0
	캐나다	41,180,828	41	4.8	127,141,930	20	3.9
	인도네시아	1,151,476	692	0.1	2,517,000	424	0.1
	터키	1,071,988	110	0.1	3,389,000	99	0.1
	싱가포르	955,443	679	0.1	2,328,100	223	0.1
	키르기스스탄	487,520	119	0.1	1,220,000	102	0.0
	일본	222,752	495	0.0	199,834	520	0.0
	프랑스	183,467	122	0.0	279,725	109	0.0
	이탈리아	77,603	138	0.0	82,390	124	0.0
	러시아연합	30,026	261	0.0	88,000	225	0.0
	베트남	16,159	196	0.0	40,000	188	0.0
	독일	12,557	131	0.0	10,368	132	0.0
	아랍에미리트	8,110	1	0.0	21,500	0	0.0
	태국	6,192	7,460	0.0	21,500	13,961	0.0
	아일랜드	3,558	0	0.0	1,000	0	0.0
	핀란드	1,060	0	0.0	996	0	0.0
	파키스탄	1,041	694	0.0	5,000	500	0.0
	인도	461	48	0.0	1,625	79	0.0
	합계	856,289,926		100.0	3,251,013,283		100.0

년도	국가	국가별금액			국가별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 성장율	점유율	물량: kg	전년대비 성장율	점유율
2008	미국	313,082,421	90	68.2	671,222,676	55	69.2
	호주	106,624,833	45	23.2	219,371,464	27	22.6
	캐나다	31,891,280	77	6.9	59,072,015	47	6.1
	중국	3,881,847	2	0.8	14,848,578	1	1.5
	인도네시아	1,480,383	129	0.3	2,320,000	92	0.2
	싱가포르	786,655	82	0.2	1,451,500	62	0.1
	터키	542,971	51	0.1	947,500	28	0.1
	키르기스스탄	450,590	92	0.1	820,000	67	0.1
	일본	145,051	65	0.0	108,710	54	0.0
	스리랑카	104,167	343	0.0	150,500	68	0.0
	프랑스	73,173	40	0.0	74,550	27	0.0
	이탈리아	26,650	34	0.0	25,500	31	0.0
	베트남	14,365	89	0.0	20,000	50	0.0
	카자흐스탄	13,125	0	0.0	25,000	0	0.0
	아일랜드	2,599	73	0.0	1,000	100	0.0
	헝가리	806	0	0.0	1,600	0	0.0
	인도	130	28	0.0	500	31	0.0
	합계	459,121,046		100.0	970,461,093		100.0

주: 밀은 AG코드 11103. 2008년은 4월까지의 합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2 주요국 밀 가격

마케팅연도1/	미국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Marketing Year	(All wheat)	(No. 1 dark northern spring, 14% protein)	(No. 2 wheat)	(No. 1 Canadian western red spring)	(Australian soft white)
1930/31	24	-	-	-	-
1940/41	25	-	-	-	-
1950/51	73	-	-	-	-
1960/61	64	-	-	-	-
1970/71	49	-	-	-	-
1980/81	144	-	-	-	-
1986/87	89	-	203	192	176
1987/88	94	150	119	158	140
1988/89	137	191	150	204	170
1989/90	137	182	150	191	170
1990/91	96	144	104	137	128
1991/92	110	-	113	162	157
1992/93	119	185	128	174	158
1993/94	120	211	128	208	152
1994/95	127	196	135	186	171
1995/96	167	247	229	232	226
1996/97	158	224	182	204	212
1997/98	124	191	141	173	169
1998/99	97	180	116	158	148
1999/00	91	163	113	150	138
2000/01	96	165	124	151	154
2001/02	102	161	121	149	157
2002/03	131	189	158	194	185
2003/04	125	204	161	188	182
2004/05	125	213	127	202	177
2005/06	126	224	140	204	191
2006/07	157	257	192	230	230
2007/08	241	321	250	373	235
2008/09	243-298	-	-	-	-

주 : 마케팅연도는 6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임.

출처: USDA (<http://www.ers.usda.gov/Data/Wheat/WheatYearbook.aspx>)

표 3 세계 각국 밀 수급 통계(2007/2008)

국가명	수확면적 Area Harvested			단수 Yield	
	1000HA	비율 %	순위	MT/HA	순위
가나	0	0.00	68	0	69
가봉	0	0.00	68	0	69
가이아나	0	0.00	68	0	69
과테말라	1	0.00	68	1	27
그루지야	48	0.02	59	1.58	27
기니	0	0.00	68	0	69
나이지리아	95	0.04	52	1.05	27
남아프리카공화국	632	0.29	27	2.92	9
네팔	669	0.31	25	2.09	27
노르웨이	83	0.04	52	4.52	9
뉴질랜드	36	0.02	59	7.69	1
니제르	0	0.00	68	0	69
니카라과	0	0.00	68	0	69
도미니크	0	0.00	68	0	69
라이베리아	0	0.00	68	0	69
러시아	24,500	11.26	3	2.02	27
레바논	50	0.02	59	2.8	9
레소토	10	0.00	68	0.5	69
리비아	250	0.11	38	0.5	69
마다가스카	0	0.00	68	0	69
마케도니아	120	0.06	44	2.33	27
말레이시아	0	0.00	68	0	69
멕시코	677	0.31	25	5.22	2
모로코	2,572	1.18	14	0.62	69
모리셔스	0	0.00	68	0	69
모리타니아	0	0.00	68	0	69
모잠비크	3	0.00	68	1	27
몰도바	285	0.13	37	1.58	27
몽골	240	0.11	38	0.6	69
미국	20,644	9.49	5	2.72	27
바레인	0	0.00	68	0	69
바베이도스	0	0.00	68	0	69
방글라데시	440	0.20	32	2.27	27
버마	95	0.04	52	1.55	27
베네수엘라	0	0.00	68	0	69
베트남	0	0.00	68	0	69
벨로루시	500	0.23	29	3	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55	0.03	56	2.73	27
볼리비아	114	0.05	47	1.03	27
부르키나	0	0.00	68	0	69

표 3 세계 각국 밀 수급 통계(2007/2008)

사료용 소비량 Feed Consumption			식용 종자 산업용 소비량 FSI Consumption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0	0.00	57	300	0.06	80	Ghana
0	0.00	57	80	0.02	102	Gabon
0	0.00	57	50	0.01	110	Guyana
40	0.04	46	441	0.08	71	Guatemala
50	0.05	35	950	0.18	50	Georgia, Republic of
0	0.00	57	150	0.03	95	Guinea
50	0.05	35	3,050	0.59	25	Nigeria
10	0.01	55	2,850	0.55	27	South Africa, Republic of
0	0.00	57	1,415	0.27	40	Nepal
80	0.08	31	525	0.10	64	Norway
40	0.04	46	610	0.12	59	New Zealand
0	0.00	57	30	0.01	110	Niger
0	0.00	57	115	0.02	102	Nicaragua
0	0.00	57	400	0.08	71	Dominican Republic
0	0.00	57	35	0.01	110	Liberia
15,400	15.71	2	22,800	4.38	5	Russian Federation
0	0.00	57	440	0.08	71	Lebanon
0	0.00	57	80	0.02	102	Lesotho
0	0.00	57	1,425	0.27	40	Libya
0	0.00	57	150	0.03	95	Madagascar
80	0.08	31	275	0.05	83	Macedonia, Republic of
50	0.05	35	1,150	0.22	45	Malaysia
100	0.10	30	6,350	1.22	14	Mexico
50	0.05	35	7,100	1.37	13	Morocco
0	0.00	57	100	0.02	102	Mauritius
0	0.00	57	250	0.05	83	Mauritania
0	0.00	57	403	0.08	71	Mozambique
25	0.03	49	700	0.13	56	Moldova, Republic of
0	0.00	57	395	0.08	71	Mongolia
1,633	1.67	8	28,259	5.43	4	United States
0	0.00	57	20	0.00	118	Bahrain
0	0.00	57	20	0.00	118	Barbados
0	0.00	57	2,900	0.56	26	Bangladesh
0	0.00	57	272	0.05	83	Burma, Union of
0	0.00	57	1,590	0.31	37	Venezuela
200	0.20	22	1,100	0.21	46	Vietnam
600	0.61	11	1,040	0.20	47	Belarus
80	0.08	31	525	0.10	64	Bosnia and Herzegovina
15	0.02	53	600	0.12	59	Bolivia
0	0.00	57	75	0.01	110	Burkina

국가명	수확면적 Area Harvested			단수 Yield	
	1000HA	비율 %	순위	MT/HA	순위
부탄	13	0.01	64	1.54	27
북한	110	0.05	47	2.4	27
브라질	1,819	0.84	18	2.1	27
사우디아라비아	490	0.23	29	5.1	2
세네갈	0	0.00	68	0	69
세르비아	556	0.26	28	3.59	9
소말리아	0	0.00	68	0	69
수단	170	0.08	42	3.53	9
스리랑카	0	0.00	68	0	69
스위스	100	0.05	47	5.5	2
시리아	1,700	0.78	19	2.35	27
시에라리온	0	0.00	68	0	69
싱가폴	0	0.00	68	0	69
아랍에미리트연합국	0	0.00	68	0	69
아르메니아	105	0.05	47	2.86	9
아르헨티나	5,600	2.57	13	2.77	9
아이티	0	0.00	68	0	69
아제르바이잔	500	0.23	29	2.85	9
아프가니스탄	2,200	1.01	15	1.73	27
알바니아	110	0.05	47	3	9
알제리	1,700	0.78	19	1.53	27
앙골라	5	0.00	68	0.8	69
에리트레아	25	0.01	64	0.4	69
에콰도르	5	0.00	68	0.6	69
에티오피아	2,060	0.95	16	2.38	27
엘살바도르	0	0.00	68	0	69
예멘	90	0.04	52	1.39	27
오만	0	0.00	68	0	69
오스트레일리아	12,300	5.66	7	1.07	27
온두라스	0	0.00	68	0	69
요르단	30	0.01	64	1.33	27
우루과이	200	0.09	41	2.9	9
우즈베키스탄	1,300	0.60	21	4.77	2
우크라이나	5,950	2.74	12	2.34	27
유럽연합-27	24,716	11.36	2	4.83	2
이라크	1,883	0.87	17	1.24	27
이란	6,900	3.17	11	2.17	27
이스라엘	67	0.03	56	2.24	27
이집트	1,287	0.59	22	6.43	2
인도	28,200	12.97	1	2.69	27

사료용 소비량 Feed Consumption			식용 종자 산업용 소비량 FSI Consumption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0	0.00	57	30	0.01	110	Bhutan
0	0.00	57	664	0.13	56	Korea, Democratic Peoples Rep
200	0.20	22	10,300	1.98	10	Brazil
50	0.05	35	2,600	0.50	30	Saudi Arabia
0	0.00	57	275	0.05	83	Senegal
150	0.15	28	1,600	0.31	37	Serbia
0	0.00	57	30	0.01	110	Somalia
0	0.00	57	1,800	0.35	36	Sudan
0	0.00	57	800	0.15	55	Sri Lanka
250	0.26	21	600	0.12	59	Switzerland
400	0.41	14	4,100	0.79	24	Syria
0	0.00	57	50	0.01	110	Sierra Leone
0	0.00	57	225	0.04	91	Singapore
0	0.00	57	350	0.07	77	United Arab Emirates
30	0.03	49	500	0.10	64	Armenia, Republic of
80	0.08	31	5,350	1.03	19	Argentina
0	0.00	57	200	0.04	91	Haiti
200	0.20	22	2,400	0.46	31	Azerbaijan, Republic of
0	0.00	57	4,400	0.85	23	Afghanistan
0	0.00	57	630	0.12	59	Albania
50	0.05	35	7,700	1.48	12	Algeria
0	0.00	57	454	0.09	68	Angola
0	0.00	57	85	0.02	102	Eritrea
40	0.04	46	413	0.08	71	Ecuador
0	0.00	57	5,779	1.11	15	Ethiopia
0	0.00	57	190	0.04	91	El Salvador
0	0.00	57	2,025	0.39	35	Yemen
0	0.00	57	250	0.05	83	Oman
3,500	3.57	4	2,700	0.52	29	Australia
50	0.05	35	175	0.03	95	Honduras
0	0.00	57	900	0.17	52	Jordan
0	0.00	57	475	0.09	68	Uruguay
1,200	1.22	9	5,600	1.08	17	Uzbekistan, Republic of
3,100	3.16	5	9,650	1.86	11	Ukraine
53,665	54.74	1	65,300	12.55	3	EU-27
300	0.31	19	5,309	1.02	20	Iraq
300	0.31	19	15,200	2.92	9	Iran
350	0.36	17	925	0.18	50	Israel
50	0.05	35	15,800	3.04	8	Egypt
200	0.20	22	75,650	14.54	2	India

국가명	수확면적 Area Harvested			단수 Yield	
	1000HA	비율 %	순위	MT/HA	순위
인도네시아	0	0.00	68	0	69
일본	210	0.10	40	4.33	9
자메이카	0	0.00	68	0	69
잠비아	33	0.02	59	2.88	9
중국	23,100	10.62	4	4.59	9
짐바브웨	45	0.02	59	3	9
차드	4	0.00	68	1.25	27
칠레	295	0.14	34	4.6	2
카메룬	0	0.00	68	0	69
카자흐스탄	12,750	5.86	6	1.3	27
캐나다	8,640	3.97	8	2.32	27
케냐	120	0.06	44	1.88	27
코스타리카	0	0.00	68	0	69
코트디부아르	0	0.00	68	0	69
콜롬비아	15	0.01	64	2	27
콩고	10	0.00	68	1.2	27
콩고 (브라자빌)	0	0.00	68	0	69
쿠바	0	0.00	68	0	69
쿠웨이트	0	0.00	68	0	69
크로아티아	160	0.07	43	4.38	9
키르기스스탄	355	0.16	33	2	27
타이완	0	0.00	68	0	69
타지키스탄	315	0.14	34	1.68	27
탄자니아	65	0.03	56	1.08	27
태국	0	0.00	68	0	69
터키	8,600	3.95	9	1.8	27
토고	0	0.00	68	0	69
투르크메니스탄	850	0.39	23	1.88	27
튀니지	780	0.36	24	1.58	27
트리니다드토바고	0	0.00	68	0	69
파나마	0	0.00	68	0	69
파라과이	300	0.14	34	2.1	27
파키스탄	8,400	3.86	10	2.77	9
파푸아뉴기니	0	0.00	68	0	69
페루	130	0.06	44	1.35	27
피지	0	0.00	68	0	69
필리핀	0	0.00	68	0	69
한국	2	0.00	68	4	9
홍콩	0	0.00	68	0	69
합계	217,489	100		184	

사료용 소비량 Feed Consumption			식용 종자 산업용 소비량 FSI Consumption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50	0.05	35	5,300	1.02	20	Indonesia
200	0.20	22	5,700	1.10	16	Japan
0	0.00	57	350	0.07	77	Jamaica and Dep
0	0.00	57	160	0.03	95	Zambia
6,000	6.12	3	96,500	18.55	1	China, Peoples Republic of
0	0.00	57	260	0.05	83	Zimbabwe
0	0.00	57	55	0.01	110	Chad
200	0.20	22	2,200	0.42	33	Chile
0	0.00	57	250	0.05	83	Cameroon
2,700	2.75	7	4,800	0.92	22	Kazakhstan, Republic of
3,000	3.06	6	5,500	1.06	18	Canada
0	0.00	57	900	0.17	52	Kenya
0	0.00	57	190	0.04	91	Costa Rica
0	0.00	57	250	0.05	83	Cote d'Ivoire
20	0.02	53	1,250	0.24	43	Colombia
0	0.00	57	337	0.06	80	Congo, Democratic Rep of the
0	0.00	57	150	0.03	95	Congo (Brazzaville)
0	0.00	57	700	0.13	56	Cuba
0	0.00	57	300	0.06	80	Kuwait
25	0.03	49	600	0.12	59	Croatia
125	0.13	29	970	0.19	49	Kyrgyzstan, Republic of
10	0.01	55	1,050	0.20	47	Taiwan
45	0.05	35	1,185	0.23	44	Tajikistan, Republic of
0	0.00	57	520	0.10	64	Tanzania, United Republic of
320	0.33	18	830	0.16	54	Thailand
600	0.61	11	15,900	3.06	7	Turkey
0	0.00	57	100	0.02	102	Togo
500	0.51	13	1,300	0.25	42	Turkmenistan
0	0.00	57	2,750	0.53	28	Tunisia
0	0.00	57	125	0.02	102	Trinidad and Tobago
0	0.00	57	150	0.03	95	Panama
25	0.03	49	350	0.07	77	Paraguay
400	0.41	14	22,000	4.23	6	Pakistan
0	0.00	57	150	0.03	95	Papua New Guinea
50	0.05	35	1,450	0.28	39	Peru
0	0.00	57	120	0.02	102	Fiji
400	0.41	14	2,150	0.41	34	Philippines
700	0.71	10	2,300	0.44	32	Korea, Republic of
0	0.00	57	485	0.09	68	Hong Kong
98,038	100		520,141	100		World Total

국가명	생산량 Production			수출량 MY Exports		
	1000HA	비율 %	순위	1000HA	비율 %	순위
가나	0	0.00	65	0	0.00	52
가봉	0	0.00	65	0	0.00	52
가이아나	0	0.00	65	0	0.00	52
과테말라	1	0.00	65	20	0.02	38
그루지야	76	0.01	62	0	0.00	52
기니	0	0.00	65	0	0.00	52
나이지리아	100	0.02	51	0	0.00	52
남아프리카공화국	1,844	0.30	25	300	0.27	19
네팔	1,395	0.23	29	0	0.00	52
노르웨이	375	0.06	43	0	0.00	52
뉴질랜드	277	0.05	44	20	0.02	38
니제르	0	0.00	65	0	0.00	52
니카라과	0	0.00	65	35	0.03	35
도미니크	0	0.00	65	0	0.00	52
라이베리아	0	0.00	65	0	0.00	52
러시아	49,400	8.15	5	12,000	10.95	3
레바논	140	0.02	51	0	0.00	52
레소토	5	0.00	65	0	0.00	52
리비아	125	0.02	51	0	0.00	52
마다가스카	0	0.00	65	0	0.00	52
마케도니아	280	0.05	44	0	0.00	52
말레이시아	0	0.00	65	200	0.18	21
멕시코	3,534	0.58	20	550	0.50	14
모로코	1,583	0.26	26	50	0.05	32
모리셔스	0	0.00	65	25	0.02	38
모리타니아	0	0.00	65	0	0.00	52
모잠비크	3	0.00	65	0	0.00	52
몰도바	450	0.07	42	10	0.01	44
몽골	145	0.02	51	0	0.00	52
미국	56,247	9.28	4	34,836	31.80	1
바레인	0	0.00	65	0	0.00	52
바베이도스	0	0.00	65	0	0.00	52
방글라데시	1,000	0.16	33	0	0.00	52
버마	147	0.02	51	0	0.00	52
베네수엘라	0	0.00	65	10	0.01	44
베트남	0	0.00	65	0	0.00	52
벨로루시	1,500	0.25	28	10	0.01	44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50	0.02	51	0	0.00	52
볼리비아	117	0.02	51	0	0.00	52
부르키나	0	0.00	65	0	0.00	52

수입량 MY Imports			수입의존도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	순위	
300	0.28	57	100.00	1	Ghana
80	0.07	98	100.00	1	Gabon
50	0.05	105	100.00	1	Guyana
500	0.47	44	83.19	52	Guatemala
800	0.75	35	66.56	65	Georgia, Republic of
150	0.14	83	100.00	1	Guinea
2,900	2.70	11	90.63	45	Nigeria
1,350	1.26	22	37.05	85	South Africa, Republic of
20	0.02	114	1.41	111	Nepal
225	0.21	72	23.05	92	Norway
375	0.35	52	43.91	78	New Zealand
30	0.03	110	100.00	1	Niger
150	0.14	83	100.00	1	Nicaragua
400	0.37	49	95.24	37	Dominican Republic
35	0.03	110	100.00	1	Liberia
1,000	0.93	32	1.89	110	Russian Federation
300	0.28	57	68.18	62	Lebanon
75	0.07	98	93.75	39	Lesotho
1,300	1.21	23	91.23	41	Libya
150	0.14	83	100.00	1	Madagascar
75	0.07	98	18.52	94	Macedonia, Republic of
1,200	1.12	26	78.90	56	Malaysia
3,600	3.35	8	47.69	75	Mexico
4,000	3.73	7	48.08	74	Morocco
125	0.12	90	100.00	1	Mauritius
250	0.23	68	100.00	1	Mauritania
400	0.37	49	99.26	34	Mozambique
200	0.19	76	24.60	91	Moldova, Republic of
250	0.23	68	63.29	66	Mongolia
2,585	2.41	12	3.63	106	United States
20	0.02	114	100.00	1	Bahrain
20	0.02	114	100.00	1	Barbados
1,700	1.58	16	53.51	73	Bangladesh
125	0.12	90	45.96	77	Burma, Union of
1,600	1.49	18	95.52	36	Venezuela
1,300	1.21	23	100.00	1	Vietnam
150	0.14	83	7.62	100	Belarus
425	0.40	48	66.72	63	Bosnia and Herzegovina
300	0.28	57	24.73	90	Bolivia
75	0.07	98	100.00	1	Burkina

국가명	생산량 Production			수출량 MY Exports		
	1000HA	비율 %	순위	1000HA	비율 %	순위
부탄	20	0.00	65	0	0.00	52
북한	264	0.04	48	0	0.00	52
브라질	3,825	0.63	18	750	0.68	12
사우디아라비아	2,500	0.41	22	0	0.00	52
세네갈	0	0.00	65	0	0.00	52
세르비아	1,994	0.33	24	375	0.34	17
소말리아	0	0.00	65	0	0.00	52
수단	600	0.10	37	0	0.00	52
스리랑카	0	0.00	65	200	0.18	21
스위스	550	0.09	40	10	0.01	44
시리아	4,000	0.66	17	800	0.73	11
시에라리온	0	0.00	65	0	0.00	52
싱가폴	0	0.00	65	75	0.07	29
아랍에미리트연합국	0	0.00	65	400	0.37	16
아르메니아	300	0.05	44	0	0.00	52
아르헨티나	15,500	2.56	9	10,000	9.13	4
아이티	0	0.00	65	0	0.00	52
아제르바이잔	1,425	0.23	29	0	0.00	52
아프가니스탄	3,800	0.63	18	0	0.00	52
알바니아	330	0.05	44	0	0.00	52
알제리	2,600	0.43	21	0	0.00	52
앙골라	4	0.00	65	0	0.00	52
에리트레아	10	0.00	65	0	0.00	52
에콰도르	3	0.00	65	0	0.00	52
에티오피아	4,900	0.81	16	0	0.00	52
엘살바도르	0	0.00	65	10	0.01	44
에멘	125	0.02	51	0	0.00	52
오만	0	0.00	65	100	0.09	25
오스트레일리아	13,100	2.16	13	7,500	6.85	7
온두라스	0	0.00	65	0	0.00	52
요르단	40	0.01	62	0	0.00	52
우루과이	580	0.10	37	150	0.14	24
우즈베키스탄	6,200	1.02	15	100	0.09	25
우크라이나	13,900	2.29	12	700	0.64	13
유럽연합-27	119,481	19.70	1	9,000	8.21	5
이라크	2,343	0.39	23	0	0.00	52
이란	15,000	2.47	11	50	0.05	32
이스라엘	150	0.02	51	0	0.00	52
이집트	8,275	1.36	14	10	0.01	44
인도	75,810	12.50	3	50	0.05	32

수입량 MY Imports			수입의존도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	순위	
10	0.01	117	33.33	87	Bhutan
400	0.37	49	60.24	68	Korea, Democratic Peoples Rep
7,000	6.52	2	60.33	67	Brazil
50	0.05	105	1.12	112	Saudi Arabia
275	0.26	65	100.00	1	Senegal
100	0.09	95	4.26	105	Serbia
30	0.03	110	100.00	1	Somalia
1,200	1.12	26	66.67	64	Sudan
1,000	0.93	32	90.91	42	Sri Lanka
275	0.26	65	27.61	89	Switzerland
200	0.19	76	2.43	107	Syria
50	0.05	105	100.00	1	Sierra Leone
300	0.28	57	100.00	1	Singapore
750	0.70	36	100.00	1	United Arab Emirates
225	0.21	72	39.82	83	Armenia, Republic of
5	0.00	119	0.03	119	Argentina
200	0.19	76	100.00	1	Haiti
1,000	0.93	32	31.34	88	Azerbaijan, Republic of
600	0.56	41	13.64	95	Afghanistan
300	0.28	57	47.62	76	Albania
4,400	4.10	6	41.96	80	Algeria
450	0.42	45	99.12	35	Angola
75	0.07	98	88.24	49	Eritrea
450	0.42	45	89.46	47	Ecuador
300	0.28	57	5.19	103	Ethiopia
200	0.19	76	88.89	48	El Salvador
1,900	1.77	15	93.83	38	Yemen
350	0.33	53	100.00	1	Oman
75	0.07	98	0.43	116	Australia
225	0.21	72	100.00	1	Honduras
700	0.65	37	57.95	69	Jordan
50	0.05	105	7.34	101	Uruguay
700	0.65	37	8.52	97	Uzbekistan, Republic of
350	0.33	53	2.23	109	Ukraine
6,500	6.06	3	4.65	104	EU-27
3,500	3.26	9	55.04	71	Iraq
200	0.19	76	1.07	114	Iran
1,100	1.03	29	76.82	60	Israel
7,500	6.99	1	37.70	84	Egypt
2,000	1.86	14	2.43	107	India

국가명	생산량 Production			수출량 MY Exports		
	1000HA	비율 %	순위	1000HA	비율 %	순위
인도네시아	0	0.00	65	200	0.18	21
일본	910	0.15	34	425	0.39	15
자메이카	0	0.00	65	0	0.00	52
잠비아	95	0.02	51	0	0.00	52
중국	106,000	17.48	2	2,700	2.46	8
짐바브웨	135	0.02	51	0	0.00	52
차드	5	0.00	65	0	0.00	52
칠레	1,357	0.22	31	15	0.01	44
카메룬	0	0.00	65	0	0.00	52
카자흐스탄	16,600	2.74	8	8,500	7.76	6
캐나다	20,050	3.31	7	14,500	13.23	2
케냐	225	0.04	48	0	0.00	52
코스타리카	0	0.00	65	35	0.03	35
코트디부아르	0	0.00	65	0	0.00	52
콜롬비아	30	0.00	65	10	0.01	44
콩고	12	0.00	65	0	0.00	52
콩고(브라자빌)	0	0.00	65	0	0.00	52
쿠바	0	0.00	65	0	0.00	52
쿠웨이트	0	0.00	65	0	0.00	52
크로아티아	700	0.12	35	300	0.27	19
키르기스스탄	710	0.12	35	25	0.02	38
타이완	0	0.00	65	25	0.02	38
타지키스탄	530	0.09	40	0	0.00	52
탄자니아	70	0.01	62	0	0.00	52
태국	0	0.00	65	100	0.09	25
터키	15,500	2.56	9	1,500	1.37	10
토고	0	0.00	65	0	0.00	52
투르크메니스탄	1,600	0.26	26	0	0.00	52
튀니지	1,235	0.20	32	100	0.09	25
트리니다드토바고	0	0.00	65	0	0.00	52
파나마	0	0.00	65	0	0.00	52
파라과이	630	0.10	37	375	0.34	17
파키스탄	23,300	3.84	6	2,200	2.01	9
파푸아뉴기니	0	0.00	65	0	0.00	52
페루	175	0.03	50	35	0.03	35
피지	0	0.00	65	0	0.00	52
필리핀	0	0.00	65	25	0.02	38
한국	8	0.00	65	80	0.07	29
홍콩	0	0.00	65	65	0.06	31
합계	606,400	100		109,561	100	

수입량 MY Imports			수입의존도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	순위	
5,300	4.94	5	80.07	55	Indonesia
5,500	5.13	4	71.88	61	Japan
350	0.33	53	100.00	1	Jamaica and Dep
65	0.06	104	40.63	81	Zambia
200	0.19	76	0.14	118	China, Peoples Republic of
125	0.12	90	34.72	86	Zimbabwe
50	0.05	105	90.91	42	Chad
1,100	1.03	29	40.52	82	Chile
250	0.23	68	100.00	1	Cameroon
30	0.03	110	0.17	117	Kazakhstan, Republic of
275	0.26	65	1.01	115	Canada
550	0.51	42	56.41	70	Kenya
225	0.21	72	90.00	46	Costa Rica
250	0.23	68	90.91	42	Cote d'Ivoire
1,250	1.16	25	92.87	40	Colombia
325	0.30	56	87.37	50	Congo, Democratic Rep of the
150	0.14	83	100.00	1	Congo (Brazzaville)
700	0.65	37	100.00	1	Cuba
300	0.28	57	100.00	1	Kuwait
100	0.09	95	9.94	96	Croatia
300	0.28	57	22.69	93	Kyrgyzstan, Republic of
1,100	1.03	29	80.88	54	Taiwan
700	0.65	37	54.69	72	Tajikistan, Republic of
450	0.42	45	86.54	51	Tanzania, United Republic of
1,200	1.12	26	78.13	57	Thailand
1,500	1.40	20	8.01	98	Turkey
100	0.09	95	100.00	1	Togo
175	0.16	82	7.69	99	Turkmenistan
1,600	1.49	18	43.54	79	Tunisia
125	0.12	90	100.00	1	Trinidad and Tobago
150	0.14	83	100.00	1	Panama
10	0.01	117	1.11	113	Paraguay
1,700	1.58	16	6.25	102	Pakistan
150	0.14	83	100.00	1	Papua New Guinea
1,400	1.30	21	77.65	58	Peru
120	0.11	94	100.00	1	Fiji
2,300	2.14	13	82.76	53	Philippines
3,000	2.80	10	76.92	59	Korea, Republic of
550	0.51	42	100.00	1	Hong Kong
107,310	100		13		World Total

국가명	소비량 Total Consumption			자급율	
	1000HA	비율 %	순위	%	순위
가나	300	0.05	81	0.00	76
가봉	80	0.01	107	0.00	76
가이아나	50	0.01	107	0.00	76
과테말라	481	0.08	67	0.21	75
그루지야	1,000	0.16	52	7.60	64
기니	150	0.02	97	0.00	76
나이지리아	3,100	0.50	26	3.23	69
남아프리카공화국	2,860	0.46	29	64.48	30
네팔	1,415	0.23	42	98.59	16
노르웨이	605	0.10	61	61.98	32
뉴질랜드	650	0.11	58	42.62	44
니제르	30	0.00	115	0.00	76
니카라과	115	0.02	97	0.00	76
도미니크	400	0.06	75	0.00	76
라이베리아	35	0.01	107	0.00	76
러시아	38,200	6.18	4	129.32	7
레바논	440	0.07	71	31.82	52
레소토	80	0.01	107	6.25	65
리비아	1,425	0.23	42	8.77	63
마다가스카	150	0.02	97	0.00	76
마케도니아	355	0.06	75	78.87	26
말레이시아	1,200	0.19	48	0.00	76
멕시코	6,450	1.04	17	54.79	37
모로코	7,150	1.16	15	22.14	55
모리셔스	100	0.02	97	0.00	76
모리타니아	250	0.04	84	0.00	76
모잠비크	403	0.07	71	0.74	72
몰도바	725	0.12	57	62.07	31
몽골	395	0.06	75	36.71	47
미국	29,892	4.84	5	188.17	5
바레인	20	0.00	115	0.00	76
바베이도스	20	0.00	115	0.00	76
방글라데시	2,900	0.47	28	34.48	49
버마	272	0.04	84	54.04	38
베네수엘라	1,590	0.26	40	0.00	76
베트남	1,300	0.21	44	0.00	76
벨로루시	1,640	0.27	39	91.46	20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605	0.10	61	24.79	54
볼리비아	615	0.10	61	19.02	56
부르키나	75	0.01	107	0.00	76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	순위	
0	0.00	68	0.00	68	Ghana
0	0.00	68	0.00	68	Gabon
0	0.00	68	0.00	68	Guyana
100	0.09	48	20.79	23	Guatemala
202	0.18	41	20.20	25	Georgia, Republic of
0	0.00	68	0.00	68	Guinea
100	0.09	48	3.23	67	Nigeria
484	0.44	27	16.92	32	South Africa, Republic of
0	0.00	68	0.00	68	Nepal
371	0.34	30	61.32	4	Norway
184	0.17	43	28.31	13	New Zealand
0	0.00	68	0.00	68	Niger
0	0.00	68	0.00	68	Nicaragua
20	0.02	64	5.00	62	Dominican Republic
0	0.00	68	0.00	68	Liberia
2,580	2.34	12	6.75	58	Russian Federation
0	0.00	68	0.00	68	Lebanon
0	0.00	68	0.00	68	Lesotho
0	0.00	68	0.00	68	Libya
0	0.00	68	0.00	68	Madagascar
50	0.05	57	14.08	35	Macedonia, Republic of
121	0.11	47	10.08	49	Malaysia
548	0.50	26	8.50	53	Mexico
1,120	1.02	18	15.66	34	Morocco
0	0.00	68	0.00	68	Mauritius
0	0.00	68	0.00	68	Mauritania
0	0.00	68	0.00	68	Mozambique
78	0.07	52	10.76	47	Moldova, Republic of
0	0.00	68	0.00	68	Mongolia
6,518	5.92	3	21.81	22	United States
0	0.00	68	0.00	68	Bahrain
0	0.00	68	0.00	68	Barbados
277	0.25	36	9.55	52	Bangladesh
0	0.00	68	0.00	68	Burma, Union of
75	0.07	52	4.72	63	Venezuela
0	0.00	68	0.00	68	Vietnam
319	0.29	32	19.45	27	Belarus
32	0.03	61	5.29	60	Bosnia and Herzegovina
598	0.54	24	97.24	1	Bolivia
0	0.00	68	0.00	68	Burkina

국가명	소비량 Total Consumption			자급율	
	1000HA	비율 %	순위	%	순위
부탄	30	0.00	115	66.67	27
북한	664	0.11	58	39.76	46
브라질	10,500	1.70	11	36.43	48
사우디아라비아	2,650	0.43	31	94.34	18
세네갈	275	0.04	84	0.00	76
세르비아	1,750	0.28	38	113.94	9
소말리아	30	0.00	115	0.00	76
수단	1,800	0.29	36	33.33	51
스리랑카	800	0.13	56	0.00	76
스위스	850	0.14	55	64.71	29
시리아	4,500	0.73	24	88.89	22
시에라리온	50	0.01	107	0.00	76
싱가폴	225	0.04	84	0.00	7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350	0.06	75	0.00	76
아르메니아	530	0.09	66	56.60	34
아르헨티나	5,430	0.88	22	285.45	1
아이티	200	0.03	93	0.00	76
아제르바이잔	2,600	0.42	32	54.81	36
아프가니스탄	4,400	0.71	25	86.36	24
알바니아	630	0.10	61	52.38	39
알제리	7,750	1.25	13	33.55	50
앙골라	454	0.07	71	0.88	71
에리트레아	85	0.01	107	11.76	59
에콰도르	453	0.07	71	0.66	73
에티오피아	5,779	0.93	20	84.79	25
엘살바도르	190	0.03	93	0.00	76
예멘	2,025	0.33	35	6.17	66
오만	250	0.04	84	0.00	76
오스트레일리아	6,200	1.00	18	211.29	4
온두라스	225	0.04	84	0.00	76
요르단	900	0.15	53	4.44	67
우루과이	475	0.08	67	122.11	8
우즈베키스탄	6,800	1.10	16	91.18	21
우크라이나	12,750	2.06	10	109.02	11
유럽연합-27	118,965	19.24	1	100.43	14
이라크	5,609	0.91	21	41.77	45
이란	15,500	2.51	9	96.77	17
이스라엘	1,275	0.21	44	11.76	59
이집트	15,850	2.56	8	52.21	40
인도	75,850	12.27	3	99.95	15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	순위	
0	0.00	68	0.00	68	Bhutan
0	0.00	68	0.00	68	Korea, Democratic Peoples Rep
352	0.32	31	3.35	66	Brazil
1,818	1.65	14	68.60	2	Saudi Arabia
0	0.00	68	0.00	68	Senegal
225	0.20	39	12.86	40	Serbia
0	0.00	68	0.00	68	Somalia
0	0.00	68	0.00	68	Sudan
100	0.09	48	12.50	41	Sri Lanka
136	0.12	46	16.00	33	Switzerland
2,933	2.67	9	65.18	3	Syria
0	0.00	68	0.00	68	Sierra Leone
0	0.00	68	0.00	68	Singapore
0	0.00	68	0.00	68	United Arab Emirates
35	0.03	61	6.60	59	Armenia, Republic of
380	0.35	29	7.00	57	Argentina
0	0.00	68	0.00	68	Haiti
591	0.54	24	22.73	19	Azerbaijan, Republic of
0	0.00	68	0.00	68	Afghanistan
0	0.00	68	0.00	68	Albania
2,736	2.49	10	35.30	10	Algeria
0	0.00	68	0.00	68	Angola
0	0.00	68	0.00	68	Eritrea
50	0.05	57	11.04	46	Ecuador
0	0.00	68	0.00	68	Ethiopia
25	0.02	64	13.16	37	El Salvador
0	0.00	68	0.00	68	Yemen
0	0.00	68	0.00	68	Oman
3,699	3.36	7	59.66	5	Australia
0	0.00	68	0.00	68	Honduras
308	0.28	33	34.22	11	Jordan
56	0.05	57	11.79	44	Uruguay
1,320	1.20	17	19.41	28	Uzbekistan, Republic of
2,228	2.03	13	17.47	31	Ukraine
11,954	10.87	2	10.05	50	EU-27
750	0.68	22	13.37	36	Iraq
3,157	2.87	8	20.37	24	Iran
157	0.14	44	12.31	43	Israel
4,035	3.67	6	25.46	17	Egypt
6,410	5.83	4	8.45	54	India

국가명	소비량 Total Consumption			자급율	
	1000HA	비율 %	순위	%	순위
인도네시아	5,350	0.87	23	0.00	76
일본	5,900	0.95	19	15.42	57
자메이카	350	0.06	75	0.00	76
잠비아	160	0.03	93	59.38	33
중국	102,500	16.58	2	103.41	13
짐바브웨	260	0.04	84	51.92	41
차드	55	0.01	107	9.09	62
칠레	2,400	0.39	34	56.54	35
카메룬	250	0.04	84	0.00	76
카자흐스탄	7,500	1.21	14	221.33	3
캐나다	8,500	1.38	12	235.88	2
케냐	900	0.15	53	25.00	53
코스타리카	190	0.03	93	0.00	76
코트디부아르	250	0.04	84	0.00	76
콜롬비아	1,270	0.21	44	2.36	70
콩고	337	0.05	81	3.56	68
콩고 (브라자빌)	150	0.02	97	0.00	76
쿠바	700	0.11	58	0.00	76
쿠웨이트	300	0.05	81	0.00	76
크로아티아	625	0.10	61	112.00	10
키르기스스탄	1,095	0.18	50	64.84	28
타이완	1,060	0.17	51	0.00	76
타지키스탄	1,230	0.20	47	43.09	43
탄자니아	520	0.08	67	13.46	58
태국	1,150	0.19	48	0.00	76
터키	16,500	2.67	7	93.94	19
토고	100	0.02	97	0.00	76
투르크메니스탄	1,800	0.29	36	88.89	22
튀니지	2,750	0.44	30	44.91	42
트리니다드토바고	125	0.02	97	0.00	76
파나마	150	0.02	97	0.00	76
파라과이	375	0.06	75	168.00	6
파키스탄	22,400	3.62	6	104.02	12
파푸아뉴기니	150	0.02	97	0.00	76
페루	1,500	0.24	41	11.67	61
피지	120	0.02	97	0.00	76
필리핀	2,550	0.41	33	0.00	76
한국	3,000	0.49	27	0.27	74
홍콩	485	0.08	67	0.00	76
합계	618,179	100		98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	순위	
1,069	0.97	19	19.98	26	Indonesia
1,327	1.21	16	22.49	20	Japan
0	0.00	68	0.00	68	Jamaica and Dep
0	0.00	68	0.00	68	Zambia
36,957	33.59	1	36.06	9	China, Peoples Republic of
100	0.09	48	38.46	8	Zimbabwe
0	0.00	68	0.00	68	Chad
300	0.27	34	12.50	41	Chile
0	0.00	68	0.00	68	Cameroon
1,672	1.52	15	22.29	21	Kazakhstan, Republic of
4,174	3.79	5	49.11	6	Canada
75	0.07	52	8.33	55	Kenya
25	0.02	64	13.16	37	Costa Rica
25	0.02	64	10.00	51	Cote d'Ivoire
66	0.06	56	5.20	61	Colombia
35	0.03	61	10.39	48	Congo, Democratic Rep of the
0	0.00	68	0.00	68	Congo (Brazzaville)
0	0.00	68	0.00	68	Cuba
0	0.00	68	0.00	68	Kuwait
81	0.07	52	12.96	39	Croatia
202	0.18	41	18.45	29	Kyrgyzstan, Republic of
275	0.25	36	25.94	16	Taiwan
50	0.05	57	4.07	65	Tajikistan, Republic of
0	0.00	68	0.00	68	Tanzania, United Republic of
286	0.26	35	24.87	18	Thailand
737	0.67	23	4.47	64	Turkey
0	0.00	68	0.00	68	Togo
475	0.43	28	26.39	15	Turkmenistan
825	0.75	20	30.00	12	Tunisia
0	0.00	68	0.00	68	Trinidad and Tobago
0	0.00	68	0.00	68	Panama
147	0.13	45	39.20	7	Paraguay
2,596	2.36	11	11.59	45	Pakistan
0	0.00	68	0.00	68	Papua New Guinea
268	0.24	38	17.87	30	Peru
0	0.00	68	0.00	68	Fiji
204	0.19	40	8.00	56	Philippines
820	0.75	20	27.33	14	Korea, Republic of
0	0.00	68	0.00	68	Hong Kong
110,023	100		18		World Total

M45-93 세계농업 제93호 (2008. 5)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8년 5월

발 행 2008년 5월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